

영주권제도 편람

2015.07.



외 교 부
재외동포영사국

< 목 차 >

1. 영주권제도 있는 나라

1. 가나	2
2. 과테말라	4
3. 그레나다	7
4. 남아프리카공화국	8
5. 네덜란드	9
6. 노르웨이	12
7. 뉴질랜드	14
8. 니카라과	17
9. 대만	19
10. 덴마크	21
11. 도미니카공화국	23
12. 독일	28
13. 동티모르	31
14. 라오스	32
15. 러시아	34
16. 루마니아	36
17. 르완다	39
18. 리투아니아	41
19. 마케도니아	43
20. 말레이시아	42
21. 멕시코	45
22. 모리셔스	47
23. 몬테네그로	49
24. 몰도바	51
25. 미국	53
26. 미얀마	56
27. 바베이도스	61
28. 방글라데시	63
29. 베네수엘라	64

30. 베트남	66
31. 벨라루스	68
32. 벨리즈	70
3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72
34. 볼리비아	74
35. 불가리아	77
36. 브라질	79
37. 브루나이	81
38. 사모아독립국	83
39. 사이프러스	84
40. 세르비아	87
41. 세인트루시아	89
42.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1
43. 수리남	92
44. 스웨덴	94
45. 스위스	96
46. 스페인	98
47. 슬로바키아	100
48. 슬로베니아	103
49. 싱가포르	105
50. 아르메니아	107
51. 아르헨티나	108
52. 아이슬란드	112
53. 아일랜드	113
54. 알바니아	117
55. 에스토니아	119
56. 에콰도르	121
57. 엘살바도르	124
58. 영국	127
59. 오스트레일리아	132
60. 오스트리아	134
61. 우간다	137
62. 우루과이	139
63. 우크라이나	141

64. 이스라엘	144
65. 이탈리아	146
66. 일본	148
67. 자메이카	151
68. 중국	153
69. 짐바브웨	155
70. 체코	157
71. 칠레	159
72. 캐나다	162
73. 케냐	166
74. 코스타리카	168
75. 콜롬비아	171
76. 콩고민주공화국	174
77. 쿡제도	176
78. 크로아티아	178
79. 태국	181
80. 트리니다드토바고	187
81. 파나마	188
82. 파라과이	192
83. 파키스탄	195
84. 파푸아뉴기니	196
85. 페루	198
86. 포르투갈	201
87. 폴란드	203
88. 프랑스	204
89. 핀란드	209
90. 필리핀	211
91. 홍콩	214

II. 영주권제도 없는 나라

1. 가봉	216
2. 가이아나	218
3. 감비아	219
4. 그리스	220
5. 기니	222
6. 기니비사우	223
7. 나이지리아	224
8. 남수단	225
9. 네팔	226
10. 라이베리아	227
11. 레바논	230
12. 룩셈부르크	231
13. 리비아	232
14. 말리	233
15. 모로코	234
16. 모리타니아	235
17. 몰디브	235
18. 몽골	236
19. 바누아투	238
20. 바레인	239
21. 벨기에	241
22. 부룬디	242
23. 사우디아라비아	243
24. 세네갈	245
25. 수단	246
26. 스리랑카	249
27. 시에라리온	251
28. 아랍에미리트	252
29. 아이티	254
30. 아제르바이잔	255
31. 아프가니스탄	257
32. 알제리	258

33. 에티오피아	259
34. 오만	261
35. 온두라스	262
36. 요르단	264
37. 우즈베키스탄	266
38. 이라크	269
39. 이란	270
40. 이집트	271
41. 인도	273
42. 인도네시아	275
43. 조지아	277
44. 중앙아프리카	279
45. 차드	281
46. 카메룬	282
47. 카자흐스탄	284
48. 카타르	285
49. 카포베르데	287
50. 캄보디아	288
51. 코트디부와르	289
52. 콩고공화국	290
53. 쿠웨이트	291
54. 키르기즈공화국	293
55. 타지키스탄	295
56. 탄자니아	297
57. 터키	298
58. 통가	299
59. 투르크메니스탄	300
60. 튀니지	302
61. 피지	304
62. 헝가리	306

I. 영주권제도 있는 나라

국가명(최종 확인 연도)

가나	말레이시아	사이프러스	영국	쿡제도
과테말라	멕시코	세르비아	오스트레일리아	크로아티아
그레나다	모리셔스	세인트루시아	오스트리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몬테네그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간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네덜란드	몰도바	수리남	우루과이	파나마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뉴질랜드	미얀마	스위스	이스라엘	파키스탄
니카라과	바베이도스	스페인	이탈리아(2012)	파푸아뉴기니
대만	방글라데시	슬로바키아	일본	페루
덴마크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자메이카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폴란드
독일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공화국	짐바브웨	프랑스
동티모르	벨리즈	아르헨티나	체코	핀란드
라오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	칠레	필리핀
러시아	볼리비아	아일랜드	캐나다	홍콩(2009)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케냐	
르완다	브라질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브루나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마케도니아	사모아독립국	엘살바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Gh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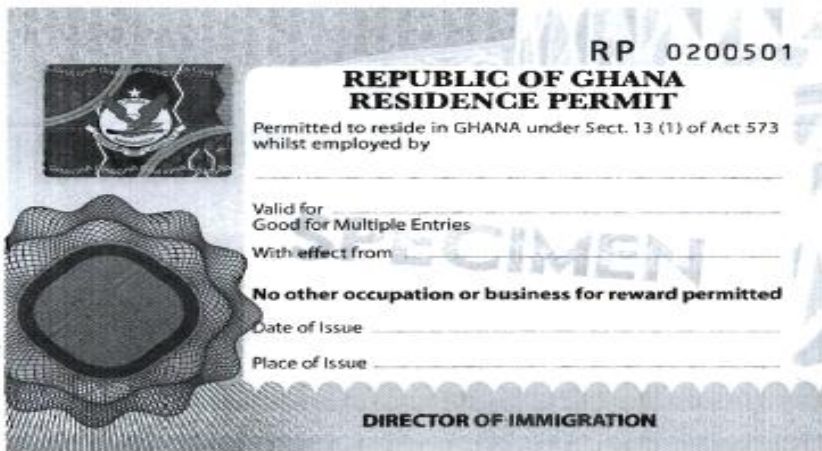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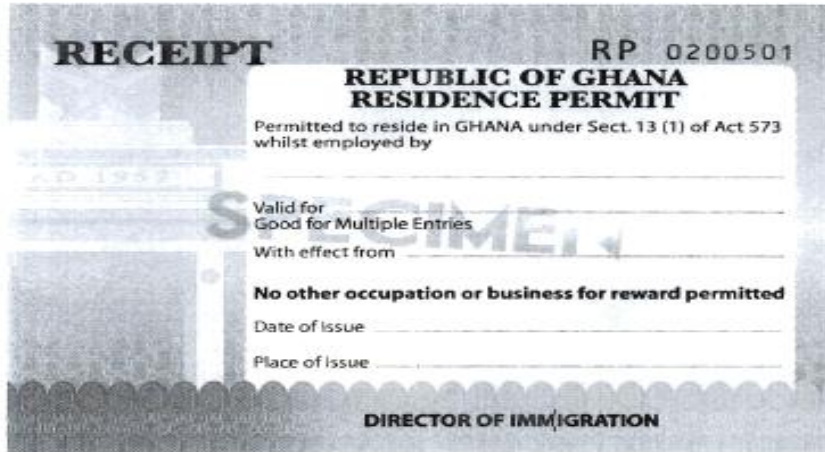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Indefinite residence permit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일 당시 12개월 연속 주재국 거주자
 - 신청일로부터 8년 전에 주재국 거주사실이 있고 동 기간 중 통산 5년 이상 주재국 체류자
 - 정부로부터 승인된 공증인으로부터 적격심사 통과
 - 12개월 이상 수감 기록이 없는 경우
 - 주재국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 경우(경제부문)
 - 유효한 장기 거주권 소유자
5. 수속절차 : 이민국에서 양식을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됨 (소요기간은 약 6개월)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12개월 이상 가나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제도 : 다시 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int.gov.gh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소요기간이 약 4개월에서 약 6개월로 변동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정도임

III. 영주권 견본



과테말라(Republic of Guatemal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VISA DE RESIDENTE PERMANENTE
2. 형태
 - 영주권 증명서
 - 여권에 영주 거주비자 스탬프 날인
 - 거주지 행정기관 발급 신분증(DPI)
3. 유효기간 : 5년(매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과테말라 국민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자
 - 임시 거주비자 취득 후 2년 경과 자
 - 과테말라 국민과 결혼 후 1년 이상 경과 자
 - 결혼 1년 미만인 자에게는 복수 임시 거주비자 발급
 - 연금수령자 및 금리 생활자
 - 월 수령 US\$1,000 이상, 부양가족 1인 추가시마다 \$200 추가
 - 과테말라인과 결혼한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종교인(카톨릭, 신교)
5. 효력 상실(취소) 사유
 - 납세의무 불이행 ◦ 제출서류가 위·변조된 경우
 - 법원의 판결 ◦ 사전 허락없이 1년 이상 국외체류
6. 부활제도 : 발급절차와 동일
7. 포기제도 : DPI를 발급기관에 반납하고 이민청장 앞으로 영주권 포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세금미납 등 미결문제가 없음을 이민청장에게 증명)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gob.gt>
9.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DPI(2009년부터 시행)는 주재국 시민 및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임(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성격)
 - 영주권 증명서는 2014년 11월부터 색깔이 SKY BLUE로 바뀜(이전까지는 PINK 색깔이 있었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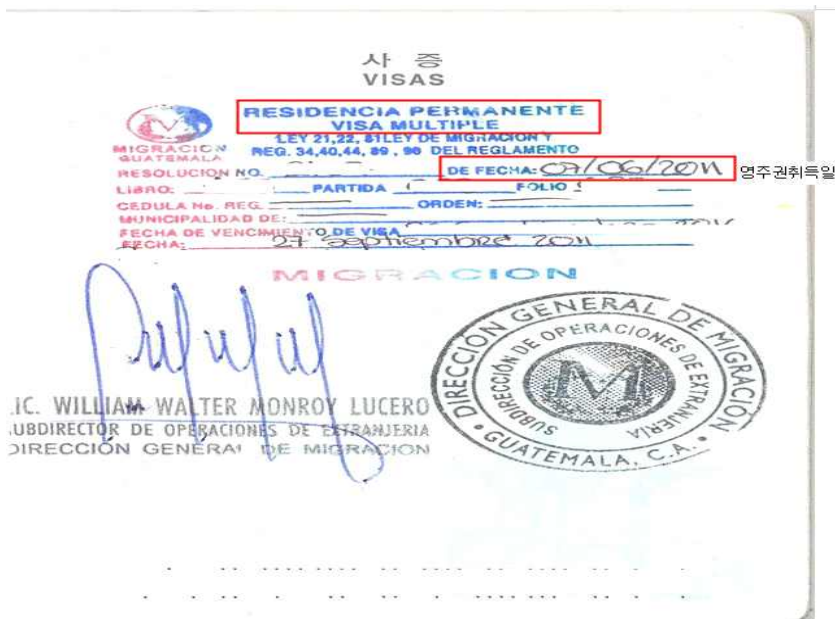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국적인과 동등

III.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DPI)




2. 영주비자(RESIDENCIA PERMANENTE VISA MULTIPLE)



- ※ 참고
- FECHA : 도장을 찍은 현재 날짜
 - FECHA DE VENCIMIENTO DE VISA :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5년 후까지의 기간으로 5년마다 갱신하여 새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음

3. 영주권증명서 (RESIDENCIA PERMANENTE)

- 유효한 영주권증명서인지 확인을 위해 비자의 스탬프를 함께 확인하여야 함


SUBDIRECCIÓN DE OPERACIONES DE EXTRANJERÍA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ON
MINISTERIO DE GOBERNACIÓN
GUATEMALA, C.A.

LCM

RESIDENCIA PERMANENTE

LIBRO DE VOTOS CON NÚMERO DE VOTO

Datos Personales

Primer Nombre	Segundo Nombre	Tercer Nombre
Primer Apellido	Segundo Apellido	Tercer Apellido
Sexo	Fecha de Nacimiento	País de Nacimiento

Parent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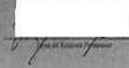

Nombre del Padre	Identificación	Documento de Víctima
Nombre de la Madre	Identificación	Extensión en
Nombre del Cónyuge	Identificación	Expiración


Llamado por regulación, se le otorga:
RESIDENCIA PERMANENTE





Datos del Ganante

Nombre y Apellidos	Razon Social
Teléfono	MAT
Residencia	PROGEO

Previsión No. **7-2014**
 Lugar y fecha de inscripción
 Guatemala **16** de diciembre de **2014**








INSCRIPCIÓN DE: _____
 No. DE REGISTRO: _____
 GUATEMALA: _____ 2014

May 8 11:27 AM
 FIRM: _____
 Q. 3,065.-

그레나다(Grenad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Card
2. 형태 : Card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Justice of the Peace 또는 Notary Public의 서명을 받은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제출
 - 출생국 혹은 그레나다에서 받은 추천서
 - 은행잔고 확인서
 - 출생국과 그레나다에서 받은 Police certificate(6개월 이내 발행)
 - 여권용 사진 4장,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 영주권 신청 서면
 - 건강 확인증(신청 후 6개월 이내 실시한 것, 반드시 그레나다의 St. George's 병원에서 실시한 것이어야 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시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ermanent Secretary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www.gov.gd/ministries/opm.html>)
10. 기타사항 : 신청비용 1,873미불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 자격(일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을 받아야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영주권)
2. 형태 : 최초 영주권 취득시 확인 레터를 받은 후 I.D 책자 발급
3. 유효기간 : 무제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영주권자와 혼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워크퍼밋(노동허가증)으로 5년 이상 일했고 영구적인 직업이 있을 경우
 - 매달 R37,000(약 USD3,500) 수입이 있거나 자산보유 R12,000,000(약 USD1,100,000) 하고 R120,000(USD11,000)을 납부시 은퇴 영주권 부여
5. 수속절차
 - 재정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학력증명서, 통장 잔액증명서, 여권사본 및 전 남아공 비자 사본 등 서류 제출 후 남아공 내무부에서 최소 8개월 심사기간 후 결과 통보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국내법 위반, 국외체제 허용기간 초과 등
7. 부활제도 :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VFS(Visa facility service), www.vfsglobal/dha/southafrica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시민권자만 투표 가능)
 - 의료 혜택 있음(국립병원에서 치료시 경제능력에 따라서 치료비 차등지급, 직업이 없거나 학생일 경우 무상 진료가능)
 - 의무교육 혜택은 없으나 남아공 대학 진학 시 남아공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 지급, 보통 외국인 학생(학생 비자 소지)은 대학교 학비가 남아공 시민권자보다 약 2배 이상 학비를 지급하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를 지급

네덜란드(Nether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
(네덜란드어 : Verblijfsvergunning Regulier voor Onbepaalde Tijd)
2. 형태 : 카드(중앙 청색 + 좌우여백 적색)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5년 이상 네덜란드에 계속 거주하면서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
 - 인턴십, 학업, 워킹홀리데이 등 임시체류목적의 경우는 제외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 기혼자 : 월 1,621.95유로(휴가상여금 제외시 1,501.80유로)
 - 편부모 : 월 1,135.40유로(휴가상여금 제외시 1,051.30유로)
 - 독신 : 월 1,135.40유로(휴가상여금 제외시 1,051.30유로)
 - 영주권 취득 시험(Inburgerlings examem)을 통과한 사람
5. 수속절차
 - 영주권신청서에 여권사본, 소득증명서, 영주권시험 통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출입국 이민국(IND)에 제출(수수료 : 154유로)
 - 출입국이민국 심사 후 영주권 카드 발급
 - 2014년 3월 이전 Type II와 EU/EER Type 등 2종류 발급
 - 2014년 4월 이후 Type II와 Type V 등 2종류 발급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Type II : 네덜란드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Type V
 - EU/EER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네덜란드외 EU/EER 회원국 국가에서 6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네덜란드 출입국이민국(www.ind.nl)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대한민국 국민은 2014년 3월 이전에는 통상 Type II를, EU/EER 국적자 배우자와 가족인 경우에는 EU/EER Type을 발급받았음
- 2014년 4월 이후에는 보통 Type II를, 특별한 경우(네덜란드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한 경우 등) Type V를 발급받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허용기간 : 6개월
 - Type II : 네덜란드 외 국가에서 6개월 미만
 - Type V : EU/EER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취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보험, 연금 등 경제,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네덜란드인과 동일한 권리 향유(선거권 없음)

III. 영주권 견본



Verblefstitel(체류허가증)

Naam(성, 이름)

Vervaldatum(유효기간)

2011년 07월 15일 만료

※ 동일자는 예시로 실제 5년 부여

Plaats en datum afgif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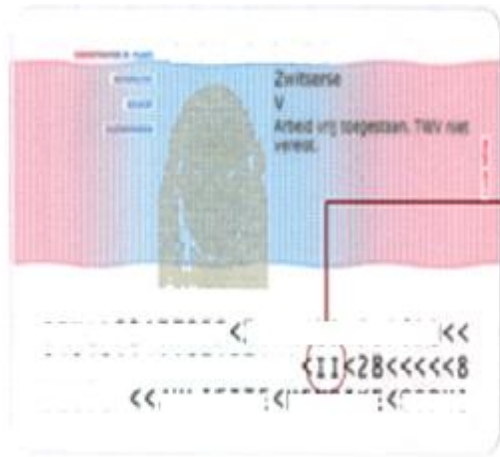
(발급지 및 발급일)

Zwolle, 2011.7.1

Type document(종류): II

Bijzonderheden(부기)

Regulier Onbepaalde TIJD(일반 영주권)



Geboortedatum en - plaats(생년월일 및 출생지)

Nationaliteit(국적)

Geslacht(성별)

V(여자)

Bijzonderheden(부기)

노동허가 부여, 추가

노동허가 필요 없음

※ Type II, V, EU/EER Type은 기본형태는 같으며. 위의 동그라미 안에 II, V 및 EU/EER 등 종류가 명기됨

노르웨이(Norway)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증(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2년(2년마다 카드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르웨이에 거주허가가 승인된 자
 - 노르웨이에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노르웨이어 550시간+노르웨이 사회관련 학습 50시간 이상 수강한 자
5. 수속절차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후 영주권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이 취소 된 경우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 하는 조건으로 이민국에 반납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노르웨이 이민국(www.udi.no)
10. 기타사항 : 영주권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격 및 조건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정착허가를 받은 경우 상시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사회보장(의료보험, 무료교육, 연금 등)혜택 부여

III. 영주권 견본



뉴질랜드(New Zea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t Visa(조건부 영주권) / Permanent Resident Visa(영구영주권)

2. 형태 : 여권부착식 스티커

3. 유효기간 : 조건부 영주권은 유효기간 있음, 영구영주권은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조건부 영주권(24개월 이상 주재국 미거주시 또는 하기 항목 요건 미충족시 상실)

◦ 사업이민(Entrepreneur) : 투자자나 기업가로서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기사업비자 소지자일 경우, 2년 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승인된 요건을 충족시 영주권 신청 가능. 기업워크비자 소지자일 경우, 최소 50만 뉴불을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풀타임 직원을 3인이상 고용하는 경우 6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 가족초청이민(Family) : 직계가족이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뉴질랜드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

◦ 기술이민(Skilled Migrant) : 55세 이하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연령, 뉴질랜드 내 직계거주 여부, 고용상태, 경력, 학력 등을 점수화하여 100점이 넘는 사람

◦ 취업이민(Work) : 55세 이하로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고 전일제 직장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일한 사람

◦ 투자이민(Investment) : 65세 미만으로 3년 이상의 사업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4년 동안 150만불을 투자하고 정착금 100만불 보증할 수 있는 사람. 투자기간 4년 중 매년 146일씩 마지막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영주권 취득 가능

나. 영구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2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음 조건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

◦ 2년간 매년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

- 2년간 매년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국세청에 의해 세금납부 거주자(tax residence status) 자격 인정
 - 2년간 100만 뉴볼 이상의 대뉴질랜드 투자
 - 뉴질랜드에서 12개월 이상 사업체 수립 또는 인수
 - 최근 12개월 동안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으며, 모든 직계가족이 2년간 184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였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정규직장을 보유
5. 수속절차
- 가. 이민성에 의향서를 제출하여 채택
 - 나. 영주권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다. 이민성에 접수하여 회보를 기다림
 - 라. 상황에 따라 인터뷰 후 발급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가 24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때. 각 카테고리 별 제한 사항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7. 부활제도 :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등으로 인해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시, 뉴질랜드 체류시 상황(범죄경력, 세금납부 상황 등)을 이민국 직원이 심사하여 부활 가능
8. 포기제도 : 이민국 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뉴질랜드 이민성(New Zealand Immigration),
www.immigration.govt.nz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조건부 영주권자 2년(24개월), 영구영주권자는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대부분의 권한과 지위가 시민권자와 동일하나, (1)영주권자는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할 수 없고, (2)피선거권이 제한되며, (3)일부 장학금 수령에 제한이 있으며, (4)뉴질랜드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음

니카라과(Nicaragu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임시영주권(Residencia Temporal)
-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카드(파란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임시영주권 : 1년(3년 후 영주권 신청)
- 영주권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영주권

- 임시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된 자
- 시민권자의 가족(배우자, 미혼자녀 및 미혼형제 자매) : 가족관계 확인서 제출 가능자
- 투자자 : 최소 미불 30,000 투자자로 니카라과 재무부의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
- 연금생활자 : 매월 \$ 750이상 연금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상기 신청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 영주권

◦ 임시영주권

- 영주권자의 가족
- 자영업자
- 회사와 노동계약을 맺은 외국인
- 공공기관, 일반기관, 국영회사 등과 계약을 맺은 과학자, 학자, 전문가, 엔지니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기보유자
- 다국적 기업의 임원, 직원
- 관계당국이 인정한 언론종사자
- 공인된 국, 공, 사립교육기관 학생
- 종교인
- 난민, 망명인

5. 효력상실(취소) 사유
 - 1년 이상 해외 체류시(영주권자)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임시영주권자)
 - 체류자격 획득 후 동 자격 상실 또는 조건 변경시
 - 유효기간내(만기일 30일 전)에 재신청 불이행시
 - 범죄행위 유발시
6. 부활제도 : 최초 신청절차와 유사하지만, 영주권이 효력 상실된 사유에 따라 이민국이 결정
7. 포기제도 : 이민국에 영주권이 불필요하다는 서류(편지) 제출시 영주권 포기 가능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gob.ni/>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주재국민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행사

III. 영주권 견본



대만(Taiwan)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외교영구거류증(外僑永久居留證)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단, 매년 대만 체류기간 183일 미만이면 자동 효력상실)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만 20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범죄기록 무보유, 일정한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해당 자
 - 5년 이상 연속하여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한 자
 - 국민의 외국국적 배우자 또는 외국국적 자녀로서 10년 이상 거주자(그 중 5년은 매년 183일 이상 거주)
 - 2002년 5월 31일 전에 대만에 합법적으로 20년 이상 거류하고, 그 중 10년은 매년 183일 이상 거류한 자
 - 상기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아도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면 영구거류증 신청 가능
 -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
 - 문화, 예술, 과학기술, 체육, 산업 등 전문영역에서 국제적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한 자
 - 영리사업에 NT\$1,500만원 이상 투자하여 5인 이상 대만인을 고용한 지 3년 되는 자 혹은 중앙정부 공채 NT\$3,000만원 이상을 투자한지 3년 되는 자
5. 수속절차 : 대만 이민서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매년 대만 거주기간 183일 미만의 경우
 - 허위 신청자료 제출·불법취득·위, 변조 문서를 제출한 경우
 -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서(<http://www.immigration.gov.tw>)

10. 기타사항

- 20세 이상 자녀의 영구거류증 취득은 부모에 수반되지 않으며(미성년 자녀는 「의친(依親)」 체류자격 부여)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구비해야함
- 투자이민으로 인한 영구거류증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영구거류증 수반 신청가능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체류해야하나 학업, 치료 등 특이 사유로 이민서 허가를 득한 경우는 183일 이상 거주기간을 적용 받지 않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음(복수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법적지위 부여되지 않음
 - 사회복지 혜택은 없음(국민건강보험은 대만 거류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에게 부여됨)

III. 영주권 견본



중화민국 거류증
ROC(Taiwan) Resident Certificate
타입: APCR 허가기간
영구거류증
통일번호 발급일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허가일자 여권번호
거류주소
국내대중교통수단 및 교육오락장소 우대



내정부출입국이민서
대만입국시 재입국허가 면제
이 카드 소지자는 대만에 재입국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이카드는 소지자가 카드 발급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83일 이상 대만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소됨

덴마크(Denmark)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분홍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일반 신청 자격요건
 - 덴마크에 거주허가가 승인된 자
 - 18세 이상
 - 덴마크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 만일 18개월 이상 형을 받고 수감된 자는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며, 18개월 미만으로 형을 받고 수감된 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이 제한됨
 - 미납된 공공요금 및 채무가 없는 사람
 - 영주권이 접수 중에 있거나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정부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덴마크의 통합과 활동적 시민 선언에 서명한 자
 - 덴마크 언어 시험 레벨 1이상 통과한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 덴마크에 거주한 5년 중 최소 3년 동안 덴마크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거나 학업을 한 자
 - 영주권을 취득할 때에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고 있는 자
 - 특별 신청 자격요건
 - 덴마크 난민수용소에서 지난 8년간 통합에 긍정적인 자
 - 18세-19세 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후 일 또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한 자
 - 덴마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자
 - 연금을 받는 자
5. 수속절차
 - 이주자(재결합한 가족과 망명자) 또는 특별한 신청요건에 적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생체등록을 위해 이민국에 방문해야 함

- 취업, 학업 비자를 소지한 자는 오프라인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 모두 가능. 만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14일내에 이민국에 방문해서 생체등록을 해야 함.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임시 체류허가를 위한 비자 연장 신청 또한 해야 함
 - 영주권은 신청으로부터 발급까지 최대 7개월 소요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정치적 난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이 취소 된 경우 다시 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재국 이민국 (www.newtodenmark.dk)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취득 2년 미만 거주자 최대 6개월
 - 영주권 취득 2년 이상 거주자 최대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기간 중에 사용 가능한 재입국 허가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지방자치정부 선거권 부여
 -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은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부여

III. 영주권 견본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 Republic)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카드(황색, 청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1년(최초 임시체류허가증), 4년 영주권, 무기한 영주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규발급과 갱신을 통해 임시체류허가증을 5년간 보유한 자로서 계속하여 도미니카공화국 거주 의사가 있을 경우
 - RS(Visa de Residencia, 상업복수비자 NM1)
 - 도미니카공화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현지 기업체 소속 1년 이상 근로자, 중소기업운영,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봉사활동 체류자 등 도미니카(공) 입국 전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에 상업복수비자(NM1) 신청
 - Residencia Temporal : 임시체류허가증(1년 유효)
 - RS(Visa de Residencia, 상업복수비자 취득자에 한해 최초 임시체류허가증신청 가능하며, 5년간 1년 단위 갱신가능
 - Residencia Permanente : 영주권(4년 유효)
 - 최종 임시체류허가증 만료 45일전 영주권 신청 가능
 - Residencia Definitiva : 무기한 영주권
 - 영주권 소지 후 10년이 경과하면 신청자격 부여
5. 수속절차
 - RS(Visa de Residencia, NM1 상업복수비자) 비자 취득: 3개월 이상 체류 또는 거주 목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을 원할 경우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에서 거주사증 취득하여 입국시 Residencia Temporal(임시체류허가증) 신청 자격 부여
 - ※ 신청서류 :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비자신청 문의, 제출서류는 스페인어 번역공증 및 대한민국 정부 발행 문서의 경우 외교부를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필수(RS 비자를 발급받을시 제출한 서류도 함께 돌려받음)
 - Residencia Temporal : RS(Visa de Residencia) 비자 취득자로서 도미니카공화국 입국 후 1년 이내에 임시체류허가증 신청 가능
 - 매년 갱신 (만료기간 30일 전에 갱신 신청)
 - 수속절차 : 주한도미니카대사관에서 RS 비자 취득 시 반환 받은 서류지참

- ① 이민청 제출 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2부, RS(상업복수비자 NM1)원본, 사진 (2*2 cm, 정면 및 측면 각 6부),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보증서(보증인 2명 서명 요), 재정증명서, 근로계약서, 도미니카공화국 노동부 발행 확인서, 이민청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수수료 성인 4,500페소 / 미성년자 3,000페소)

※ 한국 정부 발행 국문서는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함

② 이민청 수속 절차

- i) 이민청 외국인정책본부(Departamento de Extranjería de al 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방문 임시체류허가증 신청서 작성, 지문채취 및 서면 인터뷰 실시(신청 수수료 : 10,000페소)
- ii) 이민청에 임시체류허가증 신청서 접수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3개월 후 이민청 재방문(영수증 지참 요), 이민청에서 “신분증 및 주민증 확인서(Constancia de Cédula y Carnet de Reidencia)” 수령 예정일 통보
- iii) 중앙선거위원회(Junta Central Electoral)를 방문(지정된 일자)하여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 및 거주증 원본 수령

③ 갱신 수수료

- i) 연간 갱신 수수료 : 5,000페소(잔여 유효기간 30일전)
- ii) 갱신 연체료: 500페소

◦ Residencia Permanente : 임시체류허가증 5년간 소지자로서 기간만료 45일전 영주권 신청

- 유효기간 : 4년

- 수속절차 : 마지막년도 임시체류허가증 원본 지참

- ① 이민청 제출 서류 : 영주권 자격 변경 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2부, 임시체류 허가증 원본, 사진(2*2 cm, 정면 및 측면 각 6부),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청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보증서(증인 2명 서명 포함), 재정증명서, 이민청 지정 병원 건강진단서(수수료 성인 4,500페소 / 미성년자 3,000페소)

※ 국문서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 필수

② 이민청 수속 절차

- i) 영주권 자격변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준비해 이민청 방문
 -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및 사본 4부를 준비해야하며, 원본은 이민청에서 보관, 사본은 국립경찰청, 마약관리국, 범죄수사국 및 인터폴에 이관
- ii) 이민청 직원 인터뷰 수행
- iii) 수수료 : 12,000페소

③ 갱신 수수료

i) 4년 갱신 수수료 : 12,000페소(잔여 유효기간 30일전)

ii) 갱신 연체료 : 600페소

◦ Residencia Definitiva(영구 영주권) : 10년 이상 Residencia Permanente(영주권) 소지자 한 자

- 유효기간 : 무기한

- 수속절차 : 4년 영주권 원본 지참

① 이민청 제출 서류 : 영주권 자격 변경 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4부), 영주권 원본 및 사본(5부), 신분증, 주민증 원본 및 사본(5부), 사진(2*2 cm, 정면 및 측면 각 6부), 재정증명서(외국인이 서명한 재정증명 보증서)

※ 국문서의 경우 스페인어 번역공증 필수

② 이민청 수속 절차

i) 영주권 자격변경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지참 후 이민청 방문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및 사본(4부)(원본은 이민청 보관, 사본은 국립경찰청, 마약관리국, 범죄수사국 및 인터폴에 이관)

ii) 이민청 직원 인터뷰 수행

iii) 수수료 : 20,000페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상실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일정 벌금 납부 후 갱신 가능

8. 포기제도 : 관련 규정 없으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http://www.migracion.gob.do/web/>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영주권 수수료 변경

- 2014.11.1일자로 영주권 수수료가 인상되었으며, 이민청 홈페이지 Tarifas Servicios에서 확인 가능

◦ 영주권 신청 시 주의 사항

- 이민청 직원의 서류 심사 시 서류보완 사례가 빈발한 바, 국문 제출 서류는 번역본 및 번역공증, 한국정부 발행 문서의 경우 번역문이 포함된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서류로 준비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을 획득한 후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국외 체재 가능
 - ※ 단, 임시체류허가증 및 영주권 신청 또는 갱신 시 영주권 만료일 기준 전·후 3개월씩 총 6개월은 국외 체재 불가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 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 유효기간 초과 해외 체류 할 경우
 - 이민청을 방문하여 해외 체류 사유서(체류기간 및 목적 포함) 제출
 - 해외체류 신고 시 재입국 허가 기간은 영주권 유효기간 기준으로 산정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기업체 운영, 일정규모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등 헌법에 명시된 외국인 예외 조항 이외에 도미니카공화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재산권 행사 가능

III. 영주권 견본

-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IV. 기타사항

- 임시체류증



독일(Germany)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
2. 형태 : 장기체류비자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 : 체류법(Aufenthaltsgesetz) 9조
 - ① 5년 이상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를 소지하고
 - ②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 ③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④ 독일연방내의 안전과 공중질서를 해하지 않은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 ⑤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⑥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⑦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 ⑧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⑨ 본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함
5. 수속절차 : 자격요건을 갖추고 외국인관청에 신청하여 영주허가취득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허가소지자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사전에 외국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관청에 고지한 체류기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체류법 51조 1항 7호)

※ 영주허가는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영주허가소지자는 영주허가의 상실 없이 외국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음

- 독일연방내에서 최소 15년간 적법한 체류를 했으며 생계가 보장된 경우
- 독일인과 혼인한 경우
- 군복무를 위해 본국에 체류한 경우. 단 복무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독일에 입국해야함

◦ 여권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타 국적이 변경 혹은 상실될 경우 영주허가 효력이 상실됨

7. 부활제도

◦ 효력을 상실한 영주허가는 재차 그 효력이 부활되는 경우는 없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을 해야함 (신청자격은 4번 항목과 동일)

8. 포기제도

◦ 영주허가소지자가 외국인관청에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영주허가 효력이 상실됨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영주허가를 발급하는 외국인관청은 각 도시에 산재

(베를린의 경우 : <http://www.berlin.de/labo/auslaender/dienstleistungen/index.html>)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무제한 국외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허가를 상실한 자는 독일 재입국시 비자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허가는 체류법상 최상위의 체류자격으로서 사회복지(예: 자녀양육보조금)를 보장하며, 또한 추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취업에 따르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는 읍·면·동장 선거(Kommunalwahl)에 한해 투표권 부여

III. 영주권 건본

- 영주허가 카드



동티모르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영주권 자격으로 주재국에 12년 연속 체류자
 - 임시영주권 자격으로 체류 중 범죄로 인해 단독 또는 누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추방명령을 받은 자
 - 법정에서 3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자
 - 영주권 신청시 위조 서류로 신청한 자
 - 임시영주권 소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6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통산 10개월 체류한 자
 - 영주권 소지자가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24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3년간 통산 30개월 이상 체류한 자
7. 부활제도 및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이민국 (<http://migracao.gov.tl>)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임시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최대 6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통산 10개월 미만 허용
 -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동티모르 외 국가에서 최대 24개월 연속 체류하거나 3년간 통산 30개월 미만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라오스(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영주권카드(적색 플라스틱) 및 외국인가족부(A5 크기 수첩)
3. 유효기간 : 제한 없음(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
 - 일반(신청자가 주재국 국민과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는 경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라오스에 거주하였을 것
 - 가족관계(주재국 국민과 결혼 또는 입양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 라오스인과 결혼한 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라오스에 거주하였을 것
 - 부 또는 모가 라오스 국민인 외국인
 - 라오스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 또는 부모가 라오스 국적 기록이 있는 자
 - 10년 이상 라오스에 거주한 외국인의 부모 또는 자
 - 특별능력자(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인 경우) 등
 - 50만불 이상 라오스에 투자하고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한 자
 - 라오스가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 또는 능력을 지닌 자
 - 라오스 정부로부터 특별한 영주허가를 부여받은 자
 - 국가안전 및 경제개발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업적 및 활동을 인정하였음을 증명 가능한 자
5. 수속절차 : 외교부 영사국에 신청서 제출 후 외교부와公安부에서 검토 및 승인하고公安부에서 영주권 발급(라오스인의 보증필요)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영주권은 상실되며 국외로 추방됨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외교부 영사국

10. 기타 : 현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라오스 인종 및 무국적자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영주에 관한 총리령』(제 472호)가 2011.12.13.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재국公安부는 영주권 부여 시 외국인가족부 및 영주권신분증(ID Card)을 발급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 체재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라오스 영주권 취득시公安부는 외국인가족부 및 외국인신분증(ID 카드)을 발급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라오스 국적자에게만 있음
 - 영주권자의 복지혜택 관련 법령 규정 없음

러시아(Russ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증
2. 형태 : 수첩(여권형)
3. 유효기간 : 5년(5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 만료 2개월 전 연장 신청)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일시 거주 허가서’ 를 근거로 러시아 연방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연방이민청 지역 기관에 신청
6. 효력 상실(취소) 사유 : 반국가 행위, 테러, 추방 또는 강제퇴거, 문서 위조, 허위 사실 날조, 유죄판결 또는 외국인 체류규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 입국 후 3년 이내 주택 미소유, 외국 영주를 목적으로 한 출국, 6개월 이상 외국 거주, 영주권 취득 근거인 혼인의 무효, 마약중독자 및 AIDS 보균자 등
7. 부활제도 : 신청절차에 따라 재취득
8. 포기제도 : 거주허가증을 받은 기관에 반납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연방이민청 홈페이지(<http://www.fms.gov.ru>)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러시아 정부 공인 인증기관에서 실시한 러시아어·역사·법률지식 시험을 통과한 결과 제출 필요
 - 벨라루스·투르크메니스탄 국민, HQS, 러시아어 능력을 원어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일시거주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취득 가능
 - 12세 이상 외국인·무국적자는 검지 지문 채취 및 디지털 사진 촬영 필요
 - 인터넷 접속 가능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비자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노동허가 불요, 자유로운 입출국

III. 영주권 건본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82N0000000

Номер, дата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_____ 판결번호, 판결일

Дата выдачи документа _____ 서류발행일

Действителен по _____ 효력만기일

М. П. Подпись, фамилия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_____ 해당자의 서명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 RUSSIAN FEDERATION

№ документа / Document No. 82N0000000

Фамилия / Surname _____ 성

Имя / Given Name _____ 이름

Пол / Civil Status _____ 국적

Место рождения / Place of birth _____ 출생일

Пол / Sex _____ 출생지

Орган, выдавший документ / Authority _____ 서류발급기관

ФОТО / Photograph

루마니아(Roma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MIS DE SEDERE PERMANENTA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가족영주권은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년 이상의 거주허가를 받아, 그 거주허가 연장을 통해 5년 이상(유학생은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동 5년 이상의 거주 기간 중, 6개월 연속 非EU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없고, 非EU 국가 총 체류기간이 1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병역의무, 출산, 파견, 주재,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목적, 연구활동 등으로 非EU 국가에 체류한 기간 및 단기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
 - 1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일종의 골든 영주권, 또는 투자이민 제도에 해당)
 - 영주권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
 - ※ 동반가족 영주권 : 영주권 소지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입양아 포함)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 ※ 가족 영주권 :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외국인, 루마니아인의 외국 국적 소지 자녀, 루마니아인과 혼인한 자의 미성년 자녀, 루마니아 국적 소유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 부모 등에 주어지는 영주권
 -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EU Blue Card 소지자
 - ※ EU Blue Card : “고급인력”으로 분류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고용허가/거주허가 통합증명서로서, 동 증명서 소지자는 他EU국가 취업이나 거주허가 취득절차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우선권을 부여받음
 -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자 등
5. 수속절차
 - 관할지방 당국(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루마니아어 실력을 판단하기 위한 인터뷰 실시 가능)하면 영주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영주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영주권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방당국(이민국)에 출석하여 장기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거주허가의 취소 혹은 거부
- 타국가에서 영주권 취득
- 12개월 이상 루마니아 역외에서 체류(단, 他EU회원국에서 임시 거주허가를 받고 체류한 경우는 예외)
- 他EU국가 및 EC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6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他EU국가 및 EC공동체 국가 혹은 스위스에서 2년 이상 연속 떠나있을 경우
- “가족 영주권자” 일 경우 배우자가 他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동반가족 영주권” 취소
 - ※ “동반가족 영주권자” 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동반가족 영주권” 을 반납하고, “동반가족 거주허가” 도 더 이상 받게 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자녀는 학업을 계속 하거나 취업을 통해 계속 거주 가능하며, 이를 통해 5년 이상(학업의 경우 10년 이상) 합법적 거주를 하였을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
 - 또한, 성인이 되었으나 아직 미혼인 자녀로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자립 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반가족 영주권” 신청 가능

7. 부활제도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 또는 연속 12개월 이상 루마니아 영토 밖에서 체류하여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루마니아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연속12개월 체류 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루마니아 영토 밖으로 거주지 이전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General Inspectorate for Immigration)
 - 홈페이지 : <http://igi.mai.gov.ro>
 - 전화번호 : +40-214-100-042, +40-214-109-940
 - 팩스 : +40-214-107-501
 - 이메일 : igi@mai.gov.ro
 - 참고정보(영어) :

<http://igi.mai.gov.ro/detalii/pagina/en/Granting-right-of-permanent-residence/79>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 12개월 이하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III. 영주권 견본

-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카드 형태 동일



르완다(Rwa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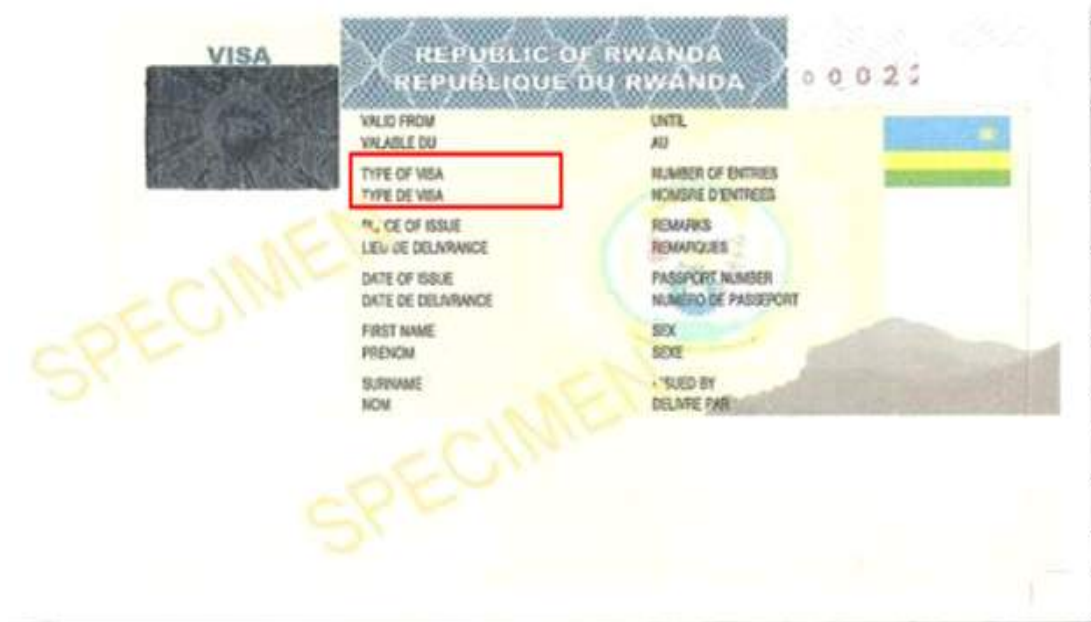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사증과 수첩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자 : 르완다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자
 - 예외적 허가 : 르완다에 예외적 기여를 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주는 자
 - 다국적 기업의 주요임원 : 주재국에 근무하면서 르완다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다국적기업의 주요임원인 자
 - 다이아스포라 :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는 르완다 태생의 외국인
 - 배우자 :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의 배우자
 - 자녀 :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의 25세 미만의 자녀
5. 수속절차
 - 유형별 취득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르완다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기 취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working days) 이내에 발급
 - 르완다 도착 후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공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연속 국외에 거주한 자(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기간 연장 가능)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르완다 이민청(<https://www.migration.gov.rw>)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 ※ 출처: 르완다 이민법 (Law N° 04/2011 of 21/03/2011 on Immigration and emigration in Rwanda) 및 동법 시행령(Ministerial Order N° 02/01 of 31/05/2011 Establishing Regulation and Procedures Implementing Immigration and Emigration Law)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을 소유한 자는 항상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일반 르완다인과 동일한 지위 및 복지혜택 향유

III. 영주권 견본



리투아니아(Lithua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체류허가증)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럽통합국가에서 5년 이상 유효한 비자로 체류(5년중에 2년은 반드시 리투아니아에서 체류)
5. 수속 절차 : 5년간 받은 비자증명서를 가지고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1년간 사유없이 체류하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포기 신청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또는 경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www.migracija.lt)
10. 기타사항 : 신청시 리투아니아내 거주지 입증 서류(집/아파트) 및 소득세 지불 증명 필요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영주권 견본



마케도니아(Macedo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카드(신분증)
3. 유효기간 : 여권상의 유효기간
4. 신청자격
 - ① 마케도니아 혈통인 자
 - ② 외국인 투자관계법에 따라 최소 3년간 체류한자
(400,000 유로 이상 투자, 10명 이상 고용한자)
 - ③ 기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의 가족(단,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인자)
5. 수속절차
 - 4-①항의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 해당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
 - 4-②항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없음
7. 부활절차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기관명 : 내무부 이민국
(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 주 소 : 9, Dimche Mirchev
 - 전화번호 : 00389 2 311 7222
 - 홈페이지 : <http://www.mvr.gov.mk/>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국의 체류법에 따라 국외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을 소유한 자는 항상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일반 불가리아인과 동일한 지위 및 복지혜택 향유

말레이시아(Malays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빨간색의 신분증 카드(MyPR)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수영역 공헌자 및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경제분야 공헌자 및 배우자와 6세 이하 동반자녀
 - 국적자와 혼인한 자로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외 출국 사실 없이 거주한 자
 - 국적자를 생모 또는 생부로 하는 6세 이하 아동
 - 기타 특별히 정부가 인정하는 자
5. 수속절차 : 지원자 중 정부가 필요로 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푸트라자야 이민국 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지원자는 신청서를 관할이민국에 제출하여야함
* 지원자는 신청서 제출 후 스폰서와 함께 이민국 담당자와 면담 필수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허가 승낙 조건을 위반한자와 주재국 법규(이민법, 마약법, 국가안보법 등)를 위반하였을 시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말레이시아 이민국(<http://www.imi.gov.my>)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제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자격을 가진 외국 시민은 면제 대상임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에게는 아래의 자격을 부여함
 - 기간 제한 없이 말레이시아에 체류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 부동산 소유가 가능
- 말레이시아에 출입하기 위한 모든 비자와 입국 조건들로부터 면제
- o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 의무적으로 말레이시아 법규를 따라야함
 - 어떠한 정치적인 정당이나 단체에 속하는 것은 금지함
 - 언제든지 정부가 불가피한 경우 영주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함

III. 영주권 견본



멕시코(Mexico)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영주권 비자카드(초록색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 크기)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한 없음)
 - 3세 미만 : 1년
 - 3세 이상~18세 미만 : 4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단기)거주비자(Residencia Temporal)로 4년 이상 거주 시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의 부모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와 직계 2촌(후손 또는 선조)
 - 정치적 망명자, 난민, 보완적 보호자(proteccion complementaria), 무국적 결정자
 - 가족단위 보존 권리에 따른 조건
 - 퇴직자, 연금수령자
 - 기타: 이민국의 포인트 시스템(sistema de puntos)에 따른 결정
5. 수속절차 : 취득조건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구 출국 시
 - 다른 거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획득 시
 - 이민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된 서류 제출 시
 - 피난, 보완적 보호자(proteccion complementaria) 자격 상실
 - 멕시코 법에 의거,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해치는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www.inm.gob.mx)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이전에는 영주권이 임시영주권(Inmigrante)과 영주권(Inmigrado)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2년 11월 이민법 개정 후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으로 통합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사항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법에 의거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투표권/선거권만 없을 뿐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 보장
4.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이민국에 영구출국 보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자에 대한 국외체재 허용 기간은 별도로 없음. 2014년 5월 연방 관보에 공시된 주민법(Ley general de Poblacion)에서 해당 항목 삭제됨

III. 영주권 견본



- ① (비자 종류)
*영주권: Residencia Permanente / 단기체류: Residencia Temporal
- ② (허가종류 기재하는 부분)
*영주권의 경우는 별도 기재사항 없으며, 취업비자 등 단기체류비자만 기재됨



- ③ 글귀 내용: 이 문서는 멕시코에서의 일반적인 이주상태에 대해 증명하며, 복수의 입/출국을 허용함.)

모리셔스(Republic of Mauritius)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투자자 거주허가(Investor Permit)
- 자영업자 거주허가(Self-employed Permit)
- 전문직종사자 거주허가(Professional Permit)
- 은퇴 거주허가(Retired non-citizen)

2. 형태 : A4 정도 크기의 문서, 카드(흰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0년(갱신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통) 영주권 신청시점 바로 앞에 3년 이상 노동/거주비자를 소유한 자
- Investor : 영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매년 연간 매출액 15백만 루피 (\$450,000) 상당을 초과한 자
- Self-employed : 영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매년 연소득 3만 루피 (\$90,000) 상당을 초과한 자
- Professional : 영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매월 기본월급이 최소 150,000 루피(\$4,500)에 상당한 자
- Retired non-citizen : 영주권 신청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간 매년 모리셔스에 \$40,000 또는 동등한 가치의 화폐를 송금한 자

5. 수속절차

- 최근 3개월 이내 여권사진 4매
- 10년 이내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투자자,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는 모리셔스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최근 3년간의 수입 증명서 제출
- 은퇴자는 해외에서 모리셔스로 연간 \$40,000 상당의 금액을 매년, 3년 동안 송금한 내역 서류 제출
- 모리셔스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건강진단증명서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주재국 정부에서 무효화할 경우(범죄자, Permit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 투자자, 자영업자, 은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총리실(Home Affairs Division), 4층, New Government Centre, PortLouis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0년(갱신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제도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모리셔스 시민법(Mauritius Citizenship Act)에 의한 보호를 받음

몬테네그로(Republic of Montenegro)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스탈노 나스타네네(stalno nastanjenje)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서 제출일까지 몬테네그로에서 임시거주허가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 예외적으로 신청인인 몬테네그로의 국가 이익이나 humanity의 이유로 인해 5년 미만의 거주로도 가능
 - 몬테네그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몬테네그로에 거주한 외국인
 - 부모 중 한 사람이 몬테네그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배우자의 동의하에 몬테네그로에 임시체류허가로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녀(18세미만)의 영주권 신청 가능
5. 수속절차 : 내무부에 제출
6. 효력 상실(취소)사유
 - 범죄혐의와 관련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 국가 안보 및 공공목적 또는 공공보건 보호에 위해가 되는 자
 -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영주권 취소
 - 제출 서류관련 개인정보 오류 및 위조한 자
7. 부활제도 : 최소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연속적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체류 했을 때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를 원하는 자가 내무부에 신청함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up.gov.me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을 제외하고 몬테네그로 헌법에 의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

몰도바(Moldov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카드(노란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망명자 또는 난민을 제외한)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현지어를 구사하며 재정 능력이 있는 자
 -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로서 전문 기술자 및 능력을 갖춘 자
 - 가족이민에 따라 입국한 자
 - 몰도바 교육기관에 학업을 위해 입국한 자
 -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자
 - 투자자 1만-10만 달러(2년내), 10만-20만 달러(3년내), 25만 달러 이상(5년내)
5. 효력상실(취소) 사유
 - 몰도바 국가 안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발급
 - 몰도바 국민의 자유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 영주권자가 외국인 및 무국적자 관련법을 어겼을 경우
 - 기타의 경우는 몰도바 법률에 따라
6.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ai.gov.md>(몰도바 내무부 이민국)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기한(국적국 법에 따라)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몰도바 국민과 유사

III. 영주권 견본



미국(United State of Americ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0년(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인 경우 2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등
 -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
 -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혼인한 자녀(모든 연령), 형제 및 자매
 -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
 - 기타 예외적인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로서 미 시민권자에 의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외교관의 자녀, 미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시민권자가 사망한 경우
 - 직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내 영구 고용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용주에게 노동허가서와 I-140 양식을 요구하며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을 하도록 함
 -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또는 기업가에게 주어지는 자격임
 - 특출한 기술(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스스로 영주권 청원 가능
 - 특정 직업을 통한 영주권 : 아프가니스탄/이라크어 통역사, 방송인, 국제기구 종사자, NATO-6 비이민자, 미국정부에 조력을 준 이라크인, 파나마 운하근무자, 공공 보건에 기여할 의사(최소 5년 미국 내 의사가 없는 지역 또는 보훈청에서 일할 것을 약속해야함), 종교인
 - 난민 또는 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
 - 미국으로 망명한 경우, 망명 지위를 얻은지 1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 난민 또는 망명자의 가족으로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후 1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난민의 경우 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이 요구되어짐)
5. 수속절차 : USCIS를 통해 수속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미국 이민 국적법상 237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불법 입국 : (미국에 입국하기 전,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에 입국한지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의 미국으로 불법적인 입국을 알면서 도운 경우
 - 위장 결혼 : 서류상의 사기로 비자나 다른 서류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 범죄 경력 :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후 10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 학대, 스토킹, 폭행 포함)
 - 규제 물질 반입 : 약물 남용/중독자등 약물 반입을 시도한 경우
 - 불법 무기 : 불법 무기 소지, 반입, 거래하는 경우
 - 반역죄 : 반역을 꾀하는 경우, 국가기밀이나 중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행위
- 임시여행이 아니고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 국외 체류 중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납세신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 라고 정의하는 행위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미국 이민국(USCIS, www.uscis.gov)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상 해외 거주시 영주권 파기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허가서를 미이민국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유효하나 재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미국 어느 주에서나 영구히 거주할 권리
 -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권리
 - 미국 연방 및 주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혜택으로서 기존의 직업과 소득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받음(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 받은 사회보장번호에 경우에 해당)
 - 메디케이드혜택 :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 보험으로, 응급메디케이드와는 달리 전범위 메디케이드는 영주권을 가진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 연방 소득 보조금(Supplement Security Income) : 저소득층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아동,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 복지 제도(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들에 해당)
-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 : 극빈가족에 대한 임시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 구호자금이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각 주마다 상이

III. 영주권 견본

1.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2.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미얀마(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영주권 증명서(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전문직인 외국인 및 과거 미얀마 국적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거주 비자 미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서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자
 - 관련 사업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미얀마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미얀마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 분야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후 있는 자
 - 외국인 투자자 및 과거 미얀마 국적의 투자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영주권 신청 전 거주 비자 미 소유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연속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며 외국인투자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 영주권 취득 후 관련 업종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투자 규모에 상응한 사업 자금 보유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후 있는 자
- 전문인 또는 투자자가 아닌 과거 미얀마 국적자
 - 영주권 취득 전 미얀마 거주 비자 미 취득자
 - 미얀마 국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
 - 미얀마 거주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자 또는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를 미얀마 거주 현지인이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회사를 운영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
-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한 자 및 그들의 18세 이하의 미혼 자녀와 양자
 - 과거 미얀마 국적자인 경우 거주 비자 미 취득자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 기준 과거 10년간 거주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미얀마에서 최소 3년 동안 거주하면서 1년에 연속 90일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
 - 국제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자국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전염병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미얀마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자
 - 중앙이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영주권 신청관련 질의에 답변할 후 있는 자

5. 수속절차

(1) 영주권 신청서류

- 영주권 신청서(서식: Ah Ma Na-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3장(1.5 × 2 inches)
- 유효한 여권 및 사본
- 신청자 국적 증명서
- 최소한 1년 이상의 채용 증명서 또는 추천서

- 전문 자격증 및 재직회사 또는 기관 등의 추천서
- 영주권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을 경우
 - 가족 증명서
 - 가족 구성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력서
 - 결혼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18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해당 정부에서 발급된 영문 출생증명서
 - 18세 이하의 양자가 있는 경우, 관련 정부에서 발급된 영문 입양증명서
- 미얀마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투자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 및 회사 등록증명서
 - 사업계획서
 - 다른 국가에서 사업체를 운영했을 경우, 3년간의 회사 계좌 기록
- 기술 전문직이나 투자자가 아닌 과거 미얀마 국적자의 경우 동인에 대한 보증인 개인정보 및 추천서
- 미얀마 국적을 가진 사람과 특별 관계(결혼 등)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 미얀마 국적자가 작성한 외국인 영주권 신청서
 - 영주권 신청 외국인은 현재 미얀마 국적의 배우자 이외에는 다른 배우자가 없다는 영문 증빙서류

(2) 발급 및 교부

- 영주권 신청인은 영주권 발급 승인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영주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 Ah Ma Na-2)
 - 유효한 여권 및 사본,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 증명서
- 영주권 발급 통지서 원본
- 영주권 신청인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나이, 직업 등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
 - 자녀의 출생증명서
 - 18세 미만의 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증명서

6. 효력상실 사유

- 중앙이행위원회에서 국익을 위해 규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국가 정당에 참여 또는 기여하거나, 그 단체에서 활동했을 경우
- 반 인종적, 종교적 활동 조성 및 선동에 기여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영주권 신청서에 부정, 사기행위, 위조 또는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미얀마 국적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얀마 국적자의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 미얀마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18세 미만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미얀마 국적자가 국적을 상실 했을 경우
 - 전문직 또는 투자가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중앙이행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업 직종을 변경했을 경우
 - 영주권 만료 후 180일 이내에 영주권을 재등록하지 안한 경우
 - 영주권 관련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영주권자 사망 또는 추방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인구부(<http://www.mip.gov.mm>)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주재국 정부는 2014.11.18 영주권제도를 도입 후 현재 영주권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기간 동안 연속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 등 정부 허가 취득 필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실존법에 따라 본인 명의로 구입한 복합단지의 아파트(콘도미니엄)를 법률에 의거 매매처리 가능
 - 본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영주권 취득자의 가족들을 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거주 비자가 없는 가까운 친척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 자격 부여
 - 영주권 만료 전까지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을 이용하여 복수로 미얀마 입출국 자격 부여

- 영주권 취득 후 90일 이내에 본인의 물품을 가져올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
- 정부가 지정한 체류 제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영주권자에게 허용된 사업체 운영 자격 부여
- 미얀마 국적자와 동일하게 의료 혜택 자격 부여
- 교육부 규정에 따라 미얀마 학교에 등록 수학할 자격 부여

바베이도스(Barbados)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적법절차로 입국한 자
 - 이민자 자격(Status of immigrant)으로 5년 바베이도스에 거주한 자
 - 배우자가 바베이도스 출생 혹은 혈통을 이유로 바베이도스 국민인 자
 - 영주권 획득 기간 5년 중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및 △추방명령 후 바베이도스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
 - 출생증명서(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포함)
 - 결혼 증명서
 - 바베이도스 어머니와 바베이도스인이 아닌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신청자일 경우, 어머니 출생증명서와 부모의 결혼 증명서
 - 건강 증명서
 - 범죄 경력 증명서
 - 납세 증명서
 - 여권 사진 4매
 - 고용 확인서(letter of employment)
 - 신청비용 BB\$ 300(약 150미불)
 - 여권 사본(첫 장)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바베이도스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총리실 내 방위안보부, 바베이도스 이민국(Barbados Immigration Department) (<http://www.immigration.gov.bb>)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찍힌 확인 도장으로 자유롭게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시민권자의 권리 및 복지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방글라데시(Bangladesh)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
2. 형태 : 방글라데시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발행 공문서(증명서)
3. 유효기간 : 제한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방글라데시 산업/상업상 projet에 미화 7만5천불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투자외국인
5. 수속절차 : 내무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특정되어 있지 않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ha.gov.bd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이사항 없음

베네수엘라(Venezuel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Visa de Residente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짐
5. 수속절차
 - 내무부 소속 이민청에 2년 이상 거주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결정하게 됨
6. 효력상실 사유
 - 2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내외에서 범법행위로 영주권을 상실한 정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신청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7. 부활절차
 - 효력상실 후 재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처음 영주권 신청서류를 구비신청
8. 반납제도 : 없음
9. 기타사항 : 신청비 8 U.T.(1,016 Bs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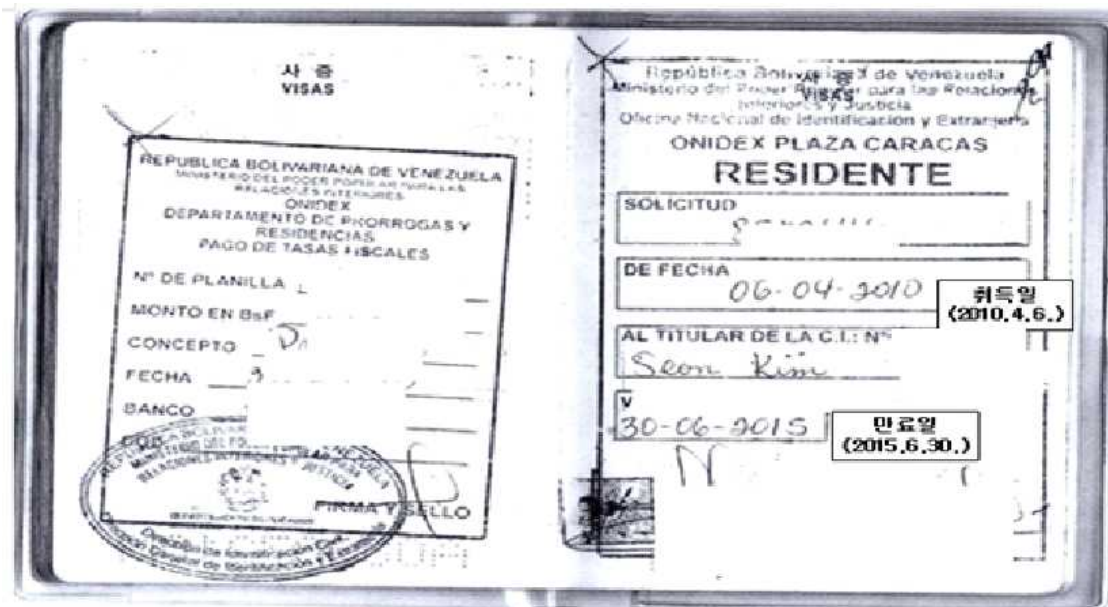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사회보장제도 가입 가능(의료보험 등)
 - 10년 이상 거주시 지방선거 참정권(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됨

III. 장기체류권

1. 명칭 : Visa de Transeunte
2. 형태 : 비자 및 카드
3. 유효기간 : 1년(투자자의 경우 3년)
 - 5년간 갱신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적법절차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은 누구든지 1년 체류권 신청자격을 부여함
 - 취업, 학생, 투자, 동반자 등
5. 수속절차
 - 베네수엘라 이민청(SAIME)에 신청하면 1년 체류비자 발급 가능
6. 효력상실 사유
 - 신청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국내외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절차
 - 재신청사유를 첨부하여 처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8. 반납제도 : 반납제도는 없으며, 체류권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됨
9. 기타사항 : 신청비 6 U.T.(762 BsF)

IV. 영주권 견본



베트남(Vietnam)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Status
2. 형태 : 카드(종이)
3. 유효기간 : 10년(10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자격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공헌한 자 및 정부 훈포장 수여자
 - 베트남에 임시 거주중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
 - 베트남에 거주중인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 임시 거주중인 무국적자
 - 취득조건
 - 베트남내 합법적 거주지 및 안정적 생활 영위하는 자
 - 과학자 및 전문가의 경우 관련 장관, 기관장 등으로부터의 추천서
 - 베트남 국민의 가족의 경우 3년 이상의 베트남 거주
5. 수속절차
 -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서 제출 →公安부 장관 결정(최대 4개월 소요, 2개월 연장 가능) → 출입국 관리국이 지역 관할公安에 결과 통보 → 관할公安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영주권 카드 수령(3개월내)
 - 필요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증명(한국), 대사관 공한, 여권 사본, 영주권 취득조건 입증서류, 베트남 가족 보증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 카드 반납(타국으로 영주 목적으로 출국시)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vnimm.gov.vn>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3년→10년)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지위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 제한 규정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베트남 국적인과 동일

III. 영주권 견본

N11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ảnh 3x4cm
THẺ THƯỜNG TRÚ PERMANENT RESIDENCE CARD
Số (No) _____
Công an tỉnh/TP _____ cấp cho: <i>Issued by the Public Security of Province/City to</i>
Họ tên _____ <i>Full name</i> Giới tính (Sex): nam (M) <input type="checkbox"/> nữ (F) <input type="checkbox"/>
Sinh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i>Date of birth (day, month, year)</i>
Mang hộ chiếu của (Holding the passport of) _____
Số (Passport number) _____
Thường trú tại _____ <i>Is permitted to reside permanently at</i>
Cấp ngày _____ tháng _____ năm _____ <i>Date of issue (day, month, year)</i> TRƯỞNG PHÒNG QUẢN LÝ XNC <i>Chief of Immigration Office</i>

NHỮNG ĐIỀU CẦN CHÚ Ý

1. Người mang thẻ này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Việt Nam.
2. Người mang thẻ này phải:
 - Xuất trình thẻ khi nhà chức trách yêu cầu.
 - Bảo quản, giữ gìn thẻ cẩn thận.
 - Làm thủ tục xin cấp thẻ mới nếu có nhu cầu thay đổi nội dung ghi trong thẻ.
 - Có văn bản trình báo ngay với cơ quan cấp thẻ khi thẻ bị hư hỏng, thất lạc.
 - Định kỳ 3 năm kể từ ngày cấp, trực tiếp đến cơ quan cấp thẻ để đổi thẻ mới.
3. Nghiêm cấm các hành vi: làm giả, tẩy xóa, sửa chữa, mua bán, cho người khác mượn và sử dụng thẻ.

IMPORTANT INFORMATION

1. The holder of this card does not require a Vietnamese visa.
2. The card holder must:
 - Show the card to the authorities on request.
 - Keep this card carefully.
 - Apply for a new card if any change or alteration of its particulars is required.
 - Immediately report in writing to the issuing office in case of damage or loss of the card.
 - Apply in person at the issuing office for a replacement of the card every three years since it is issued.
3. Any case of forgery, unofficial alteration, mutilation or sale of this card is strictly prohibited, as is its lending for unlawful use.

벨라루스(Belarus)

I. 영주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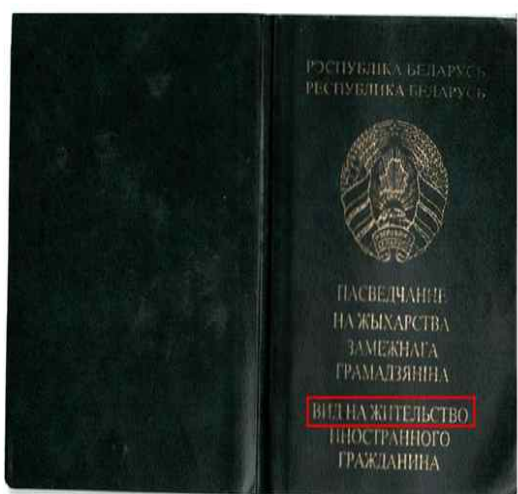
1. 명칭 : 영주권(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2. 형태 : 수첩식 여권형태(청록색 표지)
3. 유효기간
 - 최초 발급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60세 까지 5년 단위로 갱신
 - 60세 이후에는 기간갱신 없이 100세까지 유효기간 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벨라루스 국민과 혼인 또는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
 - 벨라루스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 가족 재결합의 권리가 있는 경우
 - 벨라루스에 7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과거 벨라루스 국적을 보유한 경우
 - 벨라루스에 필요한 근로자이거나 전문가인 경우
 - 특별한 재능 보유자, 벨라루스에 뛰어난 공적으로 기여한 자이거나,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벨라루스 투자사업에 150,000유로 이상을 투자한 경우
 - 벨라루스 민족이거나, 과거 벨라루스에서 출생한 벨라루스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자손
 - 상기 조항 외, 예외적으로 벨라루스 대통령의 동의하에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 가능
5. 수속절차 : 신청자격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기관인 내무부 산하 이민국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취득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1년에 5회 이상 벨라루스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벨라루스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법률이 규정한 벌금을 기한내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영주권 취득에 관한 근거가 소멸된 경우
 -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

- 영주권자 부부 및 그의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동반 가족이 벨라루스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1년에 6개월 이상 없을 경우
 - 벨라루스 입국규제자 명단에 포함되거나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경우
 - 극단주의, 테러, 밀수, 마약,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국가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활동을 한 경우
 - 벨라루스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병에 걸린 경우
 - 벨라루스 국민 또는 영주권자와 파혼하거나 법적으로 결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속였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강제 추방된 경우
7. 부활제도 : 원칙적으로 최초 영주권 취득시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나, 영주권 상실사유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
8. 포기제도 : 특별한 제도는 없으며, 영주권자가 담당 기관에 포기 신청서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벨라루스 내무부 이민국 (www.mvd.gov.by)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180일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벨라루스 출입국 시 별도의 비자 불요, 영주권을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가 벨라루스 국민과 동일

III. 영주권 견본



벨리즈(Beliz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Status
2. 형태 : 소지 여권에 Permanent Resident Stamp 각인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단기체류자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14일 이상 국외 체류시 불허)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벨리즈 경찰청 발행 무범죄경력 증명서 (Belize Police Record),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 건강진단서 (Certificate of Health, HIV & VDRL 비 보균자 증명 포함), 여권사진 3매,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은행잔고확인서 (Local Bank Statement) 또는 재정상태 증명서, 노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 임시노동허가증(Temporary Employment Permit), 세금납부증명서(Income Tax Statement)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사기, 은닉, 실수, 허위진술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주권자가 주재국 이익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 범죄로 기소될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반납사유를 작성한 서한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Nationality
+(501)822-3860/822-0739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동산, 부동산, 주식 취득 등 경제활동 허용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II. 영주권 견본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Stalni Boravak)
2. 형태 : 비자(스티커) 및 카드
3. 유효기간 : 영구(비자는 여권갱신시 재발급, 카드는 5년마다 재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생활능력이 있는 자
 - 의료보험 가입자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공용어 및 공용문자 중 하나의 구사 · 해독 가능자
 - 미취학자,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에서 초 · 중 · 고 또는 대학 교육 이수자, 60세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자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Service for Foreigner's Affairs)에 영주권 발급을 신청
 - 최종 영주권 부여 여부는 안보부(Ministry of Security)가 결정
6. 효력상실(취소)사유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권 포기를 신청한 경우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 공공질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추방 결정이 내려진 경우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의 법질서 위반 및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 불법 입국, 체류, 출국에 관련되거나 인신매매에 간여한 경우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에 입국, 체류할 목적으로만 결혼, 입양한 것으로 관계 기관에 의해 결정된 경우

- 체류허가 신청시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경우
 - 위조된 여권을 사용한 경우
 - 영주권자의 존재가 법질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
 -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 1년 미만 국외체재한 경우라도 제반 정황상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된 경우 영주권 효력상실 가능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 안보부(<http://www.msb.gov.ba>)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영주권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재입국 허가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또는 자영활동이 가능

볼리비아(Boliv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cia Definitiva
(과거에는 Residencia Permanente 또는 Radicatoria Definitiva)
2. 형태 : 스티커식
3.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않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3년 볼리비아내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 신청 대상
 - 아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볼리비아 영주를 원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투자자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술자
 - 볼리비아 대학 학위 취득자
 - 볼리비아 국가 면허 취득자
 - 해외로부터 거주에 충분한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장년퇴직자
5. 수속절차 : 다음 순서에 따라 영주권 취득
 - 이민 목적의 사증으로 입국하였을 때 Objeto Determinado를 취득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고 2번까지 연장 가능함(의무는 아님)
 - 1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1 año)
 -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2 años)
 -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Permanencia Temporal 3 años)
 - 영주권 취득 (Permanencia Definitiva)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이민청에 해외체류 신고없이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 가짜 영주권 취득할 경우
 - 추방을 당할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볼리비아 이민청(www.migracion.gov.bo)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과거에는 2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규정이 변경이 되어 3년 임시 체류증 취득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불가능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2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3년 임시 체류증을 취득한 경우 90일
- 영주권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계속 국외체류시 효력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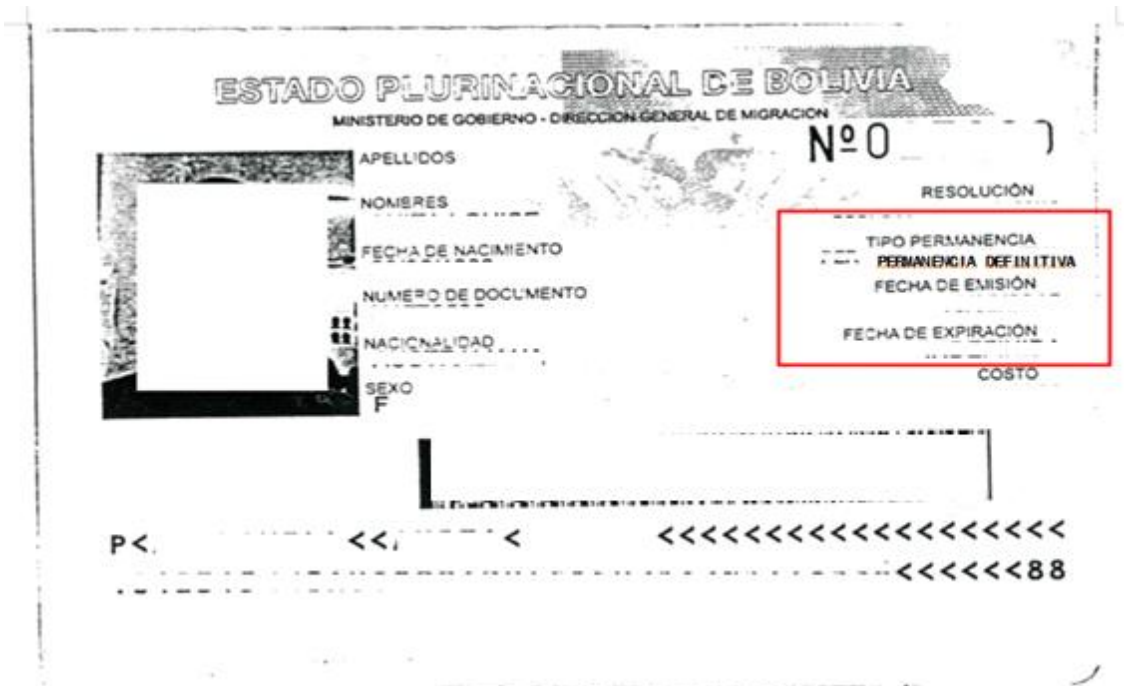
※ 단, 해외 2년 이상 체류를 위해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한 경우 영주권 계속 유효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유효기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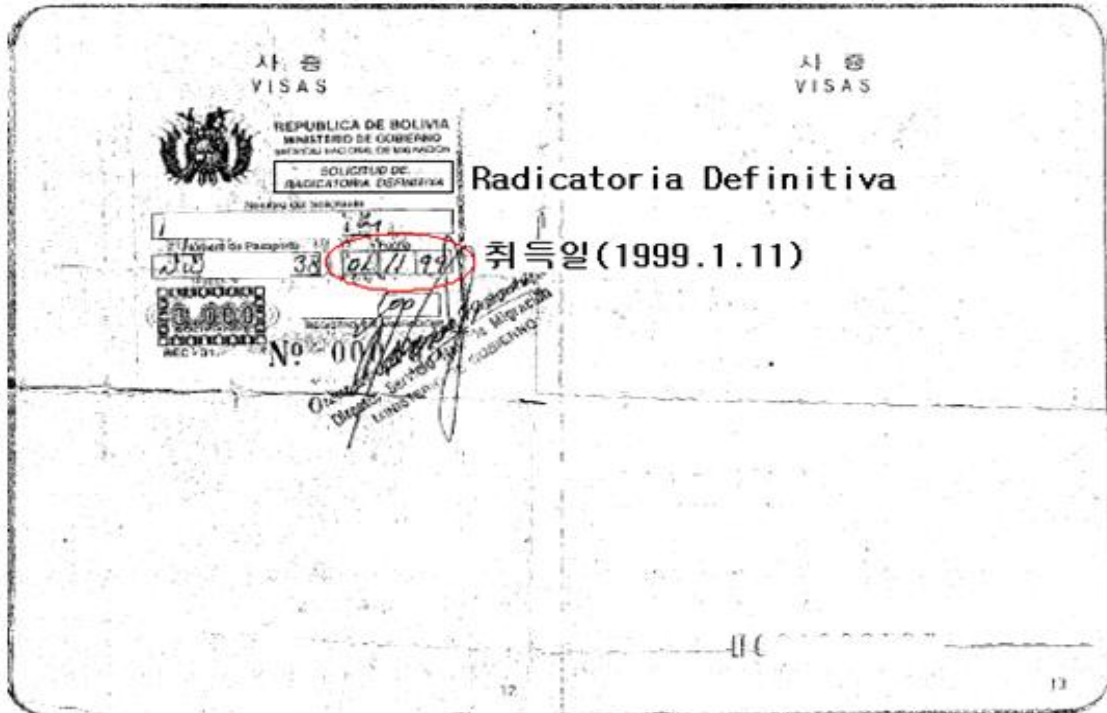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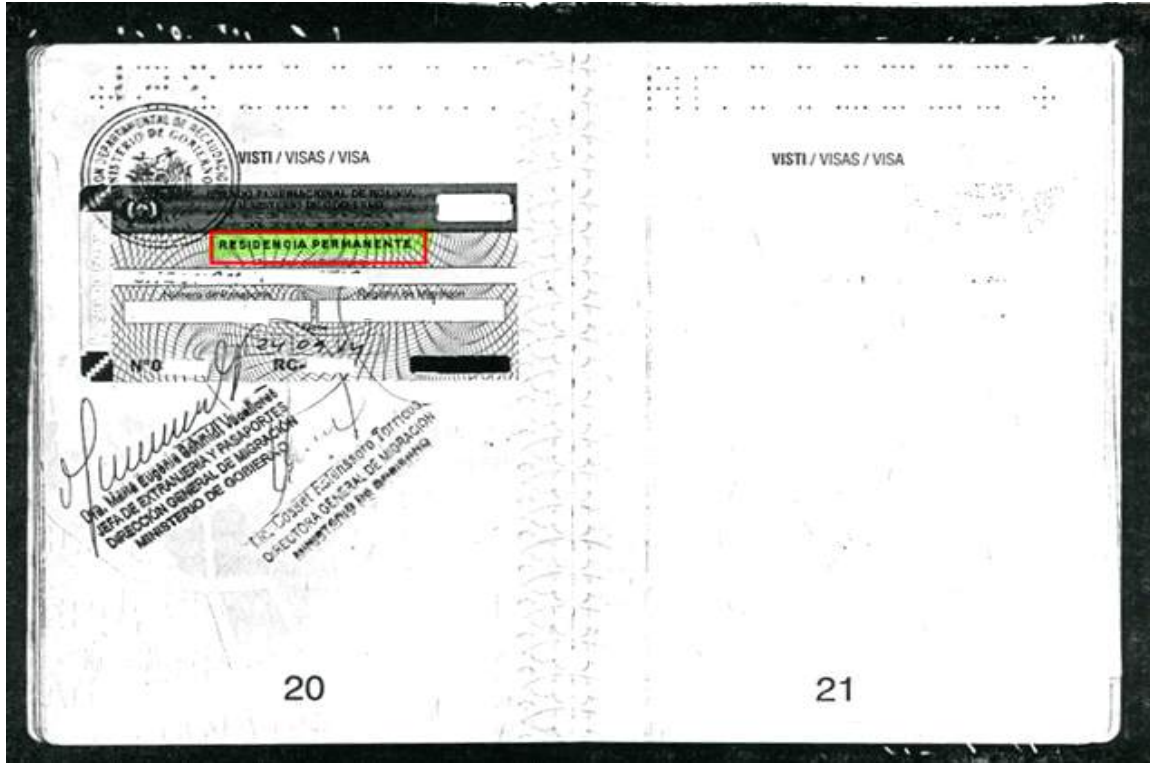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영주권 견본

1. 최근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2.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불가리아(Bulgar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카드(신분증)
3. 유효기간 : 여권상의 유효기간
4. 신청자격
 - ① 불가리아 혈통인 자
 - ② 불가리아인과 혼인하고 3년이 경과한 자
 - ③ 불가리아에 합법적으로 5년간 장기 체류한 자
 - ④ 불가리아 투자관계법에 따라 25만 미불 이상을 투자한 자
 - ⑤ 기 영주권을 취득한 배우자의 동반가족(단,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인 자)
5. 수속절차
 - ① 각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증명서, 영주권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
 - ② 4-③항의 경우 6개월 전에 작성 제출
 - ③ 영주권 취득시 현지화 1,000레바(500유로)의 수수료 지불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불가리아 배우자와 결혼후 5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기관명 : 내무부 이민국(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 주 소 : 48, “Maria Luiza” blvd, Sofia
 - 전화번호 : 00359 2 982 4585
 - 홈페이지 : <http://www.mvr.bg>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국의 체류법에 따라 국외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을 소유한자는 항시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일반 불가리아인과 동일한 지위 및 복지혜택 향유

III. 영주권 견본



브라질(Brazil)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외국인신분증(Cedula de Identida de Estrangeiro)에 PERMANENTE(영주)로 표시
※ 일반적으로 RNE(Registro Nacional de Estrangeiros ; National Registry of Foreigners)로 부르는 경우도 많음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최장 9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족 초청 :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 영주권자의 가족
 - 배우자(비공식의 사실상 배우자 포함, 동성 배우자도 포함)
 - 자녀 : 18세 미만, 24세 미만 학생, 부양할 능력이 없고 특별보호가 필요한 자녀 (연령제한 무)
 - 부모 :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부모, 브라질 아이를 결정적으로 부양하는 부모
 - 형제자매, 손자, 증손자: 미혼이며 고아로 브라질인 또는 브라질영주권자의 법적인 보호하에 있으며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로 18세 미만자, 24세 미만의 학생,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은퇴자 이민 : 월 연금소득이 6,000 헤알 이상(은퇴자 본인 및 부양인 2명에 대한 영주권 발급)인 자, 추가 부양인 1인당 월 2,000헤알의 연금소득 추가
 -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 종교나 사회복지단체 지도자
 - 투자이민 : 15만헤알 이상 투자자
 - 기업임원 : 1인당 60만 헤알 이상의 외국자본이 투자되어 있거나 또는 최소 15만 헤알 이상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최소 10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약속한 회사에 파견 되는 임원
 - 전문가이민 : 과학자나 전문가에 대한 브라질 기관의 초청
5. 수속절차
 - 투자, 기업임원 및 전문가 이민: 브라질내 초청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브라질 노동 고용부에 ‘노동허가’ 신청 - 노동허가후 해외 주재 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 - 입국 후 30일 이내 연방경찰에 등록

- 가족초청, 은퇴자 및 종교, 사회단체 지도자 이민: 해외 주재 브라질대사관에 비자 신청 - 입국 후 30일 이내 연방경찰에 등록
-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24개월을 연속하여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무효됨
- 7. 부활제도 : 부활제도는 없으나, 상실시 재신청이 가능함. 외국인신분증 유효기간 만료 90일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체시 과징금이 부과됨
- 8. 포기제도 : 본인이 원할 경우 연방경찰에 영주권 반납이 가능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브라질 연방경찰(Polícia Federal: www.dpf.gov.br)
- 10. 기타사항 :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는 외국인신분증 갱신의무를 면제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여권과 영주권 소지로 자유로이 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공직 입후보, 공직선거서 투표권, 공무원 응시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영업활동, 교육 및 의료혜택을 누림

III. 영주권 견본



브루나이(Brunei)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Brunei Permanent Resident
2. 형태 : Entry Permit(수첩 형태)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형식상 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취득하는 것은 개별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취득이 극히 제한적임
5. 수속절차 : 개별심사를 통해 이루어짐
6. 효력상실(취소)사유
 - 영주권 소지자가 입국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를 동행하고 재입국하는 경우
 - 영주권 소지자가 입국금지자로 판명된 경우
 - 영주권 소지자(입국허가증)가 기망 등을 통해 동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이 판명될 경우 등(Immigration Act 14조)
 - ※ 영주권 취소관련 취소처분의 근거와 동 처분에 대한 항변할 수 있으며 국왕이 이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거주지 및 이민당국이 합당하고 판단하는 주소지로 고지하여야 함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으로 처리됨
8. 포기제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v.bn>
10. 기타사항
 - 영주권 신청시 형식상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심사기준도 딱히 정하지 않고 개별적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나 영주권 부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음
 - ※ 주재국 국민과 연고가 없는 경우 최소 20년 이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우리국민이 신청하여 거절된 사례가 있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매출입국시 Re-entry Permit 스탬프를 받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시민권자와 비교할 때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은 없으며, 이외 교육, 복지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혜택을 받음

III. 영주권 견본



사모아독립국(The Independent State of Samo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범법사실이 없는 선량한 성품의 건강한 사람의 직업, 전문 기술, 사모아어 구사능력, 사모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5. 수속절차 : 외국 주재 사모아공관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모아 이민사무소로 문의 신청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사모아 국외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사모아 이민사무소(Immigration Division)
 - 주소 : P.O. BOX L 1861, Apia, Samoa
 - 전화 : (685)20291/20292
 - 이메일 : immigration@samoa.ws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자는 사모아를 주 거주지로 해야 하며, 매년 6개월 이상 사모아에 거주하여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

사이프러스(Republic of Cyprus)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Adeia Metanastevsis(Immigration Permit)
2. 형태 : 여권에 스티커 부착(과거, 단순 도장 또는 EU 국민은 노란색, 제 3국민은 분홍색 A4 종이로 발급)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972년 외국인 및 이주 관련 규정 5조(특별규정)에 의거 사이프러스는 다음의 범주에 한하여 이주허가(영주권)를 부여할 수 있음
 - 범주 1 : 사이프러스 공화국 내 농업, 축산업, 양어, 조류사육 부문에 투자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면적의 부지 및 인허가와 250.000 사이프러스 파운드 (427.150 유로) 이상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 가능한 이주자로서, 동 경제활동이 사이프러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여됨
 - 범주 2 : 사이프러스 공화국 내 광업 부문에 투자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인허가와 200.000 사이프러스 파운드 (341.720 유로) 이상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 가능한 이주자로서, 동 경제활동이 사이프러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여됨
 - 범주 3 : 사이프러스 공화국 내 자영기업 활동 위해 요구되는 인허가와 150.000 사이프러스 파운드 (256.290 유로) 이상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 가능한 이주자로서, 동 경제활동이 사이프러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여됨
 - 범주 4 : 사이프러스 공화국에 필요한 과학기술부문의 자영기업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학력 또는 전문자격조건을 갖춘 이주자로서, 충분한 자금 확보 전제하에 부여됨
 - 범주 5 : 사이프러스 공화국 내 영구 고용된 이주자로서, 동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부여됨
 - 범주 6 :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도 사이프러스 공화국 내 생활에 요구되는 액수 이상의 충분한 연간 소득을 확보한 이주자로서, 본인 소득 연간 최소 5.600 사이프러스 파운드(9568 유로)와 부양가족 1인당 최소 2.700 사이프러스 파운드(4613 유로)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에 한해 부여될 수 있음. 반면, 자격 검토 기관인 이주관리위원회(Immigration Control Board)는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전제로 요구할 수 있음. 이 범주의 이주허가 신청인들은 대부분 퇴직자들임

5. 수속절차

- 신청자는 M.67 이주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무부 산하 인구 및 이주 관리국 (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에 직접 또는 지방 경찰서 외국인 & 이주 관리소에 범주에 따라 요구되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함. 흔히 신청되는 제 6범주의 경우 소득 증명 관련 구비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신청자는 해외에서 우편을 통해 상기 기관 또는 해외 사이프러스 재외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은 이주관리위원회(Immigration Control Board)에서 검토된 후, 내무부 장관의 최종결정을 받음
-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최소 2년 이상 연속 부재 시 영주권 상실
- 7. 부활제도 : 효력 상실 시 재신청 가능
- 8. 포기제도 : 당국에 권리포기 단순 서면 신고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등기 및 이민관리국(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 www.moi.gov.cy)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자국에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간주하고 있어 자국민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은 없고 개인적 보험가입을 요구함

III. 영주권 견본

□ EU국민 영주권

(Form MEU1)

 **ΥΠΟΥΡΓΕΙΟ ΕΣΩΤΕΡΙΚΩΝ**
MINISTRY OF INTERIOR
ΤΜΗΜΑ ΑΡΧΕΙΟΥ ΠΛΗΘΥΣΜΟΥ ΚΑΙ ΜΕΤΑΝΑΣΤΕΥΣΗΣ
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 

ΒΕΒΑΙΩΣΗ ΕΓΓΡΑΦΗΣ / CERTIFICATE OF REGISTRATION
Πολίτης της Ένωσης και Μέλους της Οικογένειάς του που είναι επίσης Πολίτης της Ένωσης
of Union Citizen and EU Citizen Family Member

ΌΝΟΜΑ NAME		ΑΡ. ΦΑΚΕΛΟΥ FILE NO.	
ΕΠΩΝΥΜΟ SURNAME		ΑΡΙΘΜΟΣ ΕΓΓΡΑΦΗΣ REGISTRATION NO.	
ΠΑΤΡΙΚΟ Η ΑΛΛΟ ΕΠΩΝΥΜΟ FAMILY OR OTHER SURNAME		ΗΜΕΡΟΜΗΝΙΑ ΕΓΓΡΑΦΗΣ DATE OF ISSUE	

ΔΕΥΤΕΡΗ ΔΙΕΥΘΥΝΣΗ - MAIN ADDRESS

ΣΤ. ΖΩΝΗ ΣΤ. ΤΑΧ. ΣΤ. ΤΑΧ. ΣΤ. ΤΑΧ.

ΒΙΟΤΟΞΑΦΑ - PHOTO



Καταβλητέα Έξοδα / Fees - € 20.00

για Συνάμητο του Τμήματος
Αρχαίου (Πληθυσμίου και Μεταναστεύσεως)
for the Director of the
Civil Registry and Migration Department

Ο περί του δικαιώματος των Πολιτών της Ένωσης και των Μελών των Οικογενειών τους να Κινηθούν ελεύθερα και Διαμένουν Ελεύθερα στη Δημοκρατία Κύπρου του 2007, ΠΑΡΑΡΤΗΜΑ Ι, ΑΡΘΡΟ 10(2)
The Right of Union Citizens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Cyprus Law of 2007
ANNEX I, ARTICLE 10(2)

0002710014 *1401864*

세르비아(Ser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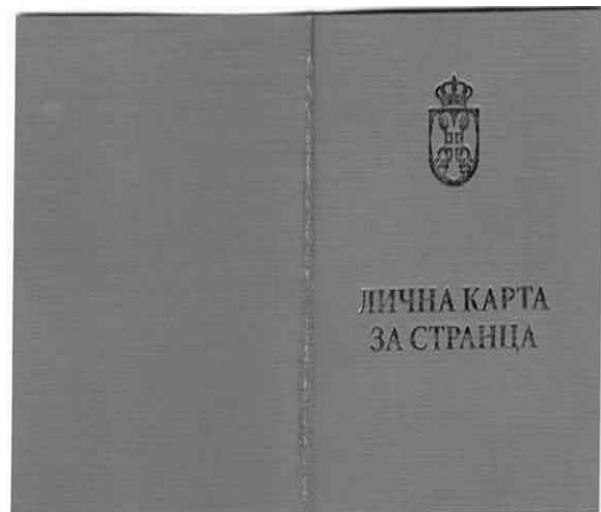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스탈노 나스타네네(stalno nastanjenje)
2. 형태 : 영주권 수첩(ID) 및 비자
3. 유효기간 : 5년마다 여권에 영주권 비자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세르비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간 세르비아에 거주하면서 단기 체류 허가(최초 6개월, 이후 1년 유효)를 3회에 걸쳐 취득한 외국인
 -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르비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배우자의 동의하에 세르비아에 단기체류허가로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녀의 영주권 신청 가능
 - 세르비아 출생자
 - 신청서 제출일까지 세르비아에서 단기거주허가로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5. 수속절차
 - 여권사본, 사진 2장, 월급내역서 및 재직증명서(취업카테고리), 혼인증명서, 건강 검진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세르비아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내무부(경찰)에 신청. 다만 출생증명서와 학력증명서 등은 영주권 신청 외국인의 본국 관계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추가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범죄혐의와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자
 - 생활능력을 상실하거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국가 공공질서 및 국민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자
 -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 거주권이 만료된 자
 -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7. 부활제도
 - 영주권 부활을 내무부에 신청. 영주권 자격 유지의무 태만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음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up.gov.rs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기간 허용기간 : 6개월 또는 10개월(5년 동안)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을 제외하고 세르비아 헌법에 의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지위

III. 영주권 견본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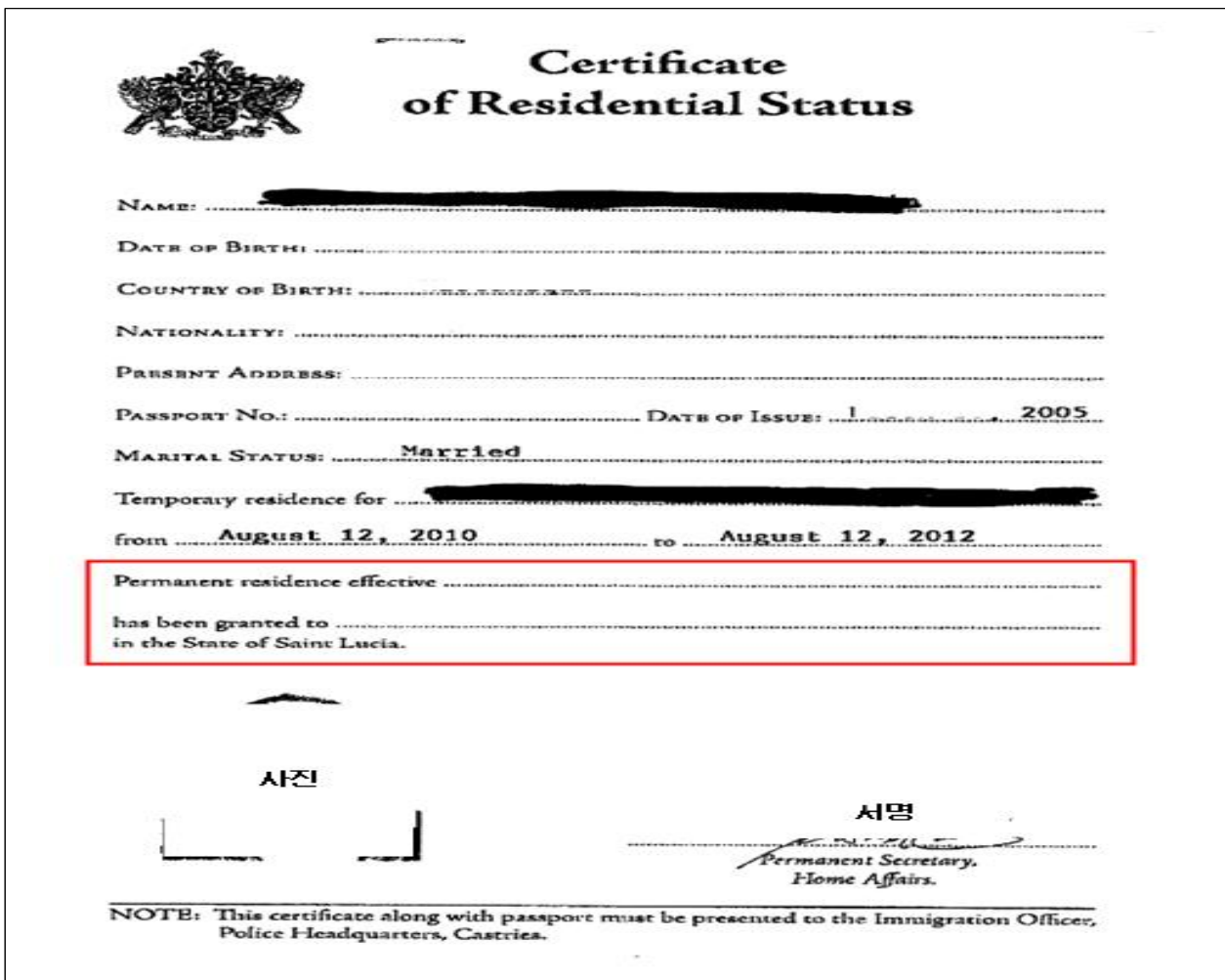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Certificate of residential status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취득 후 적어도 1년 계속하여 세인트루시아에 거주해야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에 제출
 - 세인트루시아 세관 확인증
 - 범죄 경력 증명서
 - 결혼 증명서 원본(이혼한 경우, 이혼 증명서 원본)
 - 여권용 사진 4매(사진 뒤 이름기재 요망)
 -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인지(EC\$ 11.50, 약 4.3미불) 부착
 -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Certificate 비용 EC\$ 2,550(약 945미불) 지불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부정 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
 - 거짓 증명서 제출
 - 세인트루시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별도의 공지 없이 해외거주가 길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포기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ttp://homeaffairs.govt.lc>)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취득 후 이민국에서 여권에 확인 도장을 받은 뒤에는 Certificate를 소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부동산 매매 가능
 -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
 - 국가 보험 시스템 등록 가능
 - 근로의 자유 보장

III. 영주권 견본



 **Certificate
of Residential Status**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COUNTRY OF BIRTH: _____

NATIONALITY: _____

PRESENT ADDRESS: _____

PASSPORT NO.: _____ DATE OF ISSUE: 1 _____ 2005

MARITAL STATUS: Married

Temporary residence for _____
from August 12, 2010 to August 12, 2012

Permanent residence effective _____
has been granted to _____
in the State of Saint Lucia.

사진

서명
Permanent Secretary,
Home Affairs.

NOTE: This certificate along with passport must be presented to the Immigration Officer,
Police Headquarters, Castri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실정법 위반 경력이 없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함께 Citizenship, Residency and Work Permit Dependent에 제출
 - 여권 사진 2장
 - 최근 6개월간 거주 국가 범죄 경력 증명서
 - 은행잔고 확인서
 - 건강 증명서
 - 신청 수수료 EC\$ 150(약 56미불), 매년 영주 비용 EC\$ 2,400(약 889미불)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국가 재량에 따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Citizenship, Residency and Work Permit Department (<http://www.pmooffice.gov.vc>)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기간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찍힌 영주허가 확인 도장이 있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및 근로권

수리남(Surinam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it Residence
2. 형태 : 비자 및 책자형
3. 유효기간 : 영구적
4. 신청자격
 - 장기체류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거주한 자
 - 일정한 수입으로 수리남 생활이 보장되는 자
5. 수속절차 : Consulaire Zaken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 : 6개월 이상 해외거주시 및 범법행위시
7. 부활절차 : 처음 신청시 동일 절차
8. 반납제도 : 없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1개월 이상 체류시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참정권만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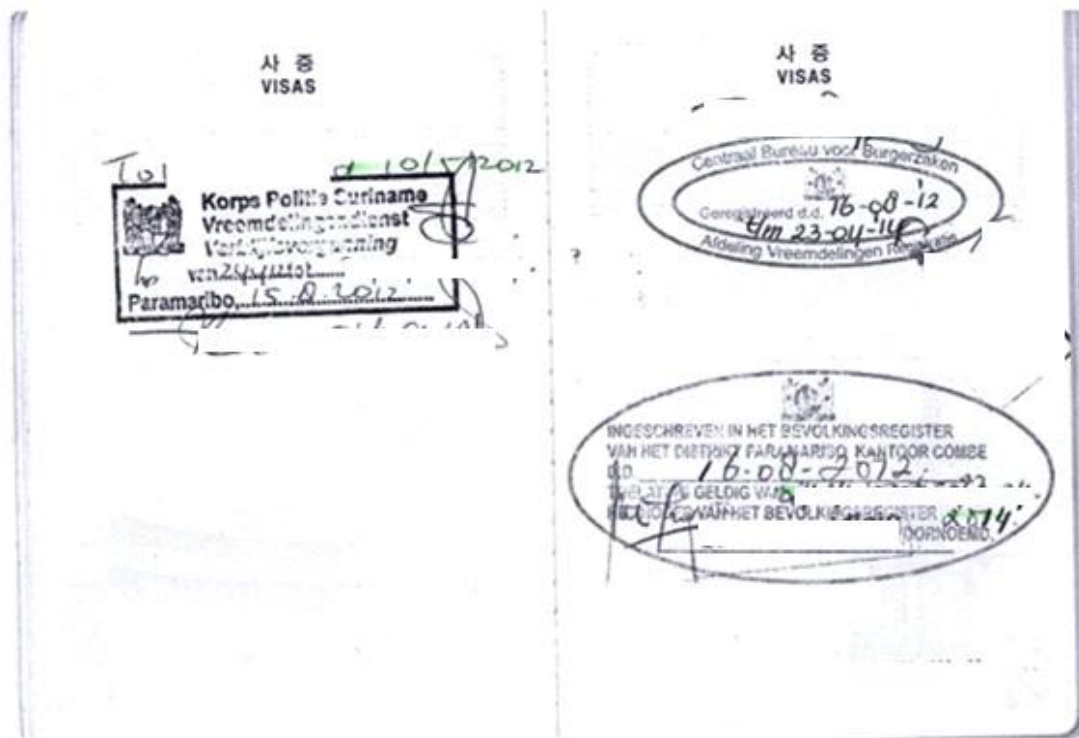
II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Permit Residence
2. 형태 : 비자 또는 책자형
3. 유효기간 : 6개월~1년
4. 신청자격 : 수리남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5. 수속절차 : Consulaire Zaken에 신청
6. 효력상실 사유 : 생활능력 상실 및 범법행위시
7. 부활절차 : 처음신청과 동일 절차
8. 반납제도 : 없음

IV. 장기체류자의 권리 및 의무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개월
- 2. 재입국 허가제도 : 1개월 이상 체류시
-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취업·취학 등 비자목적에 맞는 활동 가능

V. 영주권 견본



스웨덴(Sweden)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UT(Permanent uppehållstillstånd)
2. 형태 : VISA(카드형)
 - ※ 2011.5.20 스웨덴은 그간의 스티커형 비자를 카드형 비자(UT-card)로 변경
3. 유효기간 : 스웨덴 거주 동안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허가를 받은 후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5. 수속절차
 -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생활능력, 범법이력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발급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및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개별사안별로 판단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함
7. 부활 및 포기 제도 :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은 가능함(이민국에서 개별 사안별 판단하여 결정)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igrationsverket.se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스웨덴 거주기간 동안 별도 허가절차 없이 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는 달리,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고, 일부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제한되며, 경찰, 군인 등 일부 직업을 가질 수 없음. 이러한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동등한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을 누림

스위스(Switzer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Permit
(Ausländerausweis C, Livret pour étrangers C, Libretto per stranieri C)
2. 형태 : 카드(비 EU/EFTA 국민에게 발행), 종이증서(EU/EFTA 국민에게 발행)
3.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형식적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EU/EFTA 국민 : 5년 이상 거주
 - 비 EU/EFTA 국민 : 10년 이상 거주
 - ※ 미국, 캐나다 국민은 별도 규정 적용
 -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
 - 혼인일로부터 5년 이후(스위스 거주시)
 - 혼인일로부터 6년 이후(외국 거주시)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관청(Cantonal Migration Office)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징계로 인한 영주권 상실/취소
 - 신청과정 중 본인 또는 대리인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 또는 은폐한 경우
 - 장기 징역형 및 형사상의 중형 징계 (구금 또는 보호입원 치료 조치 포함)를 받은 경우
 - 스위스나 외국에서 국, 내외의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가한 자
 - 지속적으로 한도 이상의 사회복지 수급을 요구하는 자(15년 미만의 체류자에 한해 적용)
 - 기타의 경우
 - 영주권 기간만료 이후 갱신 신청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없이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 소멸 및 취소 사유에 따라 필요한 절차 및 재판을 거쳐 영주권 회복 신청 할 수 있음. 또는 신규 입국자와 같은 신분으로 재신청하면 신청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8. 포기제도 : 스위스에서 외국으로 이주 시 자진통보를 통해 영주권 취소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관청(Cantonal Migration Office), www.bfm.admin.ch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신고없이 6개월 해외체재 가능
 - 6개월 이상 체류시, 관할관청에 영주권유지허가 청구를 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
2. 재입국 허가제도 : 특별한 규정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등 일부 권리 제한 외에는 스위스 국민과 동등한 권리

III. 영주권 견본



스페인(Spain)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 거주증(Residencia de larga duración)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
 -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자
 - 자의에 의한 본국 귀환시 정해진 스페인 재입국 금지 기간 내에 있지 않은 자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 스페인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단, 5년간 스페인 출국 기간이 총 10개월(업무상 출국의 경우 1년)을 넘지 않고 1회 출국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EU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EU 내 5년 연속 거주하되, 거주증 신청 직전 2년간 스페인에 2년 연속 거주한 자(단, 5년간 EU 출국 기간이 총 18개월을 넘지 않고 1회 출국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에서 출생, 성년이 되어 거주증 신청 직전 최소 3년 연속 스페인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태생적 스페인 국민(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스페인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부모 중 1명이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자 등)으로서 스페인 국적을 상실한 자
 - 성년이 된 시점에 스페인 공공기관의 보호 하에 있되, 거주증 신청 직전 5년 연속 스페인에 거주한 자
 -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무국적자, 망명자 등의 지위를 스페인에서 인정받은 자
 - 스페인 경제, 과학, 문화 발전 또는 스페인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

5. 수속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류 제출/거주증 카드 발급/거주증 수령 등을 위해 총 3번 방문 필요)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증을 취득하거나 법에 의해 추방되는 경우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연속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거나 5년간 총 30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 연속 12개월 이상 EU 이외 국가에 체류한 경우
 - 만료 후 거주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관할 이민청 혹은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http://extranjeros.empleo.gob.es/es/InformacionInteres/index.html>)
10. 기타사항 : 5년마다 유효기간 만료 60일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신청 필요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스페인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 향유(단, 거주 지역에 따라 예외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인정)

III. 영주권 견본



슬로바키아(Slovak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3종)

- 5년 영구체류
- 무기한 영구체류
- 장기체류(무기한)

2. 형태 : ID 카드(3종동일)

3. 유효기간 : 5년 또는 무기한

4. 신청자격

- 5년 영구체류
 - 주재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 피부양 친족
 - 주재국 국민의 배우자인 제3국인의 보호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3국인의 자로서, 장기간의 건강상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피부양 자녀
 - 주재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무기한 영구체류
 - 5년 영구체류허가를 최소한 4년간 유지한 자
 - 무기한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제3국인의 18세 미만의 자녀
- 장기체류(무기한)
 - 주재국 영토내 체류가 신청 전까지 5년간 계속적이고 적법하게 체류한 자
 - 장기체류 신청 전까지 유럽연합의 회원국,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당사자인 회원국 및 스위스 연방에서 블루카드소지자로서 5년간 계속 적법한 체류를 한 자
 - 주재국에서 블루카드소지자로서 최소 2년간 체류한 자

5. 수속절차

- 5년 영구체류
 - 접수처 : 대표부 또는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행증서(여권), 사진 2매(3X3.5cm), 체류목적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정적 준비금, 거주증명서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무기한 영구체류
 - 접수처 :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행증서(여권), 사진 2매(3X3.5cm), 재정적 준비금, 건강보험, 범죄경력증명서(무기한 영구체류를 소지한 제3국인의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거주증명서, 지속적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확인서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장기체류(무기한)
 - 접수처 : 외국인 경찰서
 - 필요서류 : 체류허가신청서, 유효한 여행증서(여권), 사진 2매(3X3.5cm), 재정적 준비금, 거주증명서, 건강보험
 -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5년 영구체류 및 무기한 영구체류
 - 영구체류허가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슬로바키아 영토 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본인이 경찰에 체류의 종료에 관하여 고지하는 경우
 - 5년 영구체류기간이 만료하고, 무기한 영구체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추방형을 받거나 또는 추방된 경우
 - 주재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경찰이 영구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장기체류(무기한)
 - 본인이 장기체류를 포기한 경우
 - 추방형을 받거나 또는 추방된 경우
 - 주재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경찰이 장기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다른 회원국(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약 당사자인 회원국 및 스위스연방)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경우
7.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inv.sk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지위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영구체류 및 무기한 영구체류: 경찰에 고지 없이 180일 이상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우 취소
 - 장기체류(무기한) :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사회복지, 의료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슬로바키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부여(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부여)

III. 영주권 견본



슬로베니아(Republic of Slove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Dovoljenje za stalno prebivanje(Permanent Resident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EC NO. 103072002에 따른 EC No. 380/2008 규정)
3. 유효기간 : 무기한(10년 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슬로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자
 - 슬로베니아 국적자였던 자의 자녀인 경우
 - 슬로베니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자
 - 슬로베니아 영주권자였다가 다른 EU 국가로 이동하여 영주권이 소멸된 자
 - 슬로베니아 영주권자였다가 다른 EU 국가에서 장기체류허가 취득으로 영주권이 소멸된 자
 - 슬로베니아 시민권자, EU 국민, 스위스 국민의 가족
 - EU Blue Card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 전 2년간 슬로베니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였고 다른 EU 지역에서 거주한 것과 통합하여 5년 이상인 경우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이 신청함(영주권이 발급 될 때까지 슬로베니아에 체류하여야 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외국인 법에 명기
 - 파견근무, 학업 또는 의료 치료 목적 이외에 외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EU 밖으로 나가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슬로베니아 영토 밖에서 6년 이상 체류할 경우
7. 부활제도
 - 슬로베니아 영주권 소지자였으나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슬로베니아 또는 EU 밖으로 이주해 영주권이 소멸 된 외국인
 - 슬로베니아 영주권 소지자였으나, 다른 EU 회원국의 장기체류자격 취득으로 인해 슬로베니아 영주권이 소멸된 외국인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각 지방 행정기관
 - <http://www.infotujci.si/v/12/permanent-residence-permit>
 - * 슬로베니아 내무부가 외국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임시거주 및 영주권 귀화에 관한 신청서 등 여러 자료 수록
 - www.mnz.gov.si (슬로베니아 내무부 홈페이지)

싱가포르(Singapor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Blue I/C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없음
 - 단, 재입국허가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허가를 득해야 Blue I/C 유효하며 재입국허가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Blue I/C 효력 상실
 -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5년 이내
4. 신청자격(취득조건)
 - A.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 배우자
 - B. 시민권자의 노부모
 - C. 취업 비자 소지자 (Employment Pass / S pass 소지자)
 - D. 이민투자자
5. 수속절차
 - 신청자격 중 A,B,C 에 해당하는 자격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민국에 서류접수예약 (약 6개월 전) 후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D(이민투자자)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자는 이민국이 아닌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이혼, 출국 후 재입국허가 연장을 안 한 경우, 법 위반 또는 국가명예 훼손자
7. 부활제도 : 상실 후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본인의사에 따라 영주권 포기 가능.
 - 단, 영주권 포기 후 다른 장기체류비자 신청 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A,B,C 자격자 : 이민국(<http://www.ica.gov.sg>)
 - D(이민투자자)자격자 : 경제개발청(<http://www.contactsingapore.sg/GIP>)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싱가포르 영주권자가 타국에 장기간 체류시)
 -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이전까지는 제3국 체류하고 싱가포르로 귀국할 수 있음
 -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제3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체류하는 대사관 또는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의 A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1세 미만 남자인 영주권자는 병역 의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출국허가를 받아야 함
 - 13세-16.5세 병역의무자 대상자
 - *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2년 미만일 경우 출국허가서 작성하여 신청
 - * 해외체류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출국허가서와 75,000 싱가포르 달러 귀국보증금 납부
 - 16.5세 이상으로 미입영자인 경우
 - *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출국허가서와 75,000달러 귀국보증금 납부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
 - A에 해당하는 신청자격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1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
 - CPF(노후대비 강제적금) 의무가입
 - 일반체류자에 비해 국.공립학교 입학 및 학비면에서 혜택
 -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장제도(Medisave, Medishield) 가입 혜택

III. 영주권 견본

- Blue I/C



아르메니아 공화국(Republic of Arme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상시거주허가증
2. 형태 : 카드형
3. 유효기간 : 5년(5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형, 10년(10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형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80일 이상 체류 예정 외국인
5. 수속절차 : 경찰 여권비자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반국가 행위, 테러, 추방 또는 강제퇴거, 마약중독자 및 AIDS 보균자 등
7. 부활제도 : 신청절차에 따라 재취득
8. 포기제도 : 발급기관에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르메니아공화국 경찰 여권비자국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불가)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별도 명시 기간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비자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노동 가능, 자유로운 입출국, 사회기초보장

아르헨티나(Argentin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2. 형태 : 카드형(2012년 4월 20일 국립주민등록법, 제797법)
3. 유효기간
 - 영구영주권 : 유효기간 없음(단, 10년마다 카드 갱신)
 - 임시영주권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유효
 - 단기체류권 : 3개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사업자 이민 : 국내 법인체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발령된 자
 - 투자 이민 : \$1,500,000 페소 이상의 사업자본을 국내에 투자한 자
 - * 이민청에 투자에 관한서류, 프로젝트 설명서를 제출하며, 투자금은 국내에서 인정하는 은행/금융권을 통해 들어와야 함
 - 연금자이민 : 연금 액수와 유효기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명서(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로 통해 발급 받아야 함)
 - 국외소득 생활자 :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국내체류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매월 기본 \$8,000 페소를 국내에서 인정하는 은행/금융권으로 입금된 영수증 제출). 즉, 정기적인 국외 소득액 이 최소한 \$8,000 페소 이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취업이민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주의 외국인 사용자등록인증(고용주가 개인일 경우: 현지 무범죄증명서, DNI(영주권) 제출의무, 고용주의 세무 및 사업자등록서, 아르헨티나 거주증명서)
 - 가족이민
 -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
 - 아르헨티나 국적이거나 영구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 아르헨티나 영구영주권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
 - 아르헨티나 국적이거나 영구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를 둔 자
 - 목회자/선교사 이민 : 정부가 인정한 종교집단의 목회 또는 선교활동 종사자(고용

할 종교집단에 관한서류 종교청과 이민청 앞으로 고용할 목적, 기간 등 설명된 신청서를 종교청에서 공증을 받고 그 서류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함)

- 체육특기자 및 문화계 종사자 : 체육특기자로 국내 단체 및 관련분야에 계약된 자, 문화계 종사자로서 국내 단체 및 관련분야에 계약된 자(체육특기 또는 문화계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공증인 또는 이민청 직원 앞에서 확인 받아야 함. 계약서와 고용주의 외국인사용자등록 인증)
- 연구원 및 특별기술보유자 : 연구원 및 특별기술보유자로서 국내 관련분야에 고용된 자(졸업장 및 자격증 제출, 고용계약서, 고용주의 외국인 사용자등록인증, 이력서)
- 교환교수 :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교환교수로 임명된 자(이력서, 고용계약서, 교육기관으로부터 고용설명서를 작성해야 함. 고용자의 외국인사용자등록 인증)
- 장기유학비자 : 교육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 1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중인 자(교육기관이 발급하는 학생등록증명서, 고용자의 외국인사용자등록인증)
- 기타 : 망명자, 난민자, 환자 등의 등급이 있다(난민자 경우에는 난민자들을 위한 국립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난민자증명서(Comision Nacional para los Refugiados)를 제출해야 함. 망명자 경우는 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망명자에게 보호를 준 나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

5. 수속절차

-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하나는 이민 신청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서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등급에 관련된 서류임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에 대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범죄증명서, 여권, 아르헨티나 무범죄증명서, 아르헨티나 거주증명서, 사진 2장(4x4)이며, 이민 등급에 대한 서류는 등급에 따라 다름
- 모든 이민 등급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고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 이민 희망자 본인과 초청인이 직접 이민청에 영주권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음.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속이 가능한데, 이때 대리인은 이민청에서 관리하는 이민 수속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자라야 함

※ 영구 영주권 취득

- 직계가족 이민의 경우 연고가족이 아르헨티나 시민권 소지자나 영구영주권 소지자면 동급의 영주권이 발급됨
- 다른 이민자의 경우, 일차로 임시영주권(조건부 단기 기간)이 발급되고, 연장해 나가다가(이민법상으로는 3년 기한의 단기 임시영주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민국에서는 1년 기한의 임시(단기)영주권만 발급)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음.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이민 수속시 등급에 관련된 서류와 동일함. 단 갱신일을 기준으로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연장 인지대(\$600 페소)를 납부해야 함

- 투자이민자나 연금이민자 등은 일차 연장 때부터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직 이민자의 경우 3회 연장 후부터는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함.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이민 수속시 등급에 관련된 서류와 동일하다. 단 연장일을 기준으로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제출도 요구됨. 또한 연장 인지대 (\$600 페소)를 납부해야 함

※ 신분증 발급

- 이민청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면, 국립주민등록소(Registro NacionaI de las Personas)에서 신분증 발급을 신청함.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민청에서 발급한 영주권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임. 이외에도 소정의 수속비(\$35 페소)를 지불해야 함

- 6. 효력상실(취소)사유 : -
- 7. 부활제도 : -
- 8. 포기제도 :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igraciones.gov.ar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미만
-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어떤 경우에도 외국인이란 신분으로 인해 교육기관(공립, 사립, 국립, 주립,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판, 사회구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음
 - 외국인들은 국가선거(대통령, 부대통령,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없으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부에노스 아이레스시 포함), 까따마르까주, 미시오네스주, 네우켄주 및 산타페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지사선거 및 시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무적이지는 않음

III. 영주권 건본

REPUBLICA ARGENTINA - MERCOSUR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
 MINISTERIO DEL INTERIOR Y TRANSPORTE

EXTRANJERO

Apellido / Surname: _____
 성: _____
 Nombre / Name: _____
 명: _____

Sexo / Sex: _____ Nacionalidad / Nationality: **국적** Ejemplo: **발행횟수(주거국은 발파켓수서)**
 Fecha de nacimiento / Date of birth: _____
 생년월일: _____
 Fecha de emisión / Date of issue: _____
 발급일: _____
 Fecha de vencimiento / Date of expiry: _____
 만료일: _____

Documento / Document: _____
 영주권 번호(8자리 숫자): _____ 영주권신청번호: _____

DOMICILIO: 주소

LUGAR DE NACIMIENTO: 출생지

FECHA DE INGRESO AL PAIS: 입국일자

CATEGORIA DE INGRESO: 영주권종류

EXPEDIENTE: 관령문서번호 DISPOSICION: 법령번호

FECHA DE RADICACION: 취득일

Dr. A. Florencio Randazzo
 Ministro del Interior

PULGAR

아이슬란드(Ice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증(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흰색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카드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아이슬란드에 거주허가가 승인된 자
 - 아이슬란드에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자
 - 범죄경력이 없는 자
 - 아이슬란드어 학습과정을 1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수속절차 : 아이슬란드 이민국 사무소에 영주권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이 취소 된 경우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외국에 영주거주 하는 조건으로 이민국에 반납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아이슬란드 이민국(www.utl.is)
10. 기타사항 : 영주권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자격 및 조건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8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정착허가를 받은 경우 상시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사회보장(의료보험, 무료교육, 연금 등)혜택 부여

아일랜드(Ireland)

I. 유한 영주권 제도

1. 명칭 : 유한영주권(Without Condition As To Time Endorsements)
2. 형태 : 스탬프(여권에 날인)와 카드로 구성
 - 스탬프(“STAMP 5”)를 날인 받아야 함
 - STAMP 5 내용 : "THE HOLDER OF THIS PASSPORT IS PERMITTED TO REMAIN IN IRELAND WITHOUT CONDITION AS TO TIME"
 - 카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수령해야 함
 - 일명 “GNIB 카드(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Card)” 라고 불림
 - ※ 플라스틱, IC칩 내장 및 사진으로 구성 되어 있음
3. 유효기간 : 여권 만료일까지(여권교체 시 재발급 신청 필요)
4. 신청자격
 - 아일랜드 내 적법하게 총 9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 Stamp 2(일반학생), Stamp 2A(단기학생), Stamp 4(거주) 중 임시방문의사 또는 주재원직원, Stamp 1A(회계사 연수체류), Stamp 3(조건거주) 중 주재원직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
 - ※ Stamp 4(거주자격) 소지자는 만료 6개월 전 부터만 신청 가능
5.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주소
 -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산하 이민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 ※ 이민국 홈페이지(www.inis.gov.ie) 참조
6. 효력상실 등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범죄행위자나 아일랜드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7. 포기제도 등
 - 별도 포기제도는 없음
 - ※ 영주권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간주

8. 기타

- 반드시 영주권 발급 후 GNIB 등록 및 카드발급을 마쳐야 적절한 체류로 인정됨
- 유효기간 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제3국 체재 가능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 취업허가(Employment Permit) 없이도 취업 및 창업 가능
- 참정권은 없으며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II. 무한영주권 제도

1. 명칭 : 무한영주권 (Without Condition Endorsement)

2. 형태 : 스탬프(“STAMP 6”)를 여권에 날인

3. 유효기간 : 무기한(단, 여권교체 시 재발급 신청 필요)

4. 신청자격

- 아일랜드 국적인(아일랜드 여권 소지자 또는 발급 대상인 자)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자
- 아일랜드 국적 취득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

5.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주소

-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산하 이민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 이민국 홈페이지(www.inis.gov.ie) 참조

6. 효력상실 등

- 간첩 활동 등으로 아일랜드의 국익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7. 부활제도 및 포기제도

- 별도 부활제도 없음
- 복수국적 불허 국가의 국적 취득을 위해 아일랜드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포기 가능

8. 기타

- 아일랜드는 복수국적 허용 국가로서 복수 국적자 중 외국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Stamp 6” 를 날인 받아야 함

III. 장기거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거주권 (Long Term Residency) - STAMP 4 또는 STAMP 3
2. 형태 : 스탬프(여권에 날인)와 카드로 구성
 - 스탬프(“STAMP 4” 또는 “STAMP 3”)를 날인 받아야 함
 - 카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수령해야 함
 - 일명 “GNIB 카드(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 Card) “라고 불림
 - ※ 플라스틱, IC칩 내장 및 사진으로 구성 되어 있음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
 - 취업 자격(work permit/work authorisation/working visa)으로 아일랜드 내에서 적법하게 60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Stamp 1” 또는 “Stamp 4” 소지자만 해당
 - 취업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Stamp 3”)으로 아일랜드 내에서 적법하게 60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아일랜드인과 혼인한 자, EEA국민, EEA국민과 혼인한자, 학생(“Stamp 2”, “Stamp 2A”), 워킹홀리데이, 주재원직원, 주재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대사관 직원, 창업자격거주자, 난민 및 난민가족은 신청 불가
 - ※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구역으로 EU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칭함
5.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주소
 - 아일랜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산하 이민국(Irish Naturalisation and Immigration Service)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
6. 효력상실 등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90일 이상 제3국 체재 등 해외거주로 판명되는 경우
 - 범죄행위자나 아일랜드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7. 포기제도 등
 - 별도 포기제도는 없음
 - ※ 장기거주권이 취소된 자는 새로운 신청자로 간주
8. 기타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 취업허가(Employment Permit) 갱신 없이도 취업 및 창업 가능[단, 배우자 또는 자녀 (“Stamp 3”)는 취업허가 필요]
- 참정권은 없으며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알바니아(Republic of Alba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LEJE QENDRIMI PER TE HUAJT(Residence Permit For Foreigner)
2. 형태 : A4 크기의 문서(과거에는 스탬프형식)
3. 유효기간 : 무기한(여권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일자를 부여받고, 여권 재발급시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알바니아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
5. 수속절차 : 1년 또는 2년 체류허가증을 연속하여 5년 이상 발급받은 후 체류허가증 갱신 시 영주권 신청 가능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알바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 및 치안에 위험이 될 경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허위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지 관할 경찰서 이민국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알바니아 시민처럼 경제활동의 자유, 교육,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III. 영주권 건본

No. 11111



REPUBLIKA E SHQIPERISE
 MINISTRIA E BRENDSHME
 Drejtoria e Pergjithshme e Policise se Shteti
 Departamenti per Kufirin dhe Migracionin
 Drejtoria Rajonale per Kufirin dhe Migracionin TIRANE

LEJE QENDRIM PER TE HUAJT
 RESIDENCE PERMIT FOR FOREIGNER

TIP I
 Type C

EMRI (AT)
 First name (s)

MBIEMRI
 Family name

Vendndija
 Place of birth

KOREA (I)

Data lindja
 Date of birth

DOKUMENT UDHETIMI
 Travel document

SHITESIA
 Nationality

GJINA
 Sex

GUENDJA CIVILE
 Marital status

MOTIVI I QENDRIMIT
 Purpose of stay

ADRESA NE SHQIPERI
 Address in Albania

Kjo Leje Qendrimi eshte e vlefshme nga data
 This Residence Permit is valid from

20.06.2014

deri me daten
 until 20.01.2024



DREJTORI
 /Bivacndri/ ..



에스토니아(Eston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 체류허가(Long-term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별도 통지일까지 유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① 임시 체류 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로 5년간 거주, ② 유효한 임시 체류허가를 소지, ③ 에스토니아 거주 등록 ④ 생계유지 가능한 장기적 법적 수입, ⑤ 건강보험에 가입, ⑥ 기본적인 에스토니아어 구사 능력(언어법에 따르는 B1 이상의 수준)
5. 수속절차 : 경찰-국경수비청에 신청서, 신분증, 생활능력(수입) 증명서, 언어능력 확인서, 사진, 수수료를 제출하여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① 공공질서 및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신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국가 반역죄로 처벌되고 그 범죄 기록이 소멸되지 않은 자, ④ 효력상실 신청, ⑤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비EU 국가에 거주, ⑥ 기타 EU국가에서 장기체류자력을 부여받은 경우, ⑦ 6년 이상 해외 거주
7. 부활제도 : ① 기타 EU국가 장기 체류자격 부여, ② 6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 거주, ③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비EU국가 거주를 이유로 외국인이 장기 체류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활 가능
8. 포기제도 : 있음(신청인의 요청)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경찰-국경수비청(<http://www.politsei.ee>)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거주허가증 신청시 지문채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비EU 국가에 12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인정. 출산수당, 양육수당 등 일부 복지제도의 혜택이 있음

III. 영주권 견본



거주허가증

이름
거주허가증 만료일
거주허가증 종류와 발행날짜
비고



거주 허가증

생년월일 및 장소 국적 성별

바코드

비고
근로법 관련 조항 명시

에콰도르(Ecuador)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Visa de inmigrante
2. 형태 : 여권에 영주거주비자 및 거주지 행정기관 발급 신분증(Cedula)
3. 유효기간 :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에콰도르의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이민사증을 소지하여야 함. 또한 일반비자 소지자도 입국 후 이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5. 수속절차
 - 이민사증 소지자
 - 에콰도르 입국 30일내에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에 사증등록 및 이민사증 종류에 따른 관계서류 구비하여 제출
 -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에서 발행된 신분증(Cedula) 발행 허가서를 Registro Civil에 제출, Cedula 수령
 - 일반사증 소지자
 - 에콰도르 입국 후 이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에 이민사증 신청서류 구비 후 신청
 - 상기 접수기관은 접수 후 15일내에 이민사증 발급여부를 결정
 - 이후 절차는 상기 이민사증 소지자의 경우와 동일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외국인 소지 영주권은 사증이 무효화되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
 - 영주권 취득 후 첫째 해 90일, 둘째 해 90일, 2년 후 18개월 이상을 외국에 체재할 경우에는 사증이 무효화
7. 부활절차 : 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영주권취소신청서 및 여권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거주외국인관리국(Unidad de Extranjeria)
<http://www.cancilleria.gob.ec>
10. 기타사항 : 최근 영주권 수속 절차 장소가 Dirrecion General de Extranjeria 에서 외교부에 속한 Unidad de Extranjeria로 변경되었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취득 후 첫째 해 90일, 둘째 해 90일, 2년 후 18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별도 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영주권 취득 5년 후 선거권 획득
 -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이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음.
4. 기타사항 : 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없음.

III.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영주권자, 영주번호
이름, 성
출생지
국적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발급지 및 날짜
유효기간

2. 영주 비자



엘살바도르(El Salvador)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ia Definitiva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4년(4년마다 영주권 갱신 필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거주(1년 단기거주권을 5년간 갱신)
 - 내국인과 혼인하고 2년 이상 거주(결혼 전 기간 포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단기거주권 5년 보유자
 - 신청서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 단기거주권(Carné de Residente Temporal) 사본
 - 엘살바도르 경찰청 발행 무범죄경력 증명서
(Solvencia de Policía Nacional Civil de El Salvador)
 - 전염병 비 보균자임을 증명하는 엘살바도르 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Constancia de salud expedida por médico salvadoreño, que haga constar no padecer de enfermedades infectocontagiosas)
 - 납세증(NIT: Número de Identificación Tributaria)
 - 기본증명서(Certificación de Partida de Nacimiento, 대사관 영사확인)
 - 유급 근로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회보장연금 및 의료보험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 노동계약서
 - 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업가의 성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 내국인과 혼인한 자

- 신청서
 - 여권 전체 페이지 사본
 - 결혼증명서
 - 단기거주권(Carné de Residente Temporal) 사본
 - 기본증명서(Certificación de Partida de Nacimiento, 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출생국 또는 2년 전에 거주한 국가의 무범죄 경력 증명서(영사확인 필요)
 - 엘살바도르 경찰청 발행 무범죄 경력 증명서
(Solvencia de Policía Nacional Civil de El Salvador)
 - 전염병 비 보균자임을 증명하는 엘살바도르 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Constancia de salud expedida por médico salvadoreño, que haga constar no padecer de enfermedades infectocontagiosas)
 -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 유급 근로자인 경우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 노동계약서
 - 사업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사업가의 성명이 명시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의 세금납부증명서(변호사 공증)
 - 비취업자 또는 연금 수령자인 경우 추가 서류
 - 재정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호사 공증 필요)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허가 없이 1년 이상 제3국 체류 시
 - 영주권 유효기간(4년) 만기 전 미 갱신 시
7. 부활제도 : 영주권 유효기간(4년) 만기 전 미 갱신한 경우, 영주권 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1년 이내 벌금(\$2.86 ~ \$11.43) 지불 후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포기 내용의 서면을 제출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사법 및 공공안전부, <http://www.seguridad.gob.sv>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내국인과 동등(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II. 영주권 견본



영국(United Kingdom)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Indefinite Leave to Remain(ILR) 또는 Permanent Residency(PR)
 - PR은 EEA(유럽경제지역 19개국) 또는 스위스 국민과 그들의 가족만 해당
2. 형태
 - 전자 칩 내장 카드 발급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은 경우, 여권 내에 영주권 스티커 부착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 신청 가능 비자 조건 및 체류 의무 기한

소지 비자 자격	영국 체류 의무 기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의 18세 미성년 자녀 혹은 입양자녀 - 영주권자가 부양하는 18세 이상 성인 자녀 혹은 친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성인 자녀(친족)의 경우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며 영국 생활 시험 및 영어 성적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됨 - 신청자 부모의 비자 종류에 따라 자녀의 제출 서류가 추가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인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 - 고용허가비자 - 사업 비자 및 투자자 - 해외 방송사, 항공사, 기타 회사의 영국 지사 직원 - 스포츠맨, 작가, 예술가, 변호사 - 은퇴비자(Retired Person Visa), 영국 가계 비자(UK Ancestry Visa) - 4년 이상 영국군에 근무 중이거나 은퇴한 자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비자의 경우 사업체가 창출한 일자리 수 및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비자 의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경우도 있음 -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비자 의무 기간이 2년, 3년, 5년으로 다양 - 은퇴비자 자체는 2012.7월 폐지되었으나, 현재 동 비자를 소지한 자는 영주권 신청 가능
기타 적법한 비자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영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온 경우

<p>“10-year Private Life Rou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비자 없이 영국에 거주해온 경우라도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10-year Private Life Route’에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0년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18~24세 사이이며 생애의 절반 이상을 영국에서 살아온 경우 · 25세 이상이며 영국에서 20년 이상 살아온 경우 · 18세 이상이며 영국에서 20년 미만 살아왔으나 영국 외 다른 나라에 연고가 없는 경우 · 기타
-------------------------------------	--

※ 해당 기간 중 1회 국외체재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동시에 12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국외에 체재하지 않아야 하는 등 소지 비자의 종류에 따라 국외체재기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됨

2) 영국 생활 전반에 대한 상식

- 영국 생활 관련 상식에 대한 증거자료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영주권자 신청자에게 영국 생활 시험(Life in the UK test) 의무화
 - 영국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 상식 시험으로 45분간 컴퓨터로 실시(24문항)하며 75% 이상일 경우 합격 처리됨
 - 영국 내 60여개 지역 시험장에서 가능하며 2015.2월 현재 시험료 50파운드
 - 유효기간 없음

3) 영어 구사능력

- 영국정부가 공인하는 영어성적(2년 미만 내 실시 원칙) 제출
 - 영어로 진행되는 학위 및 연구과정 수료자의 경우 학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아래의 신청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됨
 - 65세 이상인 자
 - 영국정부가 인정하는 영어 사용 국가의 국민(미국 외 16개국)
 - 영국인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 영주권자의 미망인
 - 영국군 제대자
 - 기타

5. 수속절차

- 국경청(UK Border Agency)에 우편 신청
 - 이 경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소요
- 영국 내 7개 특급 서비스 기관(Visa Premium Service Centre) 또는 고객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Super Premium Service 이용도 가능

- 특급서비스의 경우 당일 수속 진행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2015.2월 현재 Visa Premium Service는 400 파운드, Super Premium Service는 6,000 파운드 이상)를 추가 지불해야 함
- 10년 적법한 비자 혹은 “10-year Private Life Route”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특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 취득이후 2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내무장관이 법적인 이유로 동 영주권자의 추방을 결정한 경우
- 기망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 입국 심사 시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부활제도

- 2년 이상 국외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유효기간 없음)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회복할 수 있음
- 재입국비자는 반드시 영국 재입국 전 해외에서 취득 필요
- 단, △ 영국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거나 △ 영국내 가족이 체류 중이거나 △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 체재했음이 증명되어야 함

8. 포기제도

- 별도의 포기제도는 없으며 2년 이상 해외 장기 체재시 자동 상실됨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영국 내무부(Home Office)
- 홈페이지 : <https://www.gov.uk/browse/visas-immigration>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도 영어 구사능력 및 영국생활 관련 시험 통과 필요(2013.10.28 시행)
-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14년 장기 체류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7.9 폐지
 - 10 Year Private Life Route로 대체
 - 불법 장기 체류자의 경우 동 제도가 도입된 2012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2022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2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 심사시 영국 거주가 아닌 해외 거주 목적이란 의심될 경우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재입국시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항 등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일반 입국자 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 없음
 -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교육비, 국가의료혜택, 실업급여 등)
4.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영국생활 및 영어성적 증빙서류에 대한 내무부의 심사가 강화됨
 - 2014.10 이민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는 영국생활 및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진위가 의심되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III. 영주권 견본


1. 영주권 카드



※ 비자, 영주권을 포함해 영국 현지에서 발행하는 모든 영국체류허가서(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s)는 상기 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영주권의 경우 카드 종류에 영주권으로 기입됨


2. 영주권 증명서

“문서형”


Home Offic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Integrated Casework Directorate
Liner House, 40 Wilesey Road, Croydon, CR9 2BY
Telephone 0670 606 2766 Fax On Request

영주권 증명서

Our Ref: Imo/XXXX/may/ewk
Your Ref:
Date: 10/26/2003



Dear Mr

I am writing to say that there are no longer any restrictions on the period for which you may remain in the United Kingdom. Your passport, which is enclosed, has been endorsed with vignette number 07144XXX.

You can now remain indefinitely in the United Kingdom.

You do not need permission from a Government Department to take or change employment and you may engage in business or a profession as long as you comply with any general regulations for the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y.

If you are thinking of going to live or work in the Isle of Man or one of the Channel Islands, you should first consult the immigration authorities of the Island concerned.

If you leave the United Kingdom, you will normally be re-admitted for settlement as a returning resident provided that:

- you did not receive assistance from public funds towards the cost of leaving this country;
- you had indefinite leave to enter or remain here when you last left;
- you have not been away for longer than 2 years; and
- you are returning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settled here you will have to be able to show that you are habitually and normally resident in this country, and that any absences have been of a temporary or occasional nature.

You will not be re-admitted as a returning resident if you are resident overseas and only return here for short periods.

If your absence from the United Kingdom is for longer than 2 years but you can still demonstrate that you had indefinite leave to enter or remain here when you last left, and

ICD.0009 - 79 - 1 of 2

BUILDING A SAFE, JUST AND TOLERANT SOCIETY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무기한. 단, 연속 5년 이상 외국 거주시 영주권 취소

4. 신청자격(취득조건)

가. 가족이민

- 배우자 : 2년간 결혼 관계 유지
- 미성년자녀 : 별도 요건 없음
- 성년자녀 :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 한해, 25세 까지 가능
- 부모 : 신청인의 전체자녀의 과반수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 ※ 부모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소요시한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지만 의료비, 사회보장비용을 호주정부에 미리 지급하면 동 시한이 크게 단축됨
- 형제자매 : 기술, 나이, 경력, 영어 등 호주 이민성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일반적인 기술이민 심사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나 형제자매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이민 심사시 가산점 부여

나. 기술이민 : 점수제(60점 이상)

-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 비자(Skilled Nominated visa)
 - 부족직업군(SOL) 기술 및 3년 이상 경력 보유, 기술심사 통과, IELTS 각 과목 6.0 이상, 18-50세, 주정부 후원 필요
- 고용주 후원 이민 비자(ENS: Employer Nominated Scheme)
 - 후원 가능 직업군(CSOL) 기술, 기술심사 통과, IELTS 각 과목 6.0 이상, 18-50세, 고용주 후원, 해당 고용주 밑에서 최소 2년 근무 필요
- 지방고용주 후원 이민비자(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 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표(ANZSCO)상 1-3 직종, IELTS 각 과목 6.0 이상, 18-50세, 규정상 지방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의 고용주의 후원, 해당 고용주 밑에서 최소 2년 근무 필요

◦ 독립기술이민(Skilled Independent)

- 부족직업군(SOL) 기술 및 3년 이상 경력 보유, 기술심사 통과, 18-50세, IELTS 각 과목 6.0 이상 필요

다. 기 타 : 그 외 사업이민, 투자이민 등

5. 수속절차 : 호주 외 체류 시는 거주국 관할 호주대사관, 호주 내 체류 시는 이민 국경 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관련 비자 조건 위반, 범죄경력 발견, 영주권 취득 후 10년내 1년 이상 형선고 등
7. 부활제도 : 해당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border.gov.au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 5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외 출국시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함
 - 현재 또는 이전 영주권자, 이전 시민권자가 장기간 외국거주 후 호주에 재입국을 원할 경우에는 5년 거주비자(Five year resident Return Visa)를 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없음, 기타 복지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III. 영주권 견본

- 영주권 관련 별도 증서는 없으며, 이민부에서 여타 비자와 마찬가지로 Visa Grant Note만 발급함

오스트리아(Austr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Daueraufenthalt-EU(전: Daueraufenthalt-EG)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 하기 정착허가증을 5년간 연속 취득한 외국인으로 독일어 능력(Modul II: B1 수준)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정착허가증(준영주권)
 -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ot-Weiß-Rot-Karte)
 - EU 블루카드(Blaue Karte EU)
 - 레드-화이트-레드 플러스 카드(Rot-Weiß-Rot Plus Karte)
 - 정착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쿼터제
 - 포인트 시스템
(포인트 계산기:www.migration.gv.at/de/service-und-links/punkterechner.html)
 - 고급전문인력(100점/70점 이상)
 - 주재국 부족 전문인력 (100점/50점 이상)
www.migration.gv.at/de/formen-der-zuwanderung/dauerhafte-zuwanderung-rot-weiss-rot-karte/fachkraefte-in-mangelberufen.html
 - 주재국 대학을 졸업한 기타 우수인력(100점/50점 이상)
 - 나. 오스트리아/EU 국민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입양자녀, 배우자의 미성년 부양자녀, 등록된 동성파트너
5. 수속절차
 - 정착을 목적으로 한 정착허가증을 5년간 연속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착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영주권 교부일이 서면상으로 통보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 카드를 교부받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 소지자가 비EU국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 영주권 소지자가 지난 6년간 오스트리아에 더 이상 정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영주권 취득 전 “블루카드 EU” 를 취득하였던 자는 2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비EU 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취소됨
7. 부활제도
- 장기 해외체류로 영주권(Daueraufenthalt-EG/EU)의 효력이 상실 된 경우, 위에 명기한 정착허가증(준영주권) 중 하나를 다시 취득하여 오스트리아내에 지속적으로 30개월 체류 한 후(5년 대신) 영주권(Daueraufenthalt-EU)을 재신청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거주 등록해지 후 귀국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오스트리아 내 하기 특별자치시(Statutarstaedten) 신청기관 : Magistrat Wien, Eisenstadt, Graz, Innsbruck, Klagenfurt, Krems, Linz, Rust, Salzburg, St. Pölten, Steyr, Villach, Waidhofen an der Ybbs, Wels, Wiener Neustadt
 - ※ 해당 구청(Magistrat) 검색사이트:
www.help.gv.at/linkaufloesung/applikation-flow?flow=L0&quelle=HELP&leistung=LA-HP-RL-Fremdenpolizei
 -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연방주별 신청기관: Bezirkshauptmannschaft
 - Wien: www.wien.gv.at/verwaltung/personenwesen/
 - 니더외스테라이히: www.noe.gv.at/Bezirke/Alle-Bezirke.wai.html
 - 오버외스테라이히: www.land-oberoesterreich.gv.at/cps/rde/xchg/oe/hs.xsl/12737_DEU_HTML.htm
 - 부른겐란트: www.burgenland.at/politik-verwaltung/bezirkshauptmannschaftenW
 - 슈타이어마르크: www.bezirkshauptmannschaften.steiermark.at/cms/ziel/106195/DE/
 - 잘츠부르크: www.salzburg.gv.at/themen/bezirke.htm
 - 케른텐: www.ktn.gv.at/39868_DE-VERWALTUNG-Bezirk
 - 포어아를베르크: www.vorarlberg.at/vorarlberg/bezirkshauptmannschaften/uebersichtbezirkshauptman.htm
 - 티롤: www.tirol.gv.at/bezirke/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2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최대 24개월까지 비EU국 체류 가능(예: 중병을 앓고 있는 자, 병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하며, 출국 전 반드시 이민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투표권은 없으나, 복지제도의 의무와 혜택은 내국민과 동일하게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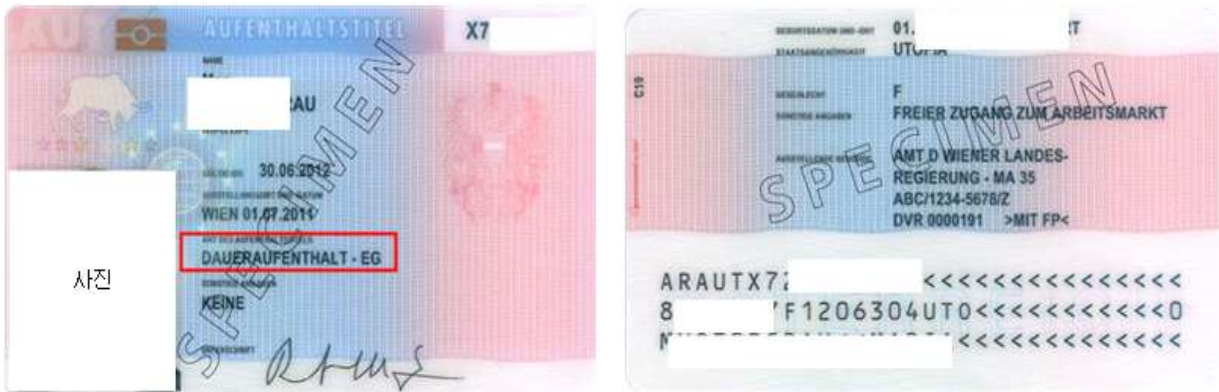
III. 영주권 견본

1.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1. Name: 위(성), 아래(명)
2. Gültig bis: 유효기간
3. Ausstellungsort und -datum : 발급지 및 일자
4. Art des Aufenthaltstitels : 체류허가종류
5. Sonstige Angabe: 기타사항
6. Unterschrift: 서명
7. 출생지 및 출생장소
8. Staatsangehörigkeit: 국적
9. Geschlecht: 성별
10. Sonstige Angaben: 기타사항
11. Ausstellungsbehörde: 발급기관

2.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우간다(Ugand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신청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5년, 10년, 영구 등으로 명시하여 체류기간을 부여 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연속 10년을 거주하고, 범죄와 체납사실 및 파산이 없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 또는 우간다 국적인과 결혼 후 3년이 지난 자
5. 수속절차 : 영주권 신청서(Form E), 여권, 무범죄증명서, 사진, 결혼증명서(결혼인 경우)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이민국(Nation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Board)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귀국 의사 없이 우간다가 떠나거나 사망한 경우 영주권이 취소 또는 상실됨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있음(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본인이 포기하며 수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epartment of Immigration,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ttp://www.immigration.go.ug/>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유효기간 동안은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3.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없으며 기타 모든 법적 지위에서 외국인에 준함
 - 국립공원이나 공공시설 입장시 요금 절감 혜택이 있음

III. 영주권 견본

 **The Republic of Uganda** 

CERTIFICATE NO. 009 [redacted] IM/ 044 [redacted]

Certificate of Residence

This is to Certify that

[redacted]

OF [redacted] P.O.I. [redacted]

DAUGHTER OF FATHER [redacted]
SON OF MOTHER [redacted]

HAS BEEN GRANTED A CERTIFICATE OF RESIDENCE FOR LIFE
YEARS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UGANDA AS FROM THE
DATE OF THIS CERTIFICATE. (1st October 2009)
KAMPALA,

[redacted] 16 day of October 2009 19 [redacted]

DR. S. P. KAGODI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sued on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우루과이(Uruguay)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édula de Identidad / Residencia Legal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3년(갱신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기업, 연구, 유학, 예술, 종교활동 등의 장기체류목적(6개월 이상)으로 입국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자로서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5. 수속절차 : 입국증명, 출생증명서, 신상명세서, 재정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15세 이상), 건강진단서, 여권원본 및 사본을 내무부 이민국 수속과에 접수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3년 이상을 우루과이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장기체류권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 부활제도 : 신규 장기체류권 신청 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dnm.minterior.gubuy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장기체류권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최장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원칙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건실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15년 이상 거주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며, 사회보장 보험, 양로연금 및 의무교육 수혜 가능

III. 영주권 견본

		
사 진		
DIRECCION NACIONAL DE IDENTIFICACION CIVIL		
Cédula de Identidad		
Nº 장기체류권번호		
<small>MINISTERIO DE INTERIORES</small>		
Nombre 성명		
Firma 서명		
출생지	출생국가	
Fecha	Lugar de Nacimiento	
생년월일		
Observaciones:		F.S.L-P
수속번호 및		F6
체류자격		
Expedida	발급일	
Vence	기간만료일	
<small>Exemplar de la Dirección Nacional</small>		<small>Imp. N.º 174. Edición Agosto 1972</small>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우크라이나(Ukrain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ission for Permanent Residence In Ukraine
2. 형태 : 여권형태(122 X 88MM, 8P 또는 12P)
3. 유효기간 :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만 25세, 45세에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쿼터 미적용 대상
 - ① 우크라이나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 후 2년 이상 체류한 자 및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 부모 및 미성년 자녀[공통구비서류+가족관계 증빙서류 사본]
 - ② 우크라이나인의 후견인이거나 우크라이나인이 보살펴 주고 있는 외국인[공통구비서류+관계증빙서류 사본]
 - ③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로 해외 장기 거주했던 자[공통구비서류+ 1990.7.16이전까지 가족 중 1인이 우크라이나 거주자(이민법 제5조에 의거)이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 ④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크라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자[공통구비서류+우크라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서]
 - ⑤ 우크라이나 재외동포, 재외동포 자녀가 우크라이나로 이민이나 거주할 경우
 - 쿼터적용대상
 - 쿼터는 내각에서 결정
 -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3장, 신분증명서 사본, 거주 증명서 사본, 결혼증명서(결혼한 경우), 건강진단서
 - ① 학술·문화계 인사로 우크라이나 국익에 부합하는 자[공통구비서류+우크라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 ② 우크라이나 국익에 있어 아주 필요한 특수 분야 전문기술을 가진 자[공통구비서류+자격증 사본]
 - ③ 최소 미화 10만불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자[공통구비서류+재정증명서]
 - ④ 우크라이나 국적의 형제, 자매, 조부, 손자·손녀가 있는 자[공통구비서류+가족관계증빙서류 사본]

- ⑤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졌었던 자[공통구비서류+전국적 증빙서류]
- ⑥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계 부모, 배우자, 자녀(미성년)[공통구비서류+가족관계증빙서류 사본, 가족의 이민증명서류, 재정능력 증빙서류]
- ⑦ 인신매매 피해자로 피해일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거주한자

5. 효력상실(취소) 사유

-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발급
- 1년 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우크라이나 시민의 안전과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 이민자(외국인과 무국적자)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반할 경우
- 기타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 함

6. 부활제도

- 영주권 포기 혹은 발급 거부 이후 그 날로부터 1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

7. 포기제도 : 포기 가능함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우크라이나 내무부(www.mvs.gov.ua)

9. 기타사항 : 재입국 허가제도 없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기한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병역 의무는 없음

이스라엘(Israel)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토샤브 케바
2. 형태 : 카드(남색)
3.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
 - A/5 비자 소지자로서 이스라엘에 통상 5년 체류한 자
 - A/5 비자 중 주황색 카드는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에게 부여되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스라엘에 비교적 장기간(특정 기간제한은 없음)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안보, 경제 및 기타 중요사안에 대해 현저히 기여를 한 자
5. 수속절차
 - 이스라엘 내무부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 이스라엘 경찰의 신원조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7년 이상 이스라엘 국외 거주
 - 타국의 영주권 취득
 - 신청에 의한 타국의 시민권 취득
 - 영주권 부여시 조건이 부과되었으나, 일정기간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로 영주권 취득을 한 경우
 - 영주권자가 이스라엘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7. 부활제도
 - 영주권을 상실한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
 - 신청자의 국외거주 사유 및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 또는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8. 포기제도
 - 이스라엘 내무부 또는 해외주재 공관에 출두,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 및 카드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스라엘 내무부

10. 기타사항

- 비유대인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매우 어려움. 한국인의 경우 이스라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이 대부분임. 그 외의 사유로는 비유대인이 영주권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7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특별한 제도는 없음
 - 국외체제 허용기간을 도과한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 소명서 제출
3. 법적 지위 및 복지혜택
 -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제반 영역에서 시민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이스라엘 여권도 소지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 혼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개인이 내무부에 신청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함

이탈리아(Italy)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
(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
 - 07.1.8일부터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 (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으로 변경 됨
 - 기존 Carta di soggiorno(무기한 장기체류증)도 병행 사용됨
 - Carta di soggiorno(무기한 장기체류증) 소지자는 장기체류증 갱신 (5년 주기)할때,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 (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형태로 변경됨
2. 형태 : 카드 또는 증명서
 -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 (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
 - Carta di soggiorno(무기한 장기체류증)는 증명서 및 카드 형태 존재
3. 유효기간 : 무기한
 - 5년마다 장기체류증 사진 교체 후 갱신
 - 효력 상실사유(6항) 이외의 경우 재심사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Permesso di soggiorno(일반 체류허가증)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자
5. 수속절차
 - 각 지역 우체국(Ufficio Postale)에서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특정 분야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의료, 스포츠 경기, 인도주의 목적, 망명, 미성년자, 무국적자, 동반자녀 추가, 초청
 - 각 신청서 및 서류는 내무부 정보통신과에서 범죄사실 조회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짐
 - 관할 경찰서에서 서류 심사 후 체류허가증(체류증)을 발급 받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불법 취득

- 추방
- 취득조건 상실
-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동일한 장기체류증(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이탈리아 출국 후 6년 이상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경우

7. 부활제도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재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 장기체류증 재취득 후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 유럽연합 이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동일한 장기체류증(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우체국 : <http://www.poste.it>
- 경찰청 : <http://www.poliziadistato.it>

10. 기타사항

- Carta di soggiorno(무기한 장기체류증) 형태 변경 : 06.12.11
 - 증명서에서 카드형태로 변경
- 무기한 장기체류증 명칭 및 형태 변경 : 07.1.8
 - 기존 Carta di soggiorno(무기한 장기체류증)에서 Permesso di soggiorno CE per soggiornanti di lungo periodo (장기 체류자를 위한 유럽공동 체류허가증)으로 명칭 및 형태 변경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럽연합 이외 국가 : 1년
- 유럽연합 국가 : 6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외한 노동, 교육, 사회보장, 세제혜택분야에서 이탈리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일본(Japan)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일반영주자(一般永住者)

2. 형태 : 카드형 신분증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특별영주자증명서(카드형 신분증)
- 일반영주자(一般永住者): 재류카드(카드형 신분증)

3. 유효기간 : 기간 제한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특별영주자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거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1945. 9. 20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체류하는 자
- 상기 특별 영주자격은 2차 세계대전 前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 및 대만출신자와 그 자손에게만 부여

◦ 일반영주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출입국 관리법 22조)

- 품행이 선량할 것
-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
-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고,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 공중위생상으로 해로울 우려가 없을 것

- 10년 체류 원칙의 특례

- 일본인 또는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 하고 있을 것

-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5. 효력상실(취소) 사유

- 특별영주자
 - 일본의 중대한 국가적 이익침해(내란, 외환 관련 죄 등)로 강제퇴거 되거나 스스로 완전 출국한 때 또는 일본인으로 귀화한 때
 - 정해진 재입국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 일반영주자
 - 입관법 22조 4항에 있는 재류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자(허위신청 등)
 - 정해진 재입국기한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경우

6. 부활제도 : 법률상 규정 없음

7. 포기제도 : 법률상 규정 없음

8. 신청기관 홈페이지

- 특별영주자 : 원칙적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시구정촌(都道府県)에서 신고
 - * 출생 후 60일이 지난 경우는 법무성에 직접 신고
 - 법무성 입국관리국 : <http://www.immi-moj.go.jp/>
- 일반영주자 : 시구정촌(都道府県)에서 일반영주자 신청 및 등록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 체류 허용기간 및 재입국 허가제도

- 특별영주자
 - 지방 출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6년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연장 가능
 -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갈 필요가 없는 “미나시(みなし) 재입국허가”로 재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특별영주자는 2년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지만, 연장은 불가
- 일반영주자 : 지방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5년까지 국외에 체류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영주자 : 법적지위는 「특별영주자」
 - 특별영주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외환에 관한 죄 등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됨

- 2014.7.18자 결정으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생활보호 관련 외국인에 대해 법률적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존 제도의 운용은 부정하지 않아 해당 자치체의 재량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계속하여 실시중임(일반 영주자도 동일)
- 일반영주자 : 법적 지위는 「영주자」

Ⅲ. 영주권 견본

1. 특별 영주자(특별영주자증명서 발급)



2. 일반 영주자(재류카드)



자메이카(Jamaic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Status
2. 형태 : 별도의 영주권 또는 증명서 없이 신청자의 여권에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으로 영주권 발급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간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다음 각 항 요건자의 경우 신청자격이 됨
 - 최소 3년 이상 자메이카에서 직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자메이카 국적자와 혼인 상태인 자
 - 고국에서 퇴직하여 자메이카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
5. 수속절차 : 하기 서류를 자메이카 이민국에 제출 후, 인터뷰 실시
 - 영주권 신청서
 - 유효한 국적 여권(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함)
 - 출생증명서(자메이카 국적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메이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도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체검사서
 - 국적국가 발급 신원조회서(자메이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자메이카 발급 신원조회서도 첨부)
 - 영주권 신청 레터(사유 기재)
 - 재정상태 증명서류
 - 추천서(자메이카 국적자 2인)
 - 여권용 사진 1매
 - ※ 수수료 30,000J\$(자메이카 달러)
 - ※ 접수된 구비서류가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민국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 및 언어능력(일상 생활영어 수준)을 확인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자메이카 이외 장기 거주 시 자동 상실
7. 부활제도 : 이민국에 재신청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자메이카 이민국(PICA), www.pica.gov.jm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외국체류 또는 여행시 이민국을 통해 재입국 비자를 신청, 발급 받아 허용된 기간 동안 국외 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재입국 비자)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나, 사회보장제도, 의무 교육 수혜 가능

III. 영주권 견본



중국(Chin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외국인영구거류증(外國人永久居留證)
2. 형태 : 카드형신분증(녹색)
3. 유효기간 : 5년(18세 미만), 10년(18세 이상)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투자자(투자분야에 따라 50만불-200만불 이상)로서 연속 3년간 투자실적이 안정적이고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
 - ② 중국에서 고위직(부사장, 부공장장, 부교수, 부연구원 등 이상 직위)근무자로서 4년 이상 근무, 중국거류누계가 3년 이상, 납세기록이 양호한 자
 - ③ 중국에 중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
 - ④ 상기 1,2,3항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 ⑤ 중국공민 및 중국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 5년 이상, 중국에서 5년 연속 거류(매년 9개월 이상 거류)하면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고 주거지가 있는 자 등
 - ⑥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에게 의탁한 경우
 - ⑦ 외국에 직계친척이 없고 국내 직계친척에 의탁하는 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중국에서 연속 만 5년을 거류하였으며 매년 중국에 거류하는 기간이 최소 9개월 이상이고 안정적인 생활보장 및 주거지가 있는 자
5. 수속절차
 - (신청)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직할시 공안분국이나 현(懸) 공안기관 → (심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공안국) → (비준) 공안부
 - ※ 공안부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불허결정을 내려야 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자
 - 법원에서 강제추방결정을 받은 자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으로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자

- 비준을 득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매년 중국에서의 거류일자수가 누계 3개월 미만 또는 5년 내 중국 거류일자수가 누계 1년 미만인 자
- 7. 부활제도 : 유효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내용변경, 훼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 재발급 가능
- 8. 포기제도 : 관련 내용 없음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중국공안부 출입경관리국(<http://www.mps.gov.cn>)
- 10. 기타 사항 : 2004년 8월 15일부터 시행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내체재 기간 : 매년 중국에서의 거류일수가 누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중국에서 누계로 3개월을 거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류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함. 또한 5년 내 중국 거류일수가 누계 1년 이상이어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기간내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원칙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다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없음)
4. 기타사항 :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통칭 “뤄카(녹색카드의 의미)” 라고 불리고 있음

III. 영주권 견본



짐바브웨(Zimbabw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Indefinite or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문서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허가 또는 동반가족허가를 받고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100만불 이상 투자자
 - 노동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거주한 기술자로 30만불 이상 투자자
 - 정부소속 고용인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의 동의 필요
 - 외교관, 국제기구직원 및 NGO 종사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자격 없음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 신청절차
 - 영주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민국에 제출
 -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발급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은 일단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거나 아래의 경우 효력이 상실됨
 -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경우
 - 짐바브웨 내무부가 기피인물(persona-non-grata)로 지정하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
 -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주재국을 떠난 지 5년이 되지 않은 과거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과거 거주사실증명 및 재정증명 제출 필요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의사를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을 반납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없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 소지자는 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짐바브웨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III. 영주권 견본

No 21

IMMIGRATION ACT [CHAPTER 4:02]

Residence Permit

Subject to the conditions stated hereunder, the holder: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Place of birth _____

Marital Status: Married/Single/Divorced/Widowed*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ependants:

Spouse _____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years:

1. _____	4. _____
2. _____	5. _____
3. _____	6. _____

Nationality (a) holder _____ (b) Spouse _____

is permitted to enter or remain in Zimbabwe:

* (a) indefinitely; or

* (b) for a period from _____ to _____

and whilst in Zimbabwe:

* (a) be a dependant or a retired person; or

* (b) engage in the occupation or profession of _____

DEPARTMENT OF IMMIGRATION
DIRECTOR GENERAL'S OFFICE
WANG CHANG COLLEGE

- 6 JUN 2006

RE-ENTRY-STAMP

사건

for: Chief Immigration Officer

/cm1

CONDITIONS:

This permit is issued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A dependant or retired person may not engage in any work, occupation or activity which is not necessary for, or incidental to, the purpose for which this permit was issued unless permission is first obtained from the Chief Immigration Officer.
2. The holder must neither engage in any occupation nor enter into any employment other than the occupation or with the employer (if any) specified in this permit unless permission is first obtained from the Chief Immigration Officer.
3. Other (to be specified).

G.P. & S. 69569-5.

체코(The Czech Republic)

I. 영주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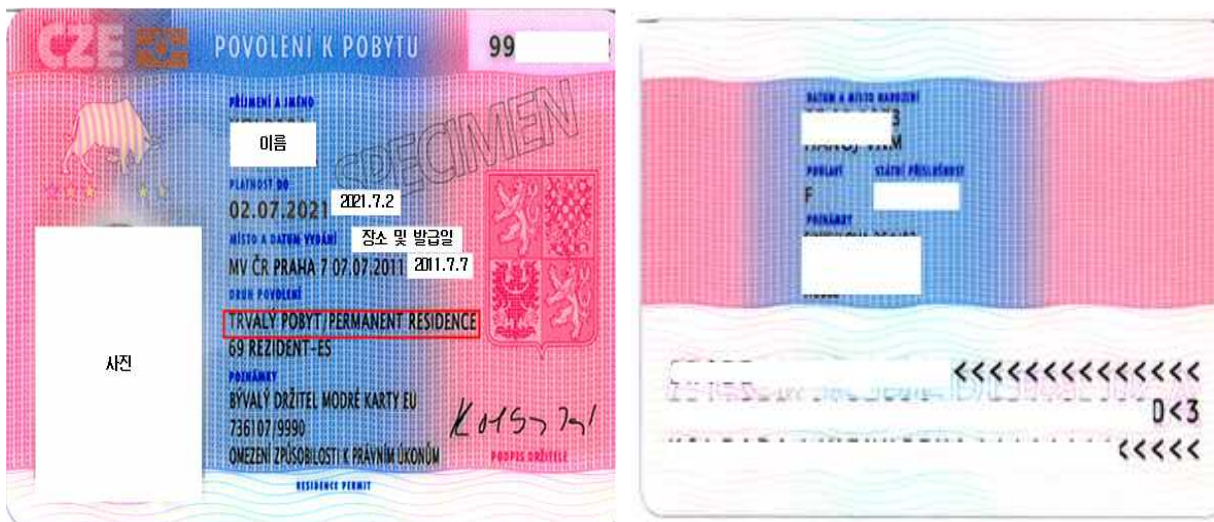
1. 명칭 : Povolení k trvalému pobytu
2. 형태 : 카드(생체인식)
3. 유효기간
 - 성인 : 10년(여권만료기간까지)
 - 15세 미만 : 5년(여권만료기간까지)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코인과 결혼하여 체코 내 거주를 희망하는 자
 - 18세 이상인 체코인의 홀로된 부 또는 모로써 65세 이상인 외국인
 - 체코인에 의해 입양된 18세 이하 외국인 자녀
 - 인도적, 정치적 이유로 영주권이 필요한 외국인
 - 망명 신분에서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 연속 5년간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 연속 5년간 EU 국가에서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체류하였으며 2년 이상 체코에서 체류한 외국인
5. 수속절차
 - 신청자격 확보(상기 4항 참조)
 - 신청서류 준비
 - 신청서 :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www.mvcr.cz)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2장, 여권, 체류목적증명서(결혼증명서 등), 재정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 등), 거주지증명서, 체코어 어학증명서, 무범죄증명서(체코, 자국 및 영주권을 가지고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
 - 체코내 관할 내무부 사무실 혹은 해외 주재 체코 공관에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허가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친자확인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 영주권 종료 90일전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범죄행위로 인하여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추방당한 경우
 - 주재국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EU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7. 부활제도 :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절차로 영주권 취득
- 8. 포기제도 : 납세의무 불이행, 범법행위로 인한 영주권 효력 상실 경우를 제외하고 영주권 포기를 인정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vcr.cz (영주권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불가)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체코어 어학능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간만 유효함. 사진의 경우, 외모의 변화가 없다면 제외
 -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함
 - 번역이 필요한 경우, 번역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 법적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외국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만 가능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외국에서 총 6년 이상 거주하거나 체코나 EU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취소
-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투표권을 제외하고 체코인과 동일한 지위와 혜택 부여

III. 영주권 견본



칠레(Republic of Chil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ertificado de Permanencia Definitiva
2. 형태 : 종이
3. 유효기간 : 영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 취업, 유학, 임시비자 소지자
 - 체류/취업/유학 비자 소유시는 2년, 임시비자 소유시는 1년 이상 거주한자
(※단 유학비자는 졸업장을 취득해야 함)
 - 마지막 한 해 동안 국외체류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
5. 수속절차
 - 수속기관 : 내무부 이민청
 - 제출서류(※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영주권 신청서
 - 범죄 유무관련 신원증명서-구청이나 경찰청 발급
 - 외국인 등록증명서-PDI 인터폴
 - 여권 사본: 신원정보면 및 비자면 원본확인 필요-공증사무소
 - 칠레신분증 양면사본: 원본확인 필요-공증사무소
 - 사진 3매: 컬러 3x2cm, 얼굴 밑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출입국사실증명서(최근 1년)-PDI 인터폴
 - 비자 만료일 90일 이내에 우편으로 신청, 발송 후 업무일 기준 약 45일 후 이민국 시스템에 등록되며, 이때부터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 우편으로 허가 여부 또는 보완요청이 통보되며, 허가될 경우 허가서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칠레국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면제)를 은행에 납부하여 이민국 사무실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함

- 영주권을 교부받고 30일 이내에 PDI 인터폴에 영주권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청에 신분증을 신청해야 함
 - 신청이 불허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 가능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칠레 법령에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고, 법원이 이를 최종 판정한 경우, 내무부는 체류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관련 외국인을 강제추방 조치
 - 국외체류 허가기간(1년)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은 자동 말소됨. 유학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로 입국을 하지 못할 경우, 만기일(출국 후 1년이 되는 날) 60일 전에 관할지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불가 사유를 소명하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연속 4회까지 가능
7. 부활제도 : 없음(※ 최초 비자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하며, 단 이전 신분증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extranjeria.gob.cl
10. 기타사항
- 신분증의 형태는 시민권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신분증’ 이라 표기되며 국적란에 해당하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음
 - 선거권, 사회보험 등의 가입은 가능하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에서는 시민권자와 차이가 있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각급 선거 투표권 부여
 - 국민의료보험 및 의무교육 수혜
 - 법적, 규정상 제한을 받지 않음

III. 영주권 견본

칠레 영주권(신형)



칠레 영주권(구형)



캐나다(Canad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Card
2. 형태 : 카드(플라스틱)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카드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2015.1.1자로 새로이 도입된 Express Entry System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각각의 프로그램별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언어능력, 학력, 취업경험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가 되어야만 이민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민의향서 제출자는 대기하고 있다가 상위 랭킹자로 선발되어 캐나다 정부(시민 이민부)로부터 영주권 신청하라는 통보(Invitation to apply)를 받았을 때 정식으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음
 - 기본 자격요건
 - ① 연방전문인력 이민 : 최근 10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경력, 캐나다언어벤치마크(CLB) 레벨 7이상, 고졸 또는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 중 나이, 취업비자 소지 유무, 적응력 등에 따라 총 100점 만점 중 67점 이상인 자에 한해 Express Entry System에 대기자로 등록가능
 - * 4인 가족 기준, \$22,170 자산증명 필요
 - ② 연방전문기술인력 이민 : 전문기술직 종사자(전기, 건축기사, 중장비기사, 자원개발 및 농업관련 기술자, 요리사, 제빵사 등), 최소 1년 유효 취업제안이 있는 자 혹은 관련 분야 캐나다 자격증 취득자, 최근 5년 이내 최소 2년 이상 경력, 최소 언어능력 증명(말하기/듣기 CLB 5, 읽기/쓰기 CLB 4) 등
 - ③ 캐나다경력 이민 :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경력, 캐나다언어벤치마크(CLB) 레벨 5이상(직업군 B 직종 전문기술직) 혹은 7이상(직업군 A 전문직 혹은 0 매니저급 직종), 고졸 혹은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
 - 주정부 지명이민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가 각 주에 일정한 쿼터를 배분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일정 인력을 선발, 최초 이민

신청시 해당 주 정부에 신청

- 각 주별로 언어능력, 보유기술, 투자금액 등 자체 이민요건 설정
- 가족초청 이민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배우자, 사실혼자 및 18세이하의 미혼 자녀(입양아 포함), 부모, 조부모를 재정적으로 20년간 부양하는 조건으로 이민 초청
- 창업비자 :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아이템 을 가지고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창업자본 지원을 약속받은 해외 유능창업주 대상, 언어능력(CLB 레벨 5 이상) 및 기본 자산 증명필요(4인 가족 기준, \$22,170)
- 투자이민 : 대졸이상 학력, 사업/투자 경력 및 언어능력 증명, 자산총액 천만불, 국내 벤처캐피탈펀드에 15년간 2백만불 투자
- 돌보미 : 간병인이나 육아돌보미로 2년간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짐
- 퀘벡주 선발 전문인력 이민 : 연방 이민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퀘벡주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민프로그램으로, 퀘벡주정부에서 이민자로 선발된 후, 연방정부를 통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침
- 난민 : 국제법 및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기준 충족 필요

5. 수속절차

- 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캐나다경력이민
 - 시민이민부 Express Entry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절차 시작
 - 이민의향서 제출→이민신청 가능자로 선발될 때까지 대기→캐나다 시민이민부로부터 이민신청통보가 오면 60일 이내 영주권 신청→신청 후 6개월 이내 영주권 발급(<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express/express-entry.asp>)
 - *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비자 및 이민업무 폐쇄로 한인 이민 관련 업무는 주필리핀 캐나다대사관으로 이관
 - ** 이민신청 당시 캐나다 거주 경우, 캐나다 시민이민부에 신청
- 주정부지명이민, 퀘벡주 선발 전문인력 이민
 - 주정부 이민부를 통해 최초 이민수속, 추후 연방정부의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거쳐 영주권 취득
- 가족초청이민, 투자이민, 돌보미
 - 캐나다 시민이민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신청 절차 시작, 한인 이민신청 수속은 주필리핀캐나다대사관에서 실시
- 난민
 -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된 후, 캐나다 시민이민부에 영주권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발급일로부터 5년 기간 중 혹은 최근 5년 중, 캐나다 체류기간이 730일(2년) 미만인 경우
 - 캐나다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7. 부활절차
 - 효력이 상실된 영주권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상실사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영주권 발급 가능
8. 포기제도
 -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 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이민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거친 후, 영주권 포기 양식(IMM 5539B)을 작성하여 제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캐나다 시민이민부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2015.1.1일부터 종전 접수 순 이민 심사 방식에서 경제이민프로그램 이민의향서 제출자 중 취업경력, 언어능력, 학력 등 점수에 따라 이민신청 가능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Express Entry System)으로 전환
 - 노동인구가 부족한 분야 중심으로 젊은 층, 언어능력 보유자 등 준비된 인력 위주로 선발하여 영주권 발급
 - 부모, 조부모 초청 쿼터 감소되고, 후원인의 조건이 강화
 - 종전보다 30% 높은 소득수준 요구, 의무 부양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 가족이민시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있는 동반자녀의 연령이 기존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1996.1.1일 이전 출생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민이 불가하게 됨
 - 기존 투자이민제도 폐지,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를 2015.1월부터 시험시행 중
 - 영주권 카드(PR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사유로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NO LONGER PERMANENT RESIDENT” 라는 스탬프가 날인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5년 기간 중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가 3년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재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얻은 추가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입국허가 여부 및 지위(영주권자 혹은 외국인으로 입국여부)를 결정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투표권, 선거출마권 및 공직자 임용을 제외하고는 법적지위에서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음
- 무료 보건혜택, 노령연금 포함 각종 연금혜택, 세제 혜택 및 무상 교육 혜택은 시민권자와 동일

III. 영주권 견본

1. 영주권카드

- 2009.8~현재까지 발급되는 형태



케냐(Keny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Permanent Resident Certificate
3.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한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비자를 7년 이상 받아온 자로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일 현재까지 케냐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 케냐인과의 결혼하여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케냐 시민권 및 이민법 규칙, 2012, Form 23) 2매 작성 및 자기소개서
 - 노동비자 사본 및 여권사본 및 여권용 사진 2매
 - 범죄경력증명서
 -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결혼증명서 추가
 - 신청 수수료 500,000케냐실링 및 수속비용 10,000케냐실링 지불
 - ※ 결혼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 수수료 50,000케냐실링 및 수속비용 5,000케냐실링 지불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케냐 시민권의 취득
 - 케냐 시민권 및 이민법(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제3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퇴출명령이 내려졌을 때
 - 서면으로 거주권 포기 의사를 제출했을 때
 - 결혼사실이 위장이나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7. 부활제도 : 없음(신규로 영주권을 받아야 함)
8. 포기제도 : 본인의 포기 의사에 의해 이민국 국장에게 서신으로 통보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신청기관 : 케냐 이민국(Nyayo House), Alien Section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ke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법부터 규정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기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재입국허가제도가 필요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케냐에서 고용될 수 있는 권리
 - 교육 제공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합법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코스타리카(Costa Ric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임시거주권(Residencia Temporal)
-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임시거주권 : 1년 혹은 2년(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 영주권 : 2년(영주권 취득 후 1-4년 기간), 3년(영주권 취득 후 4-10년 기간), 5년(영주권 취득 후 10년 이상)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거주권
 - 코스타리카 국민의 배우자
 - 기업 중역 및 기술인력
 - 자영업자
 - 취업근로자
 - 투자자
 - 금융소득자
 - 연금수령인 등
- 영주권
 - 코스타리카 국민의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 ※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 혹은 장애가 있는 성인에만 해당
 - 임시거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된 자

5. 수속절차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코스타리카 출입국청에 제출
 - ※ 출입국청 홈페이지(www.migracion.go.cr)에 자세히 기술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아래 상황에서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 혹은 중지됨
 - 영주권 부여 조건사항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최근 10년간 의도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출입국청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장소를 통해 입출국 했을 경우
 - 영주권자가 연속 4년 이상 정당한 이유(학업, 건강, 가족 등)없이 해외 체류시
 - 임시거주권자가 정당한 이유(학업, 건강, 가족 등)없이 연속 2년 이상 해외체류시
 - 허위서류로 임시거주권/영주권 취득시
 - 영리활동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에 종사했을 경우
 - 향후 치안 및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전적이 있을 경우
 - 유효 기간 만료 후 3달 이내에 신분증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코스타리카 국민과 이민 목적의 허위 혼인을 했을 경우

7. 부활제도

-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최초의 영주권 신청절차와 동일

8. 포기제도

- ① 코스타리카 국민으로 귀화, 혹은 ② 더 이상 코스타리카 내 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영주권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 서한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출입국청(www.migracion.go.cr)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 1년 이상 체재하게 될 경우, 출국전 출입국청에 서한 통보 필요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자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재입국허가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주재국민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행사
4.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2010년 개정 출입국법에 따라, 임시거주권/영주권의 신규발급 및 갱신시 본인이 주재국 사회보장청(CCSS)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III. 영주권 견본



콜롬비아(Colomb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Visa de Residente(RE) 및 Cedula de Extranjeria(CE)
2. 형태 : 비자 및 ID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콜롬비아 국적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콜롬비아 국적인 경우
 - 주재국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 혼인(TP10)비자를 소지하고 주재국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 일반인의 영주권 취득
 - 유학(TP3), 취업(TP4), 종교인(TP5), 은퇴·투자(TP7), 난민(TP9)비자를 소지하고 주재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해야 영주권 취득 자격 부여
 - 주재국에서 강력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18세부터 65세 이내는 범죄증명서 필요)
 - 주재국 월 최저임금의 650배 이상을 투자하고 주재국 중앙은행에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 영주권 취득이 될 수 없는 비자
 - 특혜, 상용, 예우, 상용, 승무원비자 소지자, NGO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 일원, 사법(행정)처리를 위한 방문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5. 수속절차 : 영주권 취득 조건이 충족되면, 주재국 외교부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국가에 해가 되는 범죄를 범하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 주재국에서 추방될 경우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 문서일 경우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비자(visa d'établissement permanent)
2. 형태 : 여권 내 스탬프형식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5년 이상 콩고민주공화국 내 거주 외국인
5. 수속절차 : 이민국에 구비서류(신청서, 여권, 거주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체류목적 소명서류, 세금 납부 증빙서류, 수수료 \$1,500)를 준비하여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서한발송시, 여타 절차 없이 포기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Direction Générale de Migration), www.dgm.cd
10. 기타사항 : 국외 여행시 출입국비자(visa sortie-retour) 소지 의무 면제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외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

III. 영주권 견본



IV. 기타사항

1. 명칭 : 거주비자(visa d'établissement)
2. 형태 : 여권 내 스탬프형식
3. 유효기간 : 일반(3년), 취업(1-2년), 유학(1년), 결혼(3년), 특별(5-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콩고민주공화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그의 가족
5. 수속절차 : 이민국에 구비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거주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목적 소명서류, 수수료 \$100~\$700 *비자종류에 따라 상이)를 준비해서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해외 7개월 이상 체류시
7. 부활제도 : 최초의 수속절차에 따라 재신청
8. 포기제도 : 이민국에 서한발송시, 여타 절차 없이 포기가능
9. 기타사항 : 체류기간동안 국외 여행시, 출입국비자(visa sortie-retour) 소지 필수

쿡제도(The Cook Islands)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y
2. 형태 : 여권에 찍어주는 스탬프나 영주권 증서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쿡제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뉴질랜드 국적보유자의 경우 3년) 쿡제도에 주요한 공헌을 하거나 투자한 사람(쿡제도인과 혼인시 상기 기한 단축 가능)
 -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기술, 경험, 공동체 활동, 재정투자등을 통해 쿡제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음과 선량한 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님
5. 수속절차 : 쿡제도 수도인 아바루아에 위치한 외교이민부에 비치된 영주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 시 쿡제도에 거주하여야 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3년을 초과하여 쿡제도 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교이민장관에 의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함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쿡제도 외교이민부(<http://www.mfai.gov.ck/index.php/home.html>)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쿡제도의 영주권 발급은 650건으로 제한(내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또는 5년 미만의 거주 목적을 위한 영주권 신청은 제외)
 - 쿡제도는 영주권 취득이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이 있으면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 허가를 받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을 취득하고 쿡제도에 거주중이라면 쿡제도의 시민과 동일하게 참정권, 노후연금, 육아수당과 출산휴가 등의 복지제도를 누릴 수 있음

III. 영주권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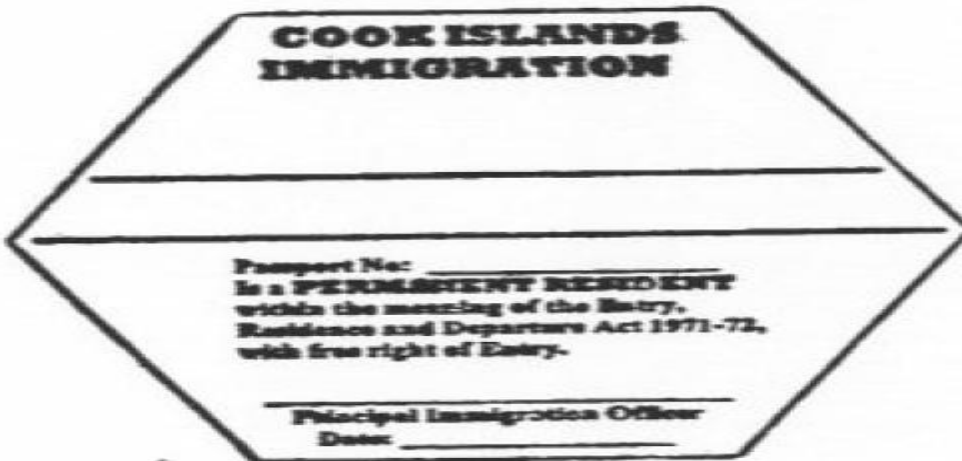
OFFICE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RAROTONGA

CERTIFICATE OF PERMANENT RESIDENCE

THIS IS TO CERTIFY THAT _____
of _____ is a Permanent Resident of the Cook Islands
pursuant to Section 5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Dated at _____ this _____ day of _____ 20 _____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This certificate may be cancelled if the person to whom it relates is absent from the Cook Islands continuously for a period exceeding three years in circumstances indicating that he has ceased to make his home the Cook Islands. A permanent residen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relating to the requirements of entry and residence permits.



**COOK ISLANDS
IMMIGRATION**

Passport No: _____
Is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Entry,
Residence and Departure Act 1971-72,
with free right of Entry.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Date: _____

크로아티아(Republic of Croati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Stalni Boravak)
 2. 형태 : 비자(스티커) 및 카드
 3. 유효기간 : 영구(비자는 여권갱신시 재발급, 카드는 5년마다 재발급)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자
 - 5년 기간중 국외체류기간이 1회 6개월 이내, 총 10개월 이내인 경우 계속 거주로 간주
 - 계절적 근로자, 일일 이주근로자, 외국 고용주를 대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체류 및 노동허가를 받아 거주한 기간과 신고를 받아 복역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에 불포함
 - 유학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거주한 기간 및 망명 또는 보호처분을 받아 거주한 기간은 실 거주기간의 50%만 영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인정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생활능력이 있는 자
 - 의료보험 가입자
 -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문자의 구사·해독이 가능하고, 크로아티아 문화 및 사회체제에 대한 지식 보유자
 - 미취학자, 크로아티아에서 초·중·고 또는 대학 교육 이수자, 65세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자
- ※ 상기 조건에 관계없이 크로아티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는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다른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영주권 취득에 동의한 경우

- 크로아티아에서 출생하고 계속 거주한 외국인이 본인8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로 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음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경찰청에 영주권 발급을 신청
- 최종 영주권 부여 여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결정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크로아티아에 입국 및 거주가 금지된 경우
-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부여 결정을 하는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 공공질서, 국가안보,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권 포기를 신청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영주권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경찰청, 내무부(<http://www.mup.hr>)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이내

-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체재한 경우 영주권 효력 상실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한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 재입국 허가 불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취업 또는 자영활동이 가능
-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교육 및 장학제도 대상
- 사회보장제도(연금, 건강보험, 양육보조)에 가입 및 수혜 가능
- 조세 혜택,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접근 가능
- 노조 및 사회단체 가입 가능

태국(Thai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태 : 수첩
3. 유효기간 : 영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통 자격 : 태국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한 자로서 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가 가능하고 인터폴의 수배자가 아니어야 함(태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입국규제자가 아니어야함)
- 4.1 투자에 의한 영주권 신청
 - 태국에 투자한 자본금이 10,000,000 바트 이상으로 송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태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투자일 경우만 가능
 - 투자한 법인이 태국의 안정과 질서, 문화 및 태국시민의도덕성에 상반되지 않아야 함
 -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매년 9월말까지 투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4.2 취업에 의한 영주권 신청
 -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10,000,000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태국 정식 등록 법인이어야 함
 - 직위는 간부급 (이사급)으로 회사 등록 서명권한을 가진 자로, 영주권 신청일시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 신청인의 월급이 최소 5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세한 경우이어야 함
 - 해외통상관련 업계의 경우 3년간 평균 한해 20,000,000바트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동 사항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국내 제조업체에게 대출해준 경우에는 과거 3년 동안 100,000,000바트의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관광업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최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법인으로 관련기관으로 부터 동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업계 종사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최소 5,000,000바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어야 함
-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유지한 자, 현재 근무지에서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월급이 80,000바트 이상이거나 연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액이 100,000바트 상당이어야 함

4.3 태국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4.3.1 태국국적인의 외국인 배우자

-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 등록하여 둘 사이의 자녀가 있어야함
 - 불임인 경우 병원에서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녀가 없으나 병원에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 전에 혼인 등록을 마친 자
 - 한쪽 또는 두 명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충분하거나,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이어야 하며, 세금납부증명을 제출해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나이가 연로한 경우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인자
 -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등록을 마친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의 1년 평균 월급이 65,000바트 이상인 자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4.3.2 태국국적 부모의 외국국적 자녀

- 태국 국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30,000 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태국국적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 친부모이어야 하며, 부모관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의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 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4.3.3 태국 국적자녀의 외국국적 부 또는 모

- 태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외국국적 부 또는 모
 - 친부모이어야 하며, 부모관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호자의 과거 2년 동안의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태국국적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외국국적 부 또는 모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양자는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1년 평균 월급이 최소 30,000 바트 이상 되어야 하며, 세금 납부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 태국인은 외국인의 부양 또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4.3.4 영주권자의 배우자

-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를 부양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자
 -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2년 전에 혼인등록을 마친 자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4.3.5 영주권자의 자녀

- 영주권을 소지한 부 또는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 또는 모는 피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영주권을 소지한 부 또는 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
 - 친자이어야 함
 -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부 또는 모는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4.3.6 영주권자의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보호하여야 하는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20세 이하의 미혼이어야 함
 - 20세 이상일 경우, 부모의 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함
(* 예를 들어 대학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전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체상의 장애로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부 또는 모는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부 또는 모
 -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가 친자이어야 함
 -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함
 - 부양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함
 - 부양자는 취업 또는 투자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조건을 가짐

4.4 전문가 (전문 직업 종사자)

-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태국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
- 3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한 자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5 기타

- 개인으로 태국에 이익을 주었다고 태국 정부가 인정하여 태국 정부기관이 공한을 발급하여 준 자

5. 수속절차

5.1.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태국이민청의 신청일자를 확인한 후 영주권 신청

- 신청 수수료: 7,600 바트(환불되지 않음)

5.2. 신청일로부터 결과통보가 있을 때까지 180일 단위로 태국 거주 허용

5.3. 신청 후 태국어 의사소통 및 이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일자를 통보받고 출석

- 14세 이상의 경우는 범죄경력 확인
 - 지문을 통해 태국 내 범죄경력여부 확인
 - 태국 이민청의 입국 규제자 여부 확인
 - 인터폴 수배자 여부 확인
 - 원국적 국가의 범죄 경력 확인

5.4. 심사

- 내무부, 외교부, 경찰청, 노동부, 검찰청, 투자청, 국가 안보청, 관광청, 이민청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민청 위원회의 심사와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결정
- 수입, 재산, 직업능력, 가족관계, 인성, 건강, 태국어 이해능력과 태국의 경제, 사회, 정책 상황에 어울리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 심사기간은 이민청 위원회와 내무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됨
- 영주권 취득 수수료 191,400바트
 - 태국인과 혼인하였거나, 영주권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태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 수수료는 95,700바트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국 허가 기간을 위반한 경우
- 태국 법을 위반한 경우(특히 태국 이민법 53조 및 12조를 위반한 경우)
- 투자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국이 지정한 조건(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투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부활제도 : 취소가 된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th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료보험 수혜, 의무교육 혜택은 없으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며, 일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90일마다 주소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음

트리니다드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Grant of Resident Status
2. 형태 : Certificate
3. 유효기간 : 없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
 - 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트리니다드토바고 국민의 배우자 혹은 부모
 -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
5. 수속절차
 - 영주권 신청양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요청 서한을 아래 서류와 함께 국가안보부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에 제출
 - 출생등록증 원본/사본, 결혼 증명서 원본/사본, 여권, 사증, 여권 사진 3매, 세금 증빙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하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력 상실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국가안보부(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http://www.immigration.gov.tt>
10. 기타사항 : 신청비용은 없으나, Certificate 수령비용 TT\$ 1,000 (약 162미불)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여권에 Resident status 스탬프가 찍혀있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파나마(Panam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Permiso de Residente Permanente 또는 Permanencia Definitiva)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파나마에서 한국인이 가장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우호국 영주권’ 과 ‘SEM 비자 소지 경력자 영주권’ 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우호국 영주권*

* 스페인어 정식 명칭은 Residencia Permanente para Países que poseen relaciones de Amistad con Panamá

- 파나마 정부는 2012.5.16자 공공안전부령 제343호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현재는 50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상기 우호국 국민은 5천불 이상이 예치된 파나마 은행 계좌를 보유하면서, 전문직,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면 파나마에 체류한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우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우호국 영주권은 갱신이 필요 없고, 신청자 본인이 우호국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는 경우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파나마 신분증(Cedula)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나. SEM 비자 소지 경력자 영주권*

* 스페인어 정식 명칭은 Residencia Definitiva en calidad de Personal Permanente que haya trabajado para una Sede de Empresa Multinacional. SEM(SEM, Sede de Empresas Multinacionales).

- SEM 비자(유효기간 5년)는 SEM 라이선스를 취득한 다국적 기업의 파나마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소득이 외국에서 온다고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파나마 정부는 2013.8.2일자 공공안전부령 제222호를 통하여 파나마에서 다국적기업 라이선스 하에 설립된 기업에서 정직원으로서 근무한 바 있으면서, SEM 비자(5년)를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바 있는 사람은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음

- SEM 비자소지 경력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SEM 비자 발급의 근거가 된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라야 함

5. 수속절차 : 필요서류를 완비,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청에 서류를 접수하면, 이민청에서 1년짜리 출입국 비자와 1년 체류 허가증이 발급(이때부터 영주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되며,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내에 영주권이 발급됨

가. 우호국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여권사본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를 통한 원본대조필, 성인만 필요,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 파나마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동 기간 해외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파나마 경찰청 사법조사국(DIJ, Direccion de la Investigacion Judicial)에서 동 증명서 발급 가능
- 신체검사서(건강검진)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반드시 파나마에서 파나마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공증 불요)
- 수취인을 국고(Tesoro Nacional)로 하는 수표 250불과 수취인을 이민청으로 하는 수표 800불
- 개인정보진술서(변호사가 양식 제공)
- 혼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를 통한 원본대조필)
 - ※ 본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 신청시만 필요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경제활동 증명서류
 - ※ 파나마에 대한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취업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 신청
 - 경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 서류
 - 보수가 최저임금(850불)이상이며, 노동부의 승인과 공증을 받은 고용 계약서
 - 회사 등록 증명서, 영업신고서 사본
 - ※ 투자를 근거로 하는 영주권 신청: 회사 등록 증명서, 신청인 이름의 주식 증명서 사본
- 지급능력 증명 서류 (파나마 은행잔고 5천불 초과 또는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최근 1개월분 은행잔고 증명서 또는 명세서)

- 본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거주지의 수도, 전기, 또는 전화요금 영수증
- 신청인 증명사진 6매

나. SEM 비자 소지 경력자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이민청에 제출할 영주권 발급 신청서 및 변호사 위임장
- 신청인 증명사진 6매
- 파나마 공증사무소의 공증 또는 여권 발행 기관이나 파나마 주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여권 사본
- 신체검사서(건강검진)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반드시 파나마에서 파나마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공증 불요)
- 개인정보진술서(변호사가 양식 제공)
- 파나마 대한 투자 증거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만족시켜야 함)
 - 최소 15만불이 예치된 신청인 본인 명의의 파나마 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증명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15만불 이상의 부동산 등기 등본
 - ※ 예금액과 부동산의 가액이 15만불 이상인 경우도 투자 증거로 인정
- 신청인이 근무했던 회사(SEM 라이선스하에 운영)의 법인장이 서명한 회사의 근무 경력확인서(파나마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신청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SEM 라이선스 하에 설립된 회사임을 확인하는 SEM 라이선스 위원회(Comision de Licencias de Sede de Empresas Multinacionales)가 발급한 확인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이민법(Decreto Ley3 de 2008) 제31조에는 영주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체류허가에 대한 취소 사유를 규정
 - 대표적인 영주권 취소사유는 국외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면서, 사후 해당 체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 이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 국가 안보 위협, 영주권 부여 근거에 맞지 않는 활동, 허위 문서 제출, 조세 범죄나 사기로 처벌받은 경우 등도 영주권 취소 사유에 해당

7. 부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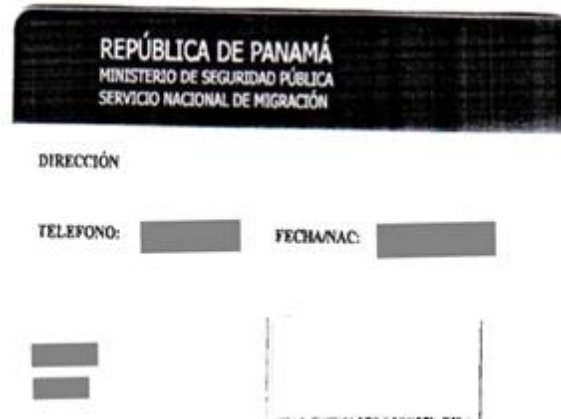
- 국외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여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외 체류 사유가 합리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이 부활함

- 8. 포기제도 :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음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파나마 이민청(Servicio Nacional de Migración Panamá)
<http://www.migracion.gob.pa>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미만
-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영주권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파나마에서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파나마 등록증 (Cedula) 수령 가능
 - 사회보장기금(CSS)에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가능

III. 영주권 견본



파라과이(Paraguay)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Admision Permanente (영주권)
 - Admision Temporario (임시영주권)
 - Residencia Precaria (임시체류허가)
2. 형태
 - 카드(영주권)
 - 여권에 고무인날인(임시체류허가)
3. 유효기간 : 영구 / 임시영주권 1년 / 임시체류허가 6개월
4. 신청자격(취득조건)
 - 투자이민
 - 투자 목적 사업
 - 취업(현지고용주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5. 수속절차
 - 제출서류
 - 파라과이 입국 사증(Visa)
 - 본국(거주국)의 무범죄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건강증명서(진단서)
 - 유효한 여권
 - 수속기관
 - 가. 경찰국 수사과에 외국인 등록
 - 나. 이민청에 영주권 신청
 - 다. 영주권 수령 후 경찰국에 주민등록 (Cedula de Identidad)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무기징역 수형시

- 3년 이상(신고 없이) 국외체재시
- 7. 부활제도 : 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 8. 포기제도 : 외국국적 취득 경우 현지 법원에서 확인서 발급시 영주권 반납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es.gov.py>
- 10. 기타사항
 - 2005년 영주권제도와 비교하여, 유효기간 10년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없어짐 (한번 발급된 영주권은 계속 유효함)
 - 영주권에 ‘유효기간 10년’ 이 기재되어 있어도, 갱신(재발급)이 필요 없음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3년간 복수 재입국
 - 재입국 증명절차 없이 출·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과태료 부과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및 투표권 행사(대통령, 상·하의원 선거시 투표권 없음)
 - 영업행위
 - 부동산 소유
 - 의무교육혜택

III. 영주권 견본

1.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파라과이 내무부 산하 이민청 (내무부 직인)
 제목: 영주권
 유효기간: 10년
 일련번호: A 시리즈
 신청인 서명

IC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Civil Status: 기혼, 성별:남
 접수번호: - , 1992년 05월 26일
 비고: 영주권 갱신
 발급지 / 발급일: 아순시온, 2005년 11월 09일
 (이민청장 서명과 직인)

2. 최근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파키스탄(Paki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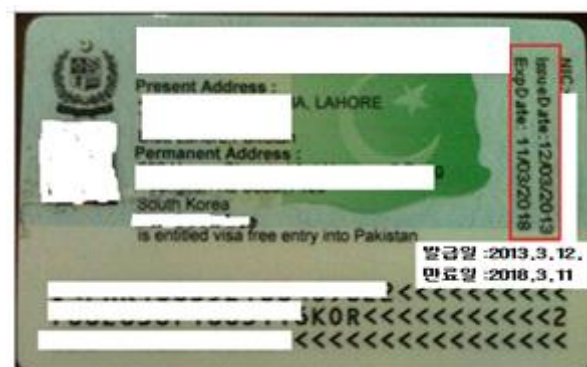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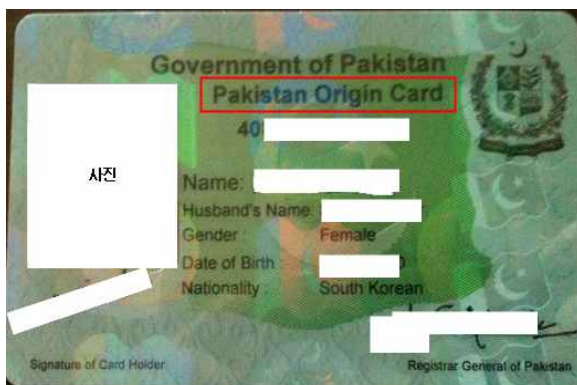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OC(Pakistan Origin Card)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7년 및 5년(주재국민 배우자)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외국인중 과거 국적자, 부모/조부모 국적자와 주재국민 배우자와 자녀
5. 수속절차 : 파키스탄 국립자료등록소(NADRA) 및 재외공관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파키스탄 국적 회복 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nadra.gov.pk
10. 기타사항 : 내국인과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에게도 발급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무제한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제한 허용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무사증입국, 외국인등록면제, 부동산거래가능, 은행계좌개설
4. 기타사항 : 동 카드로 주재국민 신분증(CNIC) 대체 가능

III. 영주권 견본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t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영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국에 통상 5년간 거주하고 유효한 사증소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재국 투자자 : 주재국에 등록된 백만KINA(40만불)이상 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주
 -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의사, 교육자)에 주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종교인 : 주재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 또는 보증되는 자
 - 퇴직자(만55세) : 주재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되는 자
 - 배우자 : 주재국 시민권자와 결혼관계를 5년 이상 지속한 자
 - 주재국 시민권자의 자녀 : 시민권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권자 자녀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 건강진단서, 신원조사서 및 기타 증명서를 주재국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PNG 법에 의해 3개월 이상 수감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12개월 이상 국외체류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재국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pg>)
10. 기타사항
 - 영어 또는 주재국 언어(피진어) 구사자로 거주 지역에서 평판이 좋아야함
 - 수수료 : PGK5,000

페루(Peru)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Carné de Extranjeria(INMIGRANTE)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체류권 취득후 2년 이상 연속 페루거주자로서, 최근 2년간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5. 수속절차 : 이민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 y Naturalización)에 신청
 - 신청서식 F-004 (홈페이지 www.digemin.gob.pe에서 내려받기 가능)
 - 수수료(S/. 117.60) 납부 영수증 (납부은행: Banco de la Nación)
 - 신분증의 복사본 :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증(Carne de Extranjeria), 의전신분증(외교관, 영사관, 공무원), 페루출입국 카드 (TAM: Tarjeta Andina de Migracion)¹⁾
 - 인터폴 전과조회서 (Ficha de Canje Internacional - INTERPOL) (미성년자 제외)
 - 신청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연간 10 UIT²⁾ 이상의 소득납부 재정증명
 - 체류자격의 지속성 입증-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체류증 소지
- ※ 참고사항
- 신청 서식지는 신청인이 직접 서명할 것
 - 신청인은 신청 시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있을 것
 - 카톨릭계 종교인은 인터폴 전과조회서 첨부 미해당
 - 신청인이 종교인으로 페루에 합법 거주하고 있을 경우, 상기 10 UIT 소득 증명은 페루 국내에서의 교수직이나 건강 관련 업무로 인한 소득 또는 외국에서 입금 되는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취업자, 전문직업인 또는 투자자 자격으로 페루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연간 10 UIT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 내역,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을 통해서 신고해야 함. 전문직업인의 경우에는 수임료 영수증 발급 내역 또는 연간 소득신고 납부 내역 등의 서류를 통해서 증명해야 함
 -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 첨부 필수

1) 단기 방문자의 경우에 한함. TAM은 페루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스탬프를 찍어준 출입국카드를 말함

2) UIT: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과세단위)로 SUNAT에서 매년 고지하며, 2014년은 S/. 3,800 임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페루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며, 영주권카드는 5년의 유효 기간이 있어서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하여야 함
- 영주권 취소는 영주권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취소를 신청하거나 범법행위(중범죄)가 있을 경우 주재국 정부의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

7. 부활제도 : 이민국에 부활 신청

8. 포기제도 : 본인이 포기의사 표명시 관련절차에 따라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http://www.migraciones.gob.pe>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지위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권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건강보험, 사회복지 등의 면에서 페루 국민과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페루 국적자와 같이 납세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만, 영주권자의 경우,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 때 페루 국민이 주민등록증(DNI, Documento Nacional de Identificacion)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영주권(Carne de Extranjeria)을 제시하는 차이가 있음. 영주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 외국인의 경우, 페루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함

III. 영주권 견본

1. 종전 발급되던 영주권 형태



페 루 공 화 국

이주귀화국

이주자격 : 이민

성(Apellidos):

명(Nomb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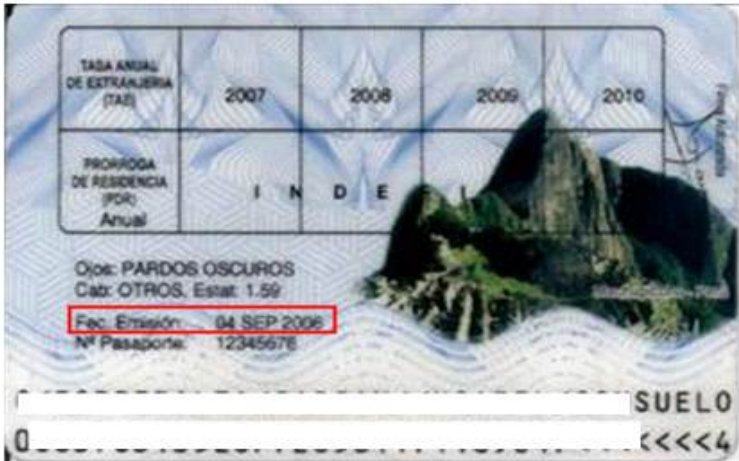
국적(Nacionalidad): 성별(Sexo):

생년월일(Nacimiento):

유효기간(Vencimiento) 혼인상태
(Estado Civil): 미혼(S)

구외국인증번호(Carne Extranjeria
A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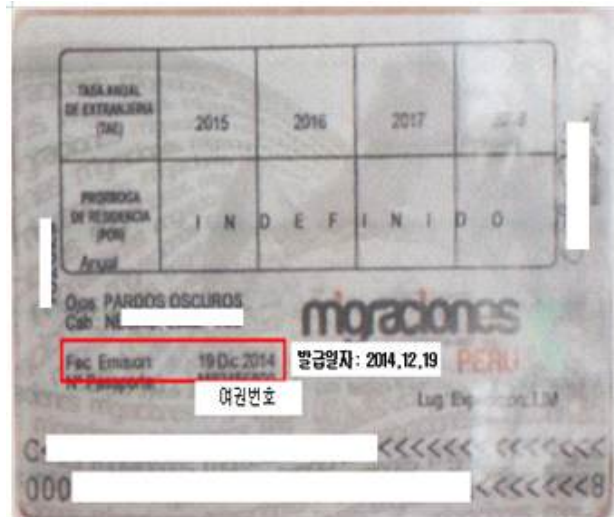
외국인등록증 번호:



외국 인세 금(T AE)	2007	2008	2009	2010
체류 연장 (POR)	무	기	한	

눈색깔(Ojo)
 머리색깔(Cab.): 신장(Sta.):
 발급일자(Fec.Emission): 2006.09.04.
 여권번호(No. Pasaporte)

2.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 형태



포르투갈(Portugal)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허가(Autorização de residência permanente)
2. 형태
 - 전자카드(Título de Residência) : 비EU국민에게 발급. 가로 86mm*세로54mm, 양면
 - 종이카드(Cartão de Residência Permanente) : EU국민의 가족에게 발급. 가로 209mm*세로 104mm. 총 6면으로 된 접이식 카드
3. 유효기간 : 없음. 그러나 전자카드의 경우 5년, 종이카드의 경우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혼인여부나 주소지 변경 또는 카드 분실시 재발급신청 필요
 - 혼인여부나 주소지 변경 시 60일내 이민국에 통보 의무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최소 5년간 임시거주허가(Autorização de residência temporária)를 소지한 자
 - 포르투갈에 거주한 최근 5년간 포르투갈 법상 누적 1년 이상의 구류형을 받지 아니한 자
 - 재정능력 및 주거지, 납세의무준수, 사회보장가입을 입증한 자
 - 포르투갈어 기본 지식을 가진 자(포르투갈어 어학과정 수료증, 포르투갈어 사용국가 학위증, 교육부 지정 기관에서 발행한 포르투갈어 능력시험 합격증 등 제출 필요)
5. 수속절차 : 유효기간 만료 이전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신청. 영주거주허가 최초 신청 시 60일 이내, 갱신의 경우 30일내 통보 원칙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주증 신청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진 경우
 - EU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사 행위를 시도할 계획이 입증되는 경우
 - 공중질서와 치안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 연속 24개월 또는 3년 통산 30개월간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 국내부재 최대허용기간을 초과하려는 자는 출국 이전 부재사유를 허가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이전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출국 이후 신청
 - 직업적 또는 문화·사회적 사유로 본국에 체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부재 최대허용기간 초과 인정

폴란드(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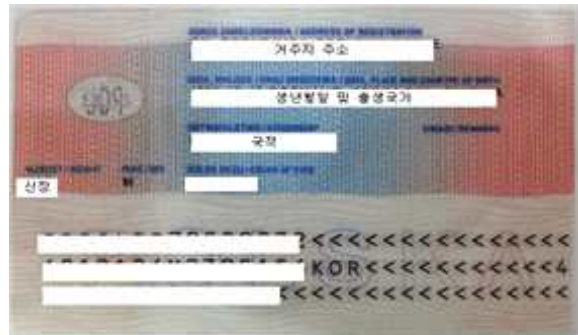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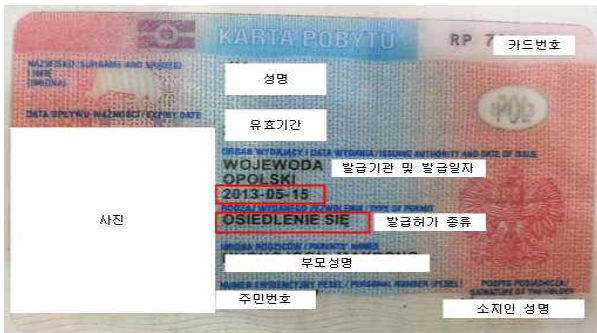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EU장기거주허가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무기한(단, 거주허가카드의 경우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5년 이상 합법적 거주/학업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소득 증명
5. 수속절차 : 해당 거주지 주정부, 해외일 경우 폴란드대(영)사관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폴란드 및 EU영토 지정기간 이상이탈
7. 부활제도 : 영주권 상실 후 합법적인 폴란드 거주기간 3년
8. 포기제도 : 해당 거주지 주정부에 포기신청 및 카드 반납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행정부 외국인 송환국(www.udsc.gov.pl)
10. 기타사항 : 외국인 관리법에 의거 EU장기거주허가제 실시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기타 EU회원국 체류 6년, 비 EU국가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영주체류자격 상실시 재입국허가 필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공직취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폴란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III. 영주권 견본



프랑스(France)

I. 장기체류증 제도(1회 발급 후 갱신 시 영주권 신청 가능)

1. 명칭 : 장기체류증(carte de résiden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0년(갱신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 당연취득
 - ① 프랑스인(또는 동 배우자)의 자녀 또는 부모
 - 프랑스 국적자의 자녀인 경우(21세 이하)
 - 프랑스 국적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
 - ※ 프랑스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 해당
 - ② 난민 또는 무국적자 및 그 가족
 - 난민자격을 취득한 본인
 - 난민자격 취득자의 가족: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단독으로 프랑스에 입국하여 난민자격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부모
 - 무국적자 신분 취득 후, 가족체재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무국적자의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
 - ③ 산업재해연금 수혜자 및 그 가족
 - 불구정도가 20% 이상인 산업재해로 인한 연금 수혜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금 권리 승계자
 - ④ 연합군 또는 외인부대 소속자
 - 프랑스 연합군 소속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 군대 소속으로 참전한 자
 -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⑤ 출생을 원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
 - 11세 이후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5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한 자
 - ⑥ 인권 피해자 혹은 성매매 피해자

2) 허가 후 취득

① 가족체재

-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결혼 후 3년 경과자
- 장기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 자녀로서 ‘가족결합’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로서 가족체재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 ※ 프랑스 공화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며, 프랑스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에 해당

② 법원으로부터 ‘보호조치’ 를 받은 자

- 배우자, 동거자, 혹은 내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은 자
- ※ 가해자 측에 명백히 유죄가 인정된 경우

③ 프랑스 경제 기여자

- 50인 이상 사업장의 창업 또는 관리자 또는 이에 관여된 사람
- 1천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프랑스 경제시장에 투자한 사람
- 프랑스 고용시장에 예외적인 공헌을 세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 해당 항목으로 장기체류증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도 동일 체류증 취득가능

5. 수속절차

◦ 제출서류

- 신분증명서 및 사진 3매
- 장기비자(또는 체류증)
- 재정확인서
- 거주사실확인서
- 의료보험증서
- 프랑스 공화국 이념준수 서약서
- 초급 프랑스어 이수증서(DILF)

◦ 수수료 : 신청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화되어 있으며, 최고 260유로임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일부다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외국인 불법고용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이미 장기체류증이 무효된 경우(갱신불가)
 - 3년간 연속적으로 EU 이외 국가에 거주한 경우
 - 6년 이상 연속적으로 프랑스 이외 국가에 거주한 경우
 - 타 유럽국가에서 장기체류증을 발급받은 경우
- ※ 다만, 프랑스에서 혼인 후 4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호됨
 - 프랑스인과의 혼인 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양육에 참여한 경우
 -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별거의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7. 부활제도 : 결격요건이 해결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
-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파리 : <http://www.prefecture-police-paris.interieur.gouv.fr>
 - 기타 지역 거주시, 거주지 관할 경시청
- 10. 기타사항
 - 과거에는 단순히 프랑스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학생 신분 제외)하면 장기체류증(10년 유효)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2015.2월) 기준, 동 조건은 장기체류증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인권피해, 성매매 피해 또는 프랑스 경제에 예외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장기체류증 발급 자격에 해당함

II. 영주권 제도(carte de resident permanent)

1. 개요
 - 장기체류증 유효기간 만료시, 장기체류증의 갱신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취득 조건은 아래와 같음
 - 프랑스 사회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
 - 프랑스 사회에 융합된 자
 - ※ 주의 사항
 - 장기체류증 연장 또는 신청과는 달리, 영주권 신청은 경시청에서 거절을 할 수 있음
 - 알제리 국적자는 영주권 신청 불가
2.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장소 : 거주지 관할 경시청에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
 - 출생 및 가족관계 증명서
 - 거주 증명서
 - 만료기간이 가까운 장기체류증
 - (일부다처가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일부다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최근 10년간) 3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 프랑스 국내법 준수 각서
 - 프랑스 이민 통합사무소(OFI)에서 발급하는 계약서 및 통합교육 이수 증명서
 - 초급 프랑스어 이수증서(DILF)
 - 사진 3장

3. 비용 : 수수료 260 유로

4. 영주권 수령 : 경시청에서 본인 직접 수령

5. 형태 : 사진 및 개인정보가 칩 안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형태 신분증

6.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 없음

7.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 없음

8. 기타사항 : 60세 이상이거나, 기존 장기체류증(carte de résident)의 두 번째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영주권 획득이 용이함

III. 장기체류증 및 영주권 견본

1. 현재 발급되는 형태



2. 종전 발급되던 형태



체류증 / 체류증 번호

장기체류증(또는 영주권)
성 :
이름:
발급일: 만료일:
발급처: 프랑스 경시청
자격:

담당자 서명

본인확인코드



출생일: 출생도시:
출생국가:
국적:
성별: 프랑스입국일:
거주지주소:
소지인의 서명
주소지 변경시 1주일 이내에 소지인의
서명 신규주소지를 등록해야함

핀란드(Finland)

I. 영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 허가(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별도 통지일까지 유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 연속으로 4년간 핀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법(Aliens Act)상 영주허가 부여에 문제가 없는 자
5. 수속절차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 여권, 사진, 재정확인서/결혼증명서, 수수료 등을 제출하여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신청시 본인의 신원 및 기타 결정과 관련된 사실에 관한 허위정보를 적시하거나 영주허가 불허 사유를 은폐한 경우
 - 영주허가 취득당시 증명한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른 쟁쟁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영구 출국한 경우 또는 장기거주 목적으로 계속해서 2년간 해외 거주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migri.fi>(이민국), <http://www.poliisi.fi>(경찰청)
10. 기타사항 : 거주허가증 신청시 지문 채취

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법적지위는 시민권자와 동일하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인정. 복지제도의 혜택은 핀란드 시민권자와 동일

III. 영주권 견본



거주허가증

이름

① 거주기간 : 영주권의 경우 PYSVA로 적혀있음

발행장소 및 발행일(2012.1.2.)

② 거주허가증 종류 : 영주권일 경우 P

③ 외국인법 조항 중 근로권에 대한 명시

핀란드 거주허가증



생년월일 및 장소

성별 국적

④ 핀란드이민청(Finnish Immigration Service) 고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명시된 날짜 이전에 갱신되어야 함

필리핀(Philippines)

I. 거주제도

1. 거주제도 개요

- 필리핀 이민법상 이민은 ‘쿼타(quata) 이민’ 과 ‘비쿼타(non-quota)이민’ 으로 구분됨
 - 쿼타(quata) 이민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필리핀 국민에 대해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에 한하여 허용하며 연간 50명으로 인원 제한
 - 비쿼타(non-quota)이민 : 인원에 제한없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허용

II. 영주권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2. 형태 : 카드(ACR I-Card)

3. 유효기간 : 영주자격에 기간 제한은 없으나 ACR I-Card의 유효기간은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쿼타(quata) 이민
 - 필리핀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전염병 등 혐오할 만한 질병이 없을 것
 - 필리핀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필리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격 또는 기술을 소유하거나 과학적, 교육적, 기술적 지식을 소유할 것
 - 필리핀인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
 -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실이 없을 것
 - 이민청장이 인정한 충분한 자산과 투자실적이 있는 자
- 비쿼타(non-quota)이민
 - 필리핀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필리핀 영주권을 소유한 모가 필리핀 거주기간 중 출산하고 부모가 동반하여 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녀
 - 영주권을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하는 자녀

- 외국인과의 혼인 등으로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여성과 그 여성과 동반을 원하는 21세 미만 자녀
 - 과거에 필리핀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영주자격 유효 기간 내에 귀국하는 자
 - 필리핀 이민법 효력발생 이전에 필리핀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이민법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자
 - 출생으로 인한 필리핀 국적자가 외국적을 취득한 후 영주목적으로 필리핀으로 귀국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5. 수속절차 : 신청요건을 갖추어 이민청(본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
 - 투자 또는 가족관계가 허위로 밝혀진 때
 -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
 - 이민법에 규정된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부활제도 : 있음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v.ph

III.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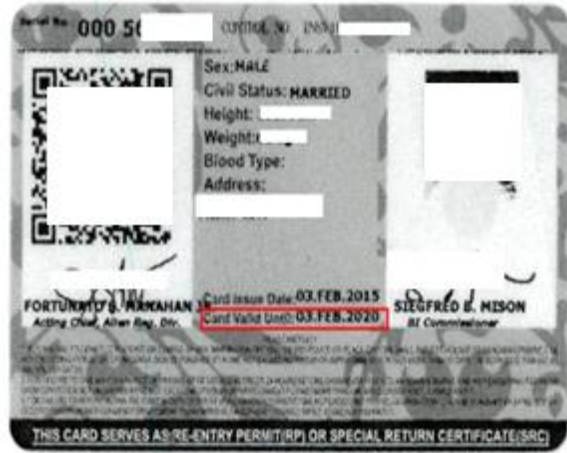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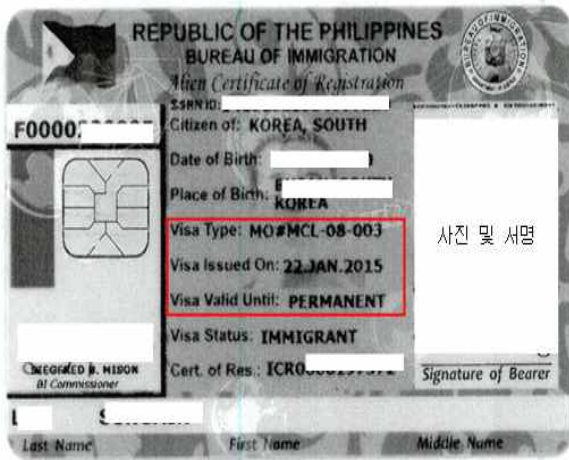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있음(유효기간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허용
 - 법에서 허용하는 기업활동 가능
 - 소매업은 불가
 - 취업활동 가능
 - 사유지 임대 등 재산소유 가능
 - 토지는 소유할 수 없음
 - 학생의 경우 유학비자나 SSP 없이 학업허용
 -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출입국 가능

4.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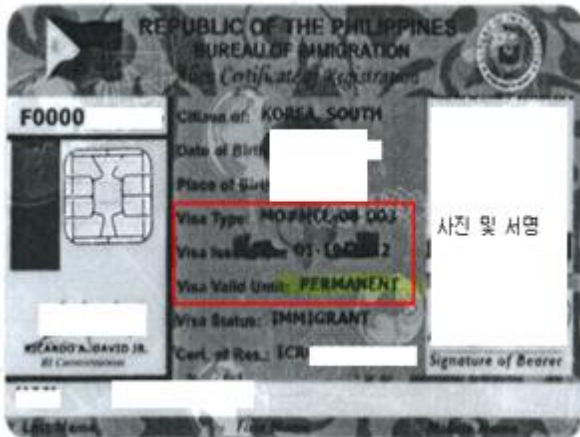
- 영주자격에 기간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의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갱신하여야 함
- 이민청에 등록의무가 있으며, 체류지 변경시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IV. 영주권 견본

1. 최근 발급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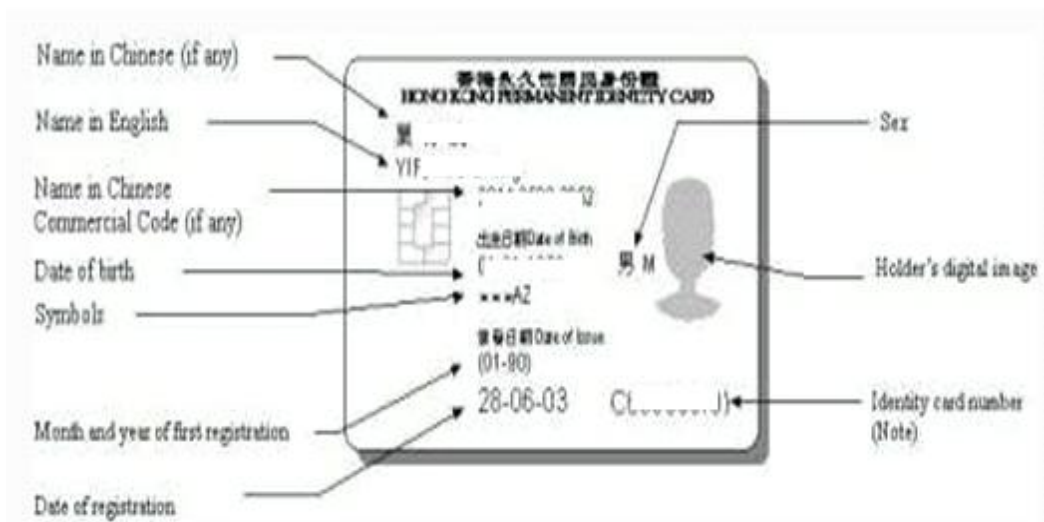


2. 종전 발급되던 형태



홍콩(Hongkong)

1. 명칭 : 香港永久性居民身份證(HONGKONG PERMANENT IDENTITY CARD)
2. 유효기간 : 없음
3. 형태 : 카드
4.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immd.gov.hk
5. 영주권 견본



II. 영주권 제도 없는 나라

국가명(최종 확인 연도)

가봉(2012)	말리	시에라리온	이집트	쿠웨이트
가이아나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인도	키르기스공화국
감비아	모리타니아	아이티	인도네시아(2009)	타지키스탄
그리스	몰디브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탄자니아
기니	몽골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터키(2009)
기니비사우	바누아투	알제리	차드	통가
나이지리아	바레인	에티오피아	카메룬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2012)	벨기에	오만	카자흐스탄	튀니지
네팔(2012)	부룬디	온두라스	카타르	피지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포베르데(2012)	헝가리
레바논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룩셈부르크	수단	이라크	코트디부와르(2009)	
리비아	스리랑카	이란	콩고공화국	

가봉(Gabong)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체류증(carte de séjour)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2년(2년 후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공·사기업체 근로자, 기술협력요원, 개인사업자, 선교사 등 (동 가족구성원 포함)
5. 수속절차 : 취업허가서, 영업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노동청에서 고용계약 승인을 득한 후 내무부 산하 이민국(D.G.D.I Direction Générale de la Documentation et de l'Immigration)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노동허가 없이 취업하거나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2개월 이내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
 - 체류증 유효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갱신하지 않는 경우
7. 부활제도 : 이민국(D.G.D.I Direction Générale de la Documentation et de l'Immigration)에 신청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dgdi.ga>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간 국내 의무체류기간(183일)을 제외한 기간 중 잔여 유효기간 까지 해외 체류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시 재입국 비자를 사전 취득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사회보장 제도인 CNSS(Caiss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에 가입하면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미성년 자녀 보조금 혜택이 있음

III. 체류증 견본



- 가봉공화국
- 체류증
- 성
- 명
- 출생일
- 국적
- 직업
- 주소
- 유효기간
- 체류증 번호



- 외국인의 입국 및 거주법
- 가봉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 체류증을 항상 지참하여야 한다
 - 실제 규정에 따라 연간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 체류증의 갱신을 유효기간 마지막 달에 한다
- 모든 체류자는 사적,공적인 일을 볼 때 민간 및 행정단체에 유효한 체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이아나(Guyana)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없음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최장 3년
4. 신청자격 : 요양, 방문, 취업, 무역, 상업 등 극적으로 단기 체류목적 입국 3개월 거주 후 신청가능
5. 수속절차 : 이민국에 소정서류 제출
6. 효력상실 사유 :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체류시 효력상실됨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2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2년 이내 체류 후 입국시 허가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취업, 무역 등 비자목적에 맞는 활동 가능

감비아(Gambia)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RESIDENTIAL PERMIT "A", "B", "C"
- "A" : 학생, 은퇴 외국인, "B" : 일반 종사자, "C" : 전문직종 종사자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6개월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사본1부, 사진 3매, 범죄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국적 증명서, 병원진단서(질병 확인), 체류증명서류(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절차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필요서류(반납사유서,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감비아 내무부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그리스(Greece)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Adeia Diamonis(Residence Permit)
2. 형태 : 신청자 본인과 부양가족 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 주재국 국민의 배우자에게는 카드 발급(Deltio Diamonis)
3. 유효기간 : 1, 2, 5, 10년 단위
(관련법 개정 전에 유효했던 무기한 장기체류허가제도는 폐지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체류 목적에 부합되는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국내체류자격 신청
5. 수속절차 : 사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지방행정사무소(구명칭 Periph er ia)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신청, 이민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류허가 취득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체류허가기간 종료, 국가안보, 치안, 보건 상 위험, 이민 법 위반, 위조문서 제출 등
7. 부활제도 : 범법경력이 없는 경우 재신청 관련 기간적 제한 없으나, 안보 또는 범죄로 인한 취소 경우 당국의 검토 및 특별허가가 요구되며 사실상 불가
8. 포기제도 : 당국에 소정의 양식 신청 및 반환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www.ypes.gr)
10. 기타사항
 - 체류허가 신청 행정 절차는 과거 관할 구청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사무소 (구 Periph er ia)에서 이루어짐
 - 장기체류허가는 5년 기한이고, 유럽연합의 제도로서 모든 EU회원국에 적용됨. 동 체류허가 소유자는 주재국뿐만 아니라 타 유럽 회원국에서 거주할 수 있음
 - 2014년 개정법에 이민 2세대 체류허가 제도가 제정되었음(2장 108조). 동 제도에 의거, 현지 태생 또는 현지 초중등교육 과정 6년 이상 졸업한 21세 미만 성인의 합법적 체류자는 5년 기간의 체류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가짐. 동 체류허가 소유자는 특정 기준(학력-경제력)을 만족할 경우, 장기체류허가로 연장이 가능함
 - 주재국은 법률 4146/2013에 의거 2013년부터 총 25만 유로 이상 부동산 투자한 자와 그 가족에게 5년 체류허가를 부여함
 - 최근까지 법률 3386/2005이 유효했으나, 2010년 개정법 3863/2010을 거쳐 현재 법률 4251/2014이 유효함. 2009년부터 불법이민현상 및 범죄증가로 인해 외국인

이주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어 중도좌파 정부(사회당)에 의해 2010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 중도우파 정부(신민당)에 의해 재개정되었으나, 2015.17 출범한 좌파연합 정부가 현재 관련법 추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바, 향후 관련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체류허가 경우 1년에 30일, 5년 체류허가 경우 6개월 지속적 부재 및 5년간 총 10개월 미만 허용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국제 및 유럽의 인권원리 존중 및 보장. 국방의무와 참정권을 제외하고 시민들과 동등한 법적지위. 세무와 보험연금공단 가입이 필수적인 바, 주재국민과 동등한 교육 및 복지 수준 영위
4. 기타사항 : 정치적 망명, 피난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해 발급된 5년 체류허가의 경우 국외체재기간에 제한 없음

III. 거주권 건본

1. 거주 비자



RESIDENCE PERMIT GRO0000000
 NAME IN FULL
 VALID UNTIL
 (ISSUED) PLACE
 ISSUE DATE
 TYPE
 REMARKS

2. 거주권 카드



기니(Guinea)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RECEPISSE TENANT LIEU DE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별도의 증명카드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3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는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여권, 증명사진 2장, 신청비(70,000FG, 약 93미불)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갱신 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MINISTRE DE SECURITE DIRECTION GENERALE DE LA POLICE NATIONAL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기니비사우(Guinea-Bissao)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Cartao de Identificacao de Cidadao Estrangeiro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 사본1부, 사진 3매, 범죄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국적 증명서, 병원진단서(질병 확인), 체류증명서류(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 절차 : 신규 신청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필요서류(반납사유서, 등록증)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나이지리아(Nig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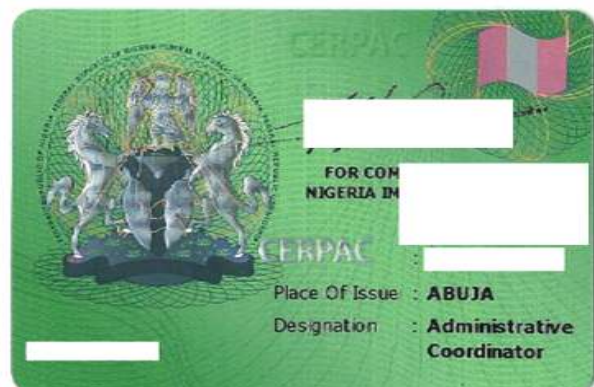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나이지리아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또는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immigration.gov.ng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III. 거주권 견본



- 재입국비자(Re-entry visa)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

남수단(South Sudan)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3종)

- 1) 특별 거주허가(Special Residence Permit)
- 2) 보통 거주허가(Ordinary Residence Permit)
- 3) 임시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1) 특별 거주허가 : 5년
- 2) 보통 거주허가 : 2년
- 3) 임시 거주허가 : 1년

4. 신청 자격

1) 특별 거주허가 : 5년

-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 장관이 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5년간 유효하며 동일기간으로 갱신 가능

2) 보통 거주허가 : 2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 장관이 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2년간 유효하며 동일기간으로 갱신 가능

3) 임시 거주허가 : 1년

- 특별 또는 보통거주허가를 보유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 12개월 이내에서 유효하며 12개월 이내에서 갱신 가능

4) 관광객 :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남수단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상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5. 효력상실 사유

- 1) 특별 및 보통거주허가 소지자가 재입국 사증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체재할 경우
- 2) 특별 및 보통거주허가 소지자가 재입국 사증 보유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네팔(Nepal)

I. 거주 제도

1. 명칭 : Residential Visa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세계적인 유명인사
 - 네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외국인
 - 네팔산업에 1회, 10만불 이상 투자자
5. 수속절차 : 관련부처 추천을 받아 내무성에서 심사 후 이민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사유 : 체류자격 외 활동
7. 부활제도 : 투자요건 구비 및 문제점 해결시 가능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immi.gov.np>

라이베리아(Republic of Lib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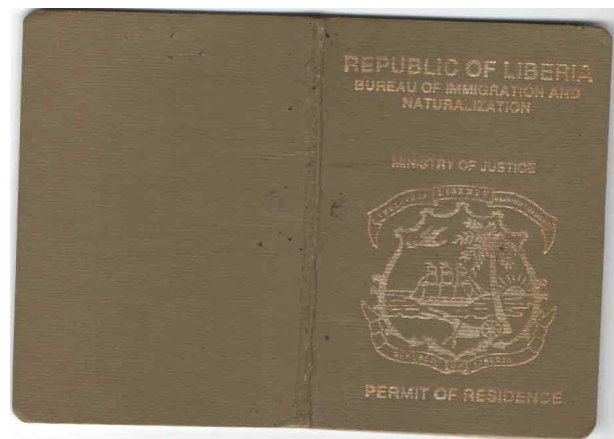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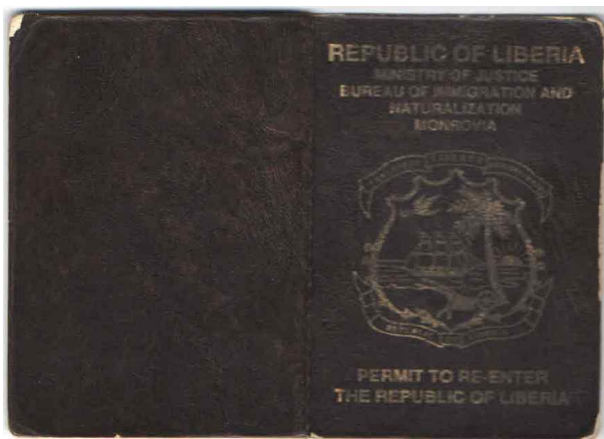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수첩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라이베리아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또는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III. 거주권 견본



THIS PERMIT DOES NOT PROTECT YOUR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SEE IMPORTANT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BEGINNING ON PAGE 16

IF THIS DOCUMENT IS FOUND, PLEASE RETURN IT TO 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MINISTRY OF JUSTICE MONROVIA, LIBERIA

CE PERMIS NE PROTEGE PAS VOTRE RESIDENCE EN VUE D'UNE NATURALISATION.

VOIR INSTRUCTIONS IMPORTANTES A LA PAGE 16

SI CE DOCUMENT EST TROUVE, VEUILLEZ LE REMETTRE AU BUREAU D'IMMIGRATION ET DE NATURALISATION MINISTERE DE LA JUSTICE MONROVIA — LIBERIA

REPUBLIC OF LIBERIA
MINISTRY OF JUSTICE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PERMIT TO RE-ENTER THE REPUBLIC OF LIBERIA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32 OF THE ALIENS AND NATIONALITY LAW, THIS PERMIT IS ISSUED TO THE PERSON NAMED HEREIN, AN ALIEN PREVIOUSLY LAWFULLY ADMITTED TO LIBERIA TO RE-ENTER LIBERIA IF OTHERWISE ADMISSIBLE.

PERMIS DE RENTRÉE LA REPUBLIQUE DE LA LIBERIE

CONFORMEMENT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32 DE LA LOI SUR LES ETRANGERS ET LA NATIONALITE, CE PERMIS EST DELIVRE A LA PERSONNE DONT LE NOM Y FIGURE UN ETRANGER LEGALEMENT ADMIS EN LIBERIE AUPARAVANT, EN VUE DE RENTRER EN LIBERIE S'IL EST AUTREMENT ADMIS.

THIS IS NOT A LIBERIAN PASSPORT
CE N'EST PAS UN PASSEPORT LIBERIEN

1 20 0

PERMIT OF RESIDENCE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of this Permit having complied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sidence of aliens, is hereby granted permission to reside within the Republic of Liberia for the period stated below or until the revocation of this Permit by competent authority.

PERMIS DE RESIDENCE

Nous certifions que le titulaire de ce permis, ayant observé les lois et règlements relatifs à la résidence des étrangers, a été octroyé la permission de résidence dans cette République pour la période indiquée ci-dessous ou jusqu'à la révocation de ce permis par les autorités compétentes.

Signature of Immigration Authority
Signature du Service de Immigration

Signature of Holder
Signature du titulaire

Permit No. [REDACTED]
Permis No. [REDACTED]

LIBERIA
MINISTRY OF JUSTICE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JUL 7 1956

JAN 1 1956

GRATIS

Validity of Permit	Validité du Permis
<p>Name of Permit Holder</p> <p>Address in Liberia</p> <p>Address in Home Country</p> <p>Date of Birth</p> <p>Place of Birth</p> <p>Religion</p> <p>Profession</p> <p>Marital Status</p> <p>Number of Dependents</p> <p>Period of Residence in Liberia</p> <p>Period of Residence in Home Country</p> <p>Signature of Immigration Officer</p> <p>Date of Issuance</p>	<p>  </p>

GRATIS

NAME: [REDACTED]

ADDRESS IN LIBERIA: [REDACTED]

ADDRESS IN HOME COUNTRY: [REDACTED]

DATE OF BIRTH: [REDACTED]

PLACE OF BIRTH: [REDACTED]

RELIGION: [REDACTED]

PROFESSION: [REDACTED]

MARITAL STATUS: [REDACTED]

NUMBER OF DEPENDENTS: [REDACTED]

PERIOD OF RESIDENCE IN LIBERIA: [REDACTED]

PERIOD OF RESIDENCE IN HOME COUNTRY: [REDACTED]

SIGNATURE OF IMMIGRATION OFFICER: [REDACTED]

DATE OF ISSUANCE: [REDACTED]

GRATIS

This Page is for use by Liberian Immigration Officer
Celle page est réservée à l'emploi par l'employé Libérien de l'Immigration.

ADMISSION STAMPS
TIMBRE ADMIS

PHOTOGRAPH

LIBERIA

PROFESSION: [REDACTED]

DATE OF BIRTH: [REDACTED]

PLACE OF BIRTH: [REDACTED]

Renewal
Renouvellement

BUREAU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MINISTRY OF JUSTICE
LIBERIA

RENEWED FOR [REDACTED]

VALID TO [REDACTED]

Permission to Work
Permis de travail

ADJUSTMENT OF STATUS

APPROVED FOR EMPLOYMENT WITH PERMITS ONLY AS OF THE ALIENS AND NATIONALITY LAWS OF THE LIBERIA OF 1956

ISSUED TO [REDACTED] A.D.

LIBERIA



IMPORTANT INFORMATION

GENERAL : A re-entry permit has no effect under the immigration laws except to show that the person to whom issued is returning from a temporary visit abroad and relieve him of the necessity of securing a visa from a Liberian Consul before returning to Liberia. It does not relieve him from meeting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laws. Persons who have been convicted of or admit having committed a felony or other crime or misdemeanor involving moral turpitude either before or after entering Liberia, other criminal, immoral, insane, mentally or physically defective aliens, those afflicted with tuberculosis or contagious diseases, and others found to be inadmissible under the immigration laws are subject to exclusion if attempting to re-enter, notwithstanding they may be in possession of valid re-entry permits.

EFFECT OF ABSENCE FROM LIBERIA UPON NATURALIZATION ELIGIBILITY : A re-entry permit does not relieve the person to whom issued from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naturalization laws. Notwithstanding the possession of a re-entry permit, absence from Liberia by an applicant for a continuous period of two consecutive years or more during the period for which continuous residence in Liberia is required for admission to citizenship will break the continuity of such residence, except where, prior thereto, the Attorney General has approved an absence in the employment of, or under contract with, the Liberian Government or a Liberian institution of research recognized as such by the Attorney General, or in the employment of a Liberian firm or corporation engaged in whole or part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Liberia or a subsidiary thereof, more than 50 percent of whose stock is owned

by a Liberian firm or corporation, or in the employment of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Liberia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and by which the alien was employed until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n order to qualify for such approval, the applicant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and residing in Liberia, after being lawfully admitted for an uninterrupted period of at least one year. The granting of such approval does not exempt the applicant from the requirement that he be physically present in Liberia for at least one-half of the period of residence required for naturalization except in the case of those persons who are employed by or under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of Liberia; those persons who are authorized to perform the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f a religious denomination having a bona fide organization within Liberia, and those persons who are engaged solely by a religious denomination or by an interdenominational mission organization having a bona fide organization within Liberia as a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Aliens who are absent in connection with or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f a religious denomination having a bona fide organization in Liberia, or who are engaged by such a bona fide organization within Liberia, as a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are also eligible to make such application. Such aliens may acquire the required two years of uninterrupted physical presence after the absence.

EXTENSIONS : The validity of a permit may, on good cause shown, be extended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one year from the original expiration date. Application for extension must be made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shown on this permit.

16

RULES

RULE I. According to Alien Act passed by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approved May 15, 1973, with amendments approved May 9, 1974, Holder of a Permit of Residence is required to renew his/her Permit of Residence on the date of expiration or within 30 (thirty) days thereafter. Failure to do so shall subject the holder to a fine of \$ 100.00 (One Hundred Dollars).

RULE II. The alien shall promptly depart from the country upon completion of his contract of employment. The importer of the alien shall be responsible for his/her departure.

RULE III. No alien employee shall change his employer or engage in private business without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 Naturalization) and no employer shal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 Naturalization) employ an alien not imported by him.

RULE IV. The penalty for violation of subdivisions 2 and 3 is a fine of not more than \$ 1000.00 (One Thousand Dollars); or if the alien is the offender, deportation or both.

RULE V. You shall give prompt written notice to the Immigration authority within fifteen (15) days prior to the time of expiration of your contract period before leaving the country.

RULE VI. This Permit shall, on demand being made by an Immigration officer or official, be produced for inspection by such authorities.

RÈGLES

RÈGLE I. - En vertu de la loi des étrangers votée par l'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 et approuvée le 15 Mai 1973 et des amendements y apportés le 9 Mai 1974, tout titulaire d'un permis de résidence est tenu de renouveler son permis de résidence à la date de son expiration ou trente jours plus tard. A défaut de ce faire, le titulaire du permis sera passible d'une amende de \$ 100.00 (Cent Dollars).

RÈGLE II. - L'étranger doit quitter immédiatement le pays dès l'expiration de son contrat de travail. La personne qui a introduit l'étranger dans le pays assume la responsabilité de son départ.

RÈGLE III. - Tout étranger ne peut changer d'employeur ou s'engager dans une activité privée sans l'accord du Ministère de la Justice (le chargé de l'immigration et de la naturalisation), de même aucun employeur ne peut, sans l'approb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le chargé de l'immigration et de la naturalisation) employer un étranger non importé par lui.

RÈGLE IV. - La violation des articles 2 et 3 est passible d'une peine dépassant pas \$ 1000.00 (Mille Dollars); si l'étranger a commis cette violation, il sera déporté ou encourra les deux peines à la fois.

RÈGLE V. - Avant de quitter le pays, vous devez donner au Service de l'immigration, un avis écrit, 15 jours avant la date d'expiration de votre contrat.

RÈGLE VI. - Ce permis doit être exhibé pour être soumis au Contrôle du Service de l'immigration, à la demande d'un employé du service de l'immigration.

17

레바논(Republic of Lebano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거주신청을 정당화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이민국(general security)에 서류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형사범죄에 대한 법정의 판결이 있는 경우
 - 형사범죄로 재판을 앞두고 보석결정이 있는 경우
 - 체류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본인이 거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general security, www.general-security.gov.lb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최대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이사항 없음

룩셈부르크(Grand Duché de Luxembourg)

I. 장기거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거주증(TITRE DE SEJOUR, resident de longue duree)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5년(5년마다 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연속 5년 이상 합법적 룩셈부르크 거주자
5. 수속절차 : 외교부 이민국에 신청서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신고 없이 12개월 이상 룩셈부르크에 비거주한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취득절차 다시 진행)
8. 포기제도 : 영구 출국신고 및 카드 반납시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외교부 이민국(www.mae.lu)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외거주 신고 시 최대 12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혜택 향유

III. 거주권 견본



리비아(Liby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 비자
2. 형태 : 여권 날인
3. 유효기간 : 최대 1년 후 갱신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국 정부에 등록된 법인 또는 현지회사 직원
5. 수속절차 : 주재국 노동부에 법인(지사) 등록 또는 현지회사 직원 서류 제출
-> 주재국 노동부에서 이민국으로 서류 이송됨 ->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음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법인 취소 및 현지 회사 퇴사 또는 범법행위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재국 노동부 및 이민국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 전, 이민국에서 재입국 비자 필히 선취득
- 거주비자 포기 후 출국시 : 이민국에서 출국 비자 필히 선취득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비자 기간내 주재국 거주 허용

III. 거주권 견본



말리(Mali)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VISA D' ENTREE
2. 형태 : 여권에 기재하는 형식(스탬프)
3. 유효기간 : 1년(1달~최대 5년 선택가능, 3~5년 체류권은 납세실적 등을 감안 제한적으로 부여함)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소속기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원본, 사진 2매, 신청금(180,000FCFA, 1년 기준)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DIRECTION DE LA POLICE DES FRONTIERES (SECTION VISA)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말리내에서 사업 및 장기체류자는 1년 120,000FCFA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모로코(Moroco)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Carte de séjour
2. 형태 : 카드 (8.5 x 5.5 cm)
3. 유효기간 : 1년, 5년
4. 신청자격 :
 - 사업비자 : 개인 사업가 또는 회사 고용주 및 동반가족
 - 고용비자 : 일반회사 근로자 및 동반가족
 - 학생비자 : 교환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최대1년)
5. 수속절차
 - 사업비자 : 회사 정관과 계약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 고용비자 : 모로코 노동부 발급 노동허가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 학생비자 : 소속 대학교 확인서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요구된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경찰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절차 : 신규 신청과 동일
8. 반납제도 : 신청 경찰청 혹은 공항 경찰서에 직접 반납
9. 기타사항
 - 체류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임시체류증(Récépissé)을 발급받아 사용
 - 별도의 영주권제도는 없으며, 모든 외국인은 비자 만료 전 갱신하여야 함

모리타니아(Mauritanie)

모리타니아는 영주권 제도가 없으며, 모리타니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유효기간 1년의 체류증을 발급 받고 있음

몰디브(Republic of Maldives)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비자(Resident Visa)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만료기간 없으나, Work Permit 만료시 거주비자도 만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입국 전 몰디브 인력·청년·스포츠부로부터 Work Permit 획득
5. 수속절차 : 취업회사 등을 통해 Work Permit 신청·발급, 입국시 동 사본 소지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Work Permit 만료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employment.gov.mv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없음

몽골(Mongolia)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증(Residence Certificate)
2. 형태 : 신분증(사진, 인적사항, 지문포함)
3. 유효기간 : 1년(최초 3년간 1년 씩 연장, 이후 2년씩 연장)
 - 몽골인의 가족 또는 장기체류자 동반가족으로 55세 이상인 자는 그 국적국과의 호혜 원칙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을 '영구(Termlee)'로 부여할 수 있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가족결합목적(몽골인의 외국적 배우자, 그 자녀 및 부모, 장기체류자의 가족)
 - 이민
 - 취업
 - 투자
 - 유학, 인턴십, 학술·조사 및 기타 사적인 목적
5. 수속절차 : 거주비자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관리청에서 발급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정보국 또는 경찰청의 권고가 있는 경우
 - 비자·외국인등록·거주정책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외국인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금지활동을 한 경우
 - 몽골국민의 권리와 자유, 인권 또는 몽골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선거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비자 또는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v.mn>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80일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직장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무직자의 경우라도 연금보험, 복지보험, 산재보험 등에 자진가입 가능
-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 무상의무교육 제공
- 토지소유권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장기임차권은 인정

III. 장기체류증 견본



바누아투(Vanuatu)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s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 10년, 15년, 영주(은퇴자)
4. 신청자격(취득조건)
 - Long term Residence Permits : 투자 규모에 따라 거주허가기간 상이
 - 5년 : 투자액 25,000,000VT(U\$265,000)
 - 10년 : 투자액 50,000,000VT(U\$530,000)
 - 15년 : 투자액 100,000,000VT(U\$1,060,000)
 - Retirement
 - 매달 300,000VT(U\$3,200)이상의 연금이 바누아투 내 은행으로 이체 되는 자는 영주 귀국 시까지 체류허가
5. 수속절차 : VIPA(투자진흥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초기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자격 및 허가기간은 VIPA(투자진흥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바레인(Kingdom of Bahrai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여권에 스티커 용지로 부착
3. 유효기간 : 통상 1~2년(연장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바레인 정부, 기업, 개인, 바레인 주재 외국기관에 고용된 자 및 동반 가족
5. 수속절차
 - 구비서류 : 여권원본, CPR(바레인 체류 신분증), 건강증명서, 고용계약서, 스폰서의 NOC(No Objection Certificate)
 - 구비서류를 갖추어 노동청에 신청
 - 이민국에서는 여권사본으로 범죄 등 위법행위 여부 체크하고, 입국허가 여부 체크 후 입국에 문제가없다고 판단될 경우 NOC를 노동청에 통보
 - 노동청은 NOC와 함께 거주허가에 관한 신청사항 승인을 스폰서에 통보
 - 스폰서는 노동청에 거주허가증 발급 등 수수료 BD350(\$935 미불 상당) 납부 후 피고용인을 위한 거주허가증 발급받음
6. 효력상실(취소)사유 : 기간만료, 해고, 고용계약 만료, 스폰서의 의사
7. 부활제도 : 없음(재신청해야 함)
8. 포기제도 : 있음(스폰서만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lmra.bh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허가증에 표기된 바레인 체류허가기간 만큼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취득해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체류허가시 허용된 조건에 따름

III. 거주권 견본

MINISTRY OF NATIONALITY, PASSPORTS & RESIDENCE
رئاسة الجنسية والتميز والسفريات
KINGDOM OF BAHRAIN
دولة البحرين

RESIDENCE PERMIT رخصة إقامة

National ID.:
Passport No.:
Nationality:
RP No. & Type:
RP Issue Date:
RP Expiry Date:
Occupation:

Name :

Employer :

부룬디(Burundi)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체류사증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2년, 20년, 99년
4. 신청자격: 장기체류 사유가 인정되는 자
5. 수속절차 : 관련서류 구비, 이민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재연장 신청시 관련서류 미구비시
7. 부활제도 : 이민국에 적격심사 요청
8.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olice de l' Air, des Frontières et des Etrangers(PAFE)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있음
3.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등 : 없음

III. 거주권 견본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이까마(Iqama)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2년(연장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스폰서(주재국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고용된 자 및 그 동반가족, 주재국 교육기관의 적법한 입학허가를 받아 유학사증을 취득한 후 입국한 유학생
5. 수속절차
 - 취업사증을 통해 입국
 - 신체검사(업무적격심사) : 보건부 지정병원
 - 민간 의료보험 가입
 - (엔지니어의 경우 : 사우디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
 -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 및 취득 : 노동부
 - 거주권(Iqama) 신청 및 취득 : 내무부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해고, 기간만료 등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용주(스폰서)의 의사에 따라 효력상실
7. 부활제도 : 다른 고용주(스폰서)와 고용계약을 통해 취업시 재입국하여 재신청
8. 포기제도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거주권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노동사무소를 통해 고용주와의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계약파기 및 출국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www.moi.gov.sa)
10. 기타사항 : 사우디아라비아는 영주권제도가 없으며, 관광사증이 매우 제한적이고, 적법한 사증(취업, 유학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거주권을 발급하지 않음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통상 6개월
 - ※ 재입국 허가사증은 거주권(Iqama) 취득 후 신청가능

세네갈(Senegal)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CARTE D' IDENTITE D' ETRANGER
2. 형태 :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체류목적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신청서,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증명사진 3매, 범죄경력증명서, 출생 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신청금(15,000FCFA), 비자보증금(307,000FCFA)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시
7. 부활제도 : 다른 해당 체류자격을 구비치 않으면 부활 불가
8. 포기제도 : 반납사유서, 영수증(취득시 지급한 등록비 영수증), 등록증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OLICE DES ETRANGERS DIEUPPEUL
10. 기타사항 : 장기체류권 취득 후 매년 별도의 재발급신고절차 필요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비자제도 폐지, 체류증 소지자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 자격

수단(Sudan)

I. 거주권 제도

1. 명칭(3종)

- 특별 거주허가(Special Residence Permit)
- 보통 거주허가(Ordinary Residence Permit)
- 임시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

※ 주재국 최초 입국시 local stay permit (최초 1개월, 최장 3개월)을 받은 후 주재국 거주 보증인의 추천으로 임시거주 허가가 주어짐

※ 보증인은 수단국적인 또는 학교, 기업체가 될 수 있음

2. 형태 : 비자(여권에 부착)

3. 유효기간

- 특별 거주허가 : 10년
 - 보통 거주허가 : 5년
 - 임시 거주허가 : 1년
- ※ 각각 동일기간으로 연장 가능

4. 신청 자격(취득조건)

- 특별 거주허가 : 10년
 - 1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보통 거주허가 3번째 취득하는 자
 -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문화, 기술, 상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내무장관이 수단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 과학, 문화 예술, 상업 및 경제 분야 등의 저명한 외국인
- 보통 거주허가 : 5년
 -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과학 분야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계부처 추천으로 내무장관이 인정할 경우
- 임시 거주허가 : 1년
 -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최초 입국한 후 Local stay permit을 받은 자가 주재국 거주 보증인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5. 수속절차

- 주재국에 도착 후 3일 이내 내무부 이민국에 입국등록 신청하여야 함

(등록 후 30일 체류 Local stay permit이 주어짐, 1개월 단위로 연장 할 수 있으며
최장 3개월 까지임)

- 유학이나 취업 등 체류목적인 경우 Local stay permit을 받은 후 주재국 거주 보증인을 통하여 1년간 체류가능 한 Temporary residence permit으로 전환할 수 있음
-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5년이 되면 Ordinary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음(체류기간 연장시 보증인 재추천 필요)
- Ordinary residence permit은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15년째 되면 Special residence permit을 받을 수 있음(체류기간 연장시 보증인 재추천 필요)

6. 효력상실 사유

- 특별 거주허가
 - 재입국 사증 없이 계속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시
 - 주재국에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 HIV 양성반응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 재입국 사증 없이 계속 2년 이상 국외체재 시
- 보통 및 임시거주허가
 - 당초의 허가사유가 소멸한 때
 - 주재국에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
 - HIV 양성반응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7. 부활제도 : 보증인의 재추천과 내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효력이 회복됨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주재국 내에서 재입국 허가(re-entry) 또는 복수비자 소유자는 외국에 나가서 별도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특별거주 허가자도 외국인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의료 및 교육 등 수혜는 일반 외국인의 경우와 동일
4.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입국등록
 -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주재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에 도착 후 3일 이내에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함

- 복수비자의 다른 의미
 - 수단대사관에서 발행하는 6개월 복수비자는 6개월 이내에 복수에 걸쳐서 주재국을 입국할 수 있다는 입국비자에 불과하며, 주재국에 입국하여서는 별도로 입국신고를 해야 함. 아울러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출국비자
 - 주재국에서 1개월 이상 체류하다 출국할 경우에는 별도로 출국비자를 받아야 함. 이는 세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단 국민들도 출국 시에는 모두 출국비자를 받아야 함

III. 거주권 견본



스리랑카(Sri Lank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 비자(Residence Visa)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1년(매년 갱신)
 - ◎ 특별거주권제도(RSG Scheme) : 외국인 투자진작, 전문가 영입 등 목적
 - 스리랑카 투자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자가 25만불 이상 예치시 최초 5년 유효 비자발급, 이후 심사하여 갱신, 투자사업 종료시 출국
 - 중요 학문성이나 전문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인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장기 비자발급, 사업(연구)종료시 출국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국가에서 승인한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송출인력
 -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승인한 사업에 고용된 송출인력
 - 스리랑카에서 자금 투자 및 사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 성직자나 종교관련 노동자 및 학생
 - 자원봉사자, NGO 요원
 - 대학재학, 교육기관 등의 외국학생
 - 스리랑카인의 배우자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리랑카인의 자녀
5. 수속절차 : 스리랑카 재외공관에서 우선 입국비자(Entry Visa)를 받아 입국한 후 이민국에 거주비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추방자, 비자기간 초과 체재자(불법체류자), 이민법 위반자 등에게는 비자 미발급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http://www.immigration.gov.lk>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거주비자 신규 발급이나 기존 현지 투자 업체(지사)에 파견된 인력의 대체 및 추가인력(가족)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 함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없음

III. 거주권 견본

RESIDENCE VISA

Date of entry / / page

This Visa valid for

(1) Entry into and stay in Sri Lanka
till 09 2013
Two thousand and
09 106 / 2013

(2) Any numbers of journeys to Sri
Lanka during the period of validity
of visa so long as the holder does
not engage himself/ herself in any
employment paid or unpaid or in
any business or trade other than
AG

at

This visa does not ensure permission
to land which is entirely in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at the port
of arrival.

For Controller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Colombo, Sri Lanka.

Date: 08/07/2012 Visa No: P10/2

시에라리온(Republic of Sierra Le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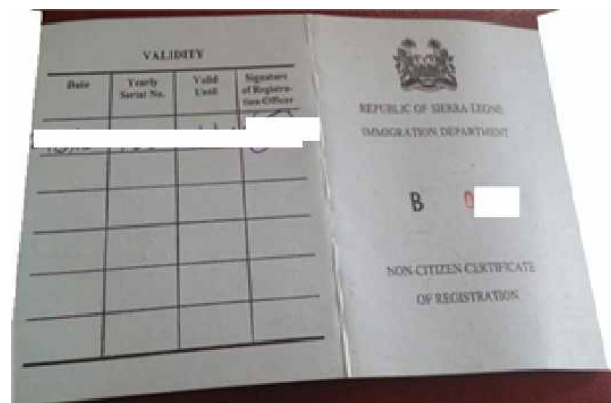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증(Non-citizen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2. 형태 : 종이 카드(1장을 반으로 접어 개인정보 기재하여 신분증으로 사용)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
5. 수속절차 : 관련 서류를 시에라리온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소속 사업장 변경 또는 사직
7. 부활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1년 단위 갱신 필요)
8. 포기제도 : 해당없음(거주허가 취득 후 1년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Immigration Department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한 제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는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특별한 복지 혜택 없음

III. 거주권 견본



아랍에미리트(Untied Arab Emirates)

I. 거주허가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2. 형태 : Visa
3. 유효기간 : 2년, 연장가능(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근무자: 3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Employment Visa 취득자
 -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근무자
 - 일반회사 고용주(또는 동업자), 고용인 및 근로자
 - 전문직업인 및 가사도우미
 - Residence Visa 취득자
 - Employment Visa 취득자(일정 월급기준 적용)의 가족
 - 직계가족 초청 : 월급 4,000디람 이상 또는 3,000디람 + 주택비보조
 - 부모 초청 : 월급 7,000디람 이상 또는 6,000디람+주택보조
5. 수속절차
 - Employment visa : 이민국에 신청
 - 건강검진 및 Health Card 와 Labour Card 취득
 - Residence Visa : 이민국에 신청
 - Sponsors 등록 필요(고용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6개월 이상 외국체재시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과 동일
8. 포기제도 : 고용계약 만료 등 거주허가 취소시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ednrd.ae

II. 거주허가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의료보험

III. 거주허가권 견본



아이티(REPUBLIQUE D'HAITI)

I. 거주(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PERMIS DE SEJOUR
2. 형태 : 여권형태(사증면 32쪽)
3. 유효기간 : 1년 (10.1-9.30까지, 여권 사증에 이민국 직인 및 서명)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원, 특정 단체 소속원, 순수 개인도 취득 가능
5. 수속절차
 - 제출서류 : 이민국 필수 서류 제출 지참 후 이민국 방문
 - 이민국 방문 시 사진촬영 후 취득
6. 효력상실(취소)사유 :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상실
7. 부활제도 : 유효기간 만료 이후 신규절차로 재신청
8. 포기제도 : 관련 규정 없으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DIRECTION DE L' IMMIGRATION ET DE L' EMIGRATION)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효기간 내 국외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금융계좌 개설 가능

III. 거주권 견본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I. 장기체류허가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2. 형태 : 종이를 코팅한 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8세 이상의 외국인/무국적자로 아제르바이잔에 합법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5. 수속절차 : 아래의 서류를 제출 (단, 접수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는 가감될 수 있음)
 - 신청서(소정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성명, 생년월일, 가족구성, 거주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혼인증명서 사본
 - 건강증명서(HIV, B형, C형 간염 등 아제르바이잔 내각에서 지정한 전염성 질환 비 감염자임을 증명)
 - 건강증명서는 Azerbaijan Republic Diagnostic Centre(3166, Tbilisi Avenue, Baku에 위치)나 International Medical Centre(11 "B" A.Molla Juma str., Narimanov district, Baku에 위치)를 통해 발급
 - 재정능력증명 서류(본인 및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증명). 단, 인척관계인 아제르바이잔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가 생계를 책임질 경우 제외
 - 여권(무국적자의 경우 무국적 증명서류)
 - * 18세 미만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경우 공증을 받은 출생증명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전문성(전공) 증명서류(반드시 공증된 서류 제출)
 - Card for Temporary/permanent residence
 - 기존의 Temporary residence permission 취득요건이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증된 서류 제출)
 - 사진 2장(3.5X4.5cm, 붉은색 배경)
 - 집주인의 ID카드 사본 및 State Migration Service Chief앞 신청서
 - 거주지 증명서류(임차계약서, 부동산보유증명서류 등)

- Permission Card for Permanent Residence 발급수수료 영수증(수수료는 300AZN로 수수료 지불 영수증은 permission card for permanent residence 교부시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아래의 경우에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발급이 거부되며, 이전에 발급된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도 취소됨
- 아제르바이잔의 안보와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서류 제출 미비 혹은 허위서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아제르바이잔 내각에서 지정한 고전염성 질환 보균자(단, 아제르바이잔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제외)
 - 중죄를 범하여 수감된 경력이 있는 경우
 -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단, 인척관계인 아제르바이잔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생계를 책임질 경우 제외)
 -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취득 후 1년중 180일 이상을 아제르바이잔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한 경우
 - Temporary residence permission 발급요건을 상실한 경우
 - 외국인/무국적자로서 아제르바이잔에 장기 체류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제르바이잔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 아제르바이잔 법률에 의해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의 아제르바이잔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아제르바이잔 법률이 정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State Migration Servic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www.migration.gov.az)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신청기한 : Temporary residence Permission 기한 만료일 최소 3개월 전. 연장시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기한 만료일 최소 3개월 전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며, 14-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신청시 지문인식 필요(단, 15세 미만은 제외)
 - 여권, 거주지 증명서류, 집주인의 신분증의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조 후 원본은 돌려줌

- 심사 : 심사기간은 두 달이며 State Migration Service, 법무부, 교육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제르바이잔어 구사력 등을 심사
-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에게 고지서 교부
- 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발급이 거부된 원인을 해결한 경우 거부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급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거부원인 해결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면 됨

II. 장기체류허가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중 6개월 미만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Card for Temporary/permanent residence 소지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I. 거주 제도

1. 명칭 : Employment Visa, Family Residence Visa
2. 형태 : 체류비자
3. 유효기간 : 3개월, 6개월, 1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 (취득조건)
 - 취업비자 : 내부무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가족비자 : 취업거주 비자를 받은 자의 가족
5. 수속절차 : 일반 비자 신청 절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알제리(Algeri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단기체류증(La carte de résident 또는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조건에 따라 상이(※ 관련 신청기관에 확인 필요)
4. 신청자격 : 주재국에 거주중인 만 18세 이상 외국인
5.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6.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ilaya
7. 기타사항 : 신청 시 관할 경찰서에 관련 서류 신청 필요
 - ※ 자세한 정보는 주재국 내무부 홈페이지 참조

에티오피아(Ethiop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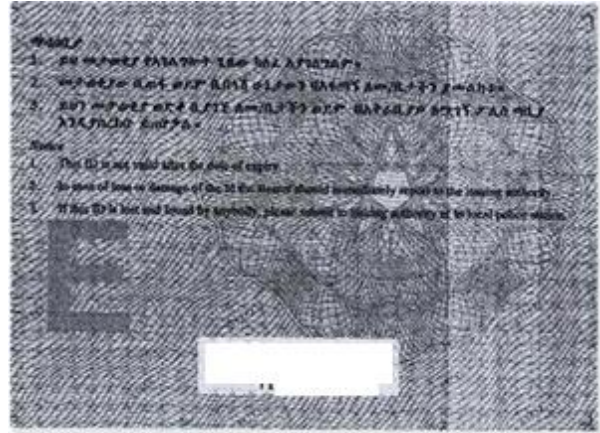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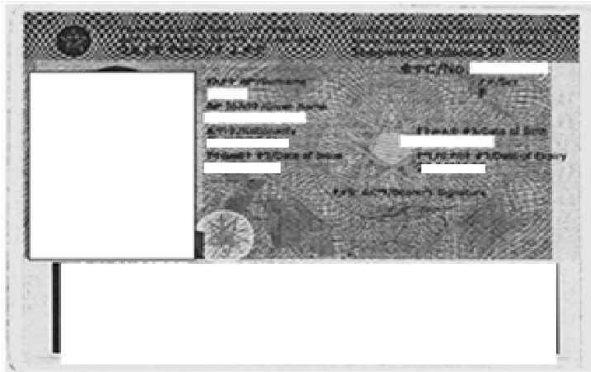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Resident Permit
2. 형태 : ID 카드
3. 유효기간 : 1년(매년 갱신)
4. 신청자격
 - 투자자 : 에티오피아 투자법에 규정된 일정 자본금(10만불)을 투자한 자 (Investment Licence 보유자)
 - 일반근로자 : 상기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 소속직원 또는 일반인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은 자
5. 수속절차
 - 투자자 : 투자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사업면허증 획득시 이민국으로부터 ID카드 수령
 - 일반근로자 : 소속 투자기업(투자가)또는 기업경영주가 노동부에 신청하여 개개인 별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ID 카드 수령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투자자 : 매년 사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일반근로자 : 매년 노동허가(Work Permit)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7. 부활 절차 : 이민국의 심사
8. 반납 제도 : 주재국에서 제3국으로 영구 이주할 경우 이민국에 반납
9. 포기제도 : 주재국에서 제3국으로 영구 이주할 경우 이민국에 반납
10.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11. 기타사항 : 투자법에 의한 자본금이 10만불에서 20만불로 상향 변동됨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ID카드 유효기간(1년)내 제한 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등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음

III. 거주권 견본



오만(Oman)

I. 거주권(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외국인 거주(Foreigners' Residence)
2. 형태 : 거주증(Resident Card)
3. 유효기간 : 2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취업(Employment), 가족(Family Residence), 투자거주(Investor Residence) 등 비자 취득자
5. 수속절차 : 해당비자를 취득하고 오만보건부의 신체검사 통과 후 오만경찰청(Directorate General of Civil Status)에 거주증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 만료 및 계약 취소 등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http://www.rop.gov.om>(오만경찰청)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당사항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비자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 외국인 등록

III. 거주권 견본



온두라스(Honduras)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장기체류허가(CARNE DE EXTRANJERO RESIDENTE)
2. 형태 : 플라스틱
3. 유효기간 : 1년-5년(유효기간 만료시 갱신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구분	자격	기간
임대업자	- 월평균 \$2,500미불의 수입 증명 외국인	1년 - 5년
연금수급자	- 월평균 \$1,500미불의 수입 증명 외국인	1년 - 5년
투자자	- 온두라스 법령에 의거 자본 투자 외국인	1년 - 5년
출생	- 온두라스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외국인	1년 - 5년
이주거주자	- 5년 이상 연속 거주 외국인	1년 - 5년

5. 수속절차 : 온두라스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범죄행위자나 온두라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7.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온두라스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 온두라스 이민외국민국(Departamento de Migración y Extranjería)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여권 및 장기체류허가증 유효기간내에서 6개월-1년간 제3국 체재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온두라스 국적자와 동등한 법적지위(선거권 제외) 부여 및 복지혜택 적용

III. 거주권 견본



요르단(Jorda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 (Residence Permit)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노동비자 : 요르단 스폰서 또는 요르단에 등록된 기업에 의해 고용된 자
 - 투자비자 : 요르단에 투자한 자
 - 학생비자 : 요르단 내 대학 또는 어학연수기관에 등록한 자
5. 수속절차
 - 노동비자 : 요르단 스폰서 또는 요르단에 등록된 기업체가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 승인을 받은 후 내무부에 제출
 - 투자비자 : 주재국에 5만디나(7만불 상당)를 투자하여 투자증명서를 산업통상부와 내무부에 제출
 - 학생비자 : 대학 또는 어학연수기관에 등록 후 등록증을 내무부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고용된 회사를 옮길 경우
 - 보안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 6개월 이상 요르단을 떠난 경우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oi.gov.jo(요르단 내무부)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허가 기간 내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만 인정

III. 거주권 견본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MINISTRY OF INTERIOR
RESIDENCE AND BORDERS DEPARTMENT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وزارة الداخلية
ادارة الاقامة والحدود

Name : [REDACTED] : الاسم
Nationality : [REDACTED] : الجنسية
Date of Birth : [REDACTED] : تاريخ الميلاد
Passport No. : [REDACTED] : رقم الجواز
Residence No. : [REDACTED] : رقم قن الاقامة
Issue Date : [REDACTED] : تاريخ الاصدار
Expiry Date : [REDACTED] : تاريخ الانتهاء

قناة الاقامة

Profession : [REDACTED] : المهنة
Address : [REDACTED] : العنوان
Police Station : [REDACTED] : المركز الأمني
Dependants : [REDACTED] : المرافقون

مدير الامن العام
إذا مكث حاملها خارج البلاد أكثر من ستة أشهر تعتبر لاغية
Will be invalid if holder's stay abroad exceeds 6 months.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I. 거주권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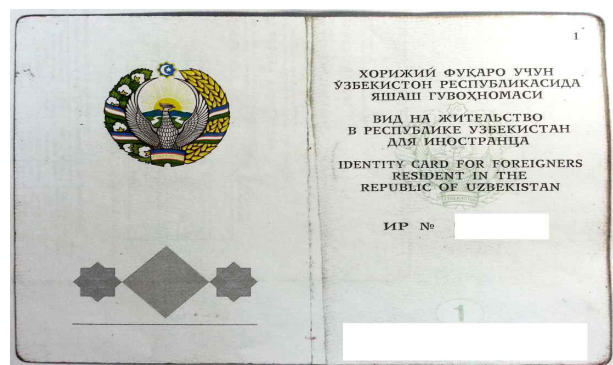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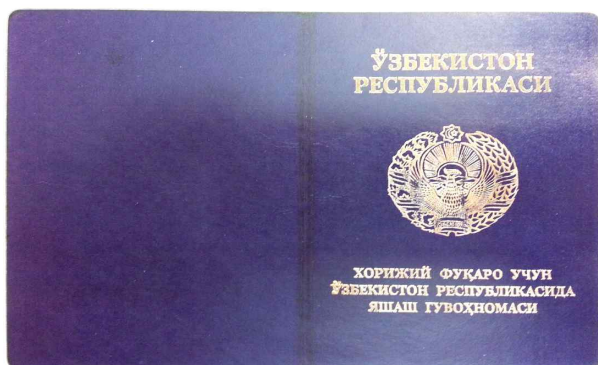
1. 명칭 : 외국인을 위한 거주증명서(IDENTITY CARD FOR FOREIGNERS RESIDEN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형태 : 수첩(16 페이지로 구성)
3. 유효기간 : 5년
 - 한번 발급된 거주권은 5년씩 5회 연장이 가능하며 5회 연장 후에는 거주권 갱신 필요
 - ※ 단, 거주권은 외국인의 여권 유효기간만큼 발급됨
 - 60세 이상인 외국인은 여권 유효기간만큼 발급됨
 - 무국적자를 위한 거주권은 5년씩 5회 연장이 가능하며 5회 연장 후에는 거주권 갱신 필요
 - 60세 이상인 무국적자는 기한 제한 없는 거주권 취득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5. 수속절차
 - 장기체류허가 신청절차 : 장기체류허가 발급 신청서 (내무부 소정양식) 2장, 친척·지인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주택주인의 공증된 거주동의서, 주택 소유 관련 서류, 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수수료 납입 영수증, 35 x 45 mm 사진 2매 등
 - ※ 내무부에서 허가된 장기체류허가서는 거주권 발급의 근거임.
 - ※ 장기체류허가 검토는 보안부, 시·구청, 내무부, 필요 시 외교부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부처·관청마다 검토 기간은 1개월을 상회하면 안 됨
 - 거주권 신청절차 : 거주권 발급신청서 (내무부 소정양식) 1장, 출생증명서 (최초에 접수할 경우),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국적상실 증명서 (국적을 상실 했을 경우), 35 x 45 mm 사진 5매, 거주지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 거주권 발급 검토 기간은 15일을 상회하면 안 됨
6. 효력상실 사유
 - 외국인이 주재국에서 영구 출국했을 경우
 - 해외로 출국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우즈베키스탄 거주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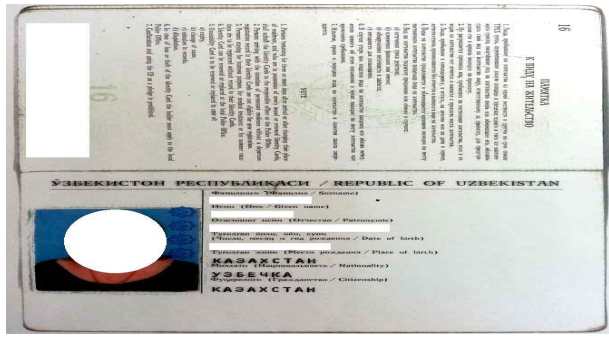
- 주재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거주권 신청 시 허위·위조 서류 제출했을 경우
 - 해외에서 타당한 사유 없이 무국적자 증명서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했을 경우(무국적자에 해당)
7. 부활제도 : 거주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장기체류허가서를 재차 받은 뒤 거주권 발급이 가능(부활제도 없음)
 8. 포기제도 : 거주권 포기 신청을 직접 하거나 공증된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타국의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포기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 (지역 사무소)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홈페이지: www.mvd.uz
 10. 기타 사항 : 우즈베키스탄 거주권제도와 관련 해당규정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여권제도 개선과 관련 제UP-2240호 (1999.02.26.) 명령의 외국인·무국적자를 위한 거주권 및 무국적자 증명서와 관련 제2규정
 -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외국인·무국적자의 출입국·체류·트랜지트에 관한 제 408호 (1996.11.21.) 결의의 외국인·무국적자의 출입국 절차와 관련 제1규정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3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이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 사증 없는 재입국이 가능 (취소 여부를 해당 재외공관에서 확인 필요)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일부제한(선거, 고등학교·대학교 무상 교육, 정부기관 채용 등)

III. 거주권 견본





이라크(Iraq)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WORK PERMIT VISA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6개월, 1년
4. 신청자격 : 정당한 입국비자 소유자로서 이민국에서 입국쿼터를 인정한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
5. 효력상실 사유 : 기간 만료 또는 발급사유 소멸
6. 신청기관 : 이라크 이민국(MUDERIAT AL IQAMA RESIDENCY DIRECT RATE)

이란(Ira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거주 허가)
2. 형태 : 여권 사증란에 스티커(외교·관용여권) 또는 스탬프(일반여권)로 표시
3. 유효기간 : 1년(일반여권), 3년(외교·관용여권)
4. 신청자격 : 근로자, 투자자, 유학생 등 유효한 비자 소지자
5. 수속절차 :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후, 관할 이민경찰서에 거주 허가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주재국 법령 위반 등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Immigration & Passport Police(이민경찰), www.moi.ir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출국 시 이민경찰이 허용하는 기간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국 전 이민경찰에 출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자동차 소유, 휴대전화 등록, 은행계좌 사용 등(부동산 소유는 금지)

III. 거주권 견본



이집트(Egypt)

I. 장기체류제도

1. 명칭

- Special Residence
- Ordinary Residence
- Temporary Residence

2. 형태

- Special 및 Ordinary Residence는 카드 형태
- Temporary Residence 는 비자 형태
 - 주재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은 일반체류자(상사주재, 학술연구, 유학, 기타)에게 발급

3. 유효기간

- Special Residence : 10년
- Ordinary Residence : 3년 또는 5년
- Temporary Residence : 1-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Special Residence(특별거주)
 - 1952이전 이집트 내 출생 외국인
 - 1952이전 이집트에서 계속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이집트 경제, 과학, 문화 및 예술분야에 종사한 자
 - 이집트 경제, 과학, 문화 분야 등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자
- Ordinary Residence(일반거주)
 - 이집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60세 이상으로 수입을 갖고 이집트에 10년 이상 거주한자
 - 투자자
 - 이집트 정부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
 - 이집트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 이집트인과 결혼한 팔레스타인 난민 및 자녀

- Temporary Residence Visa
 - 이집트 내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
- 5. 수속절차
 - 내무부 이민국에 신청
 - Temporary Residence Visa의 경우 소관부처(상사원 경우 투자청)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득한 후 내무부 이민국에 비자 신청
-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공공의 안녕(국가보안, 안전, 경제, 윤리, 국민건강 등)에 위배되는 행위
 -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제 3국 체류
- 7. 부활제도 : -
- 8. 포기제도 : -

II. 장기체류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허가시 2년간 가능(허가 없이 6개월 이내)

III. 거주권 견본

거주비자



투자비자



인도(Indi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영주권제도가 없으며, 외국인 체류자에게 체류비자(Stay VISA)를 발행
2. 형태 : 최초 부여시는 여권에 스티커 부착 및 FRR0발행 용지, 연장시는 여권상에 스탬프. 인도인 배우자와 결혼한자는 수첩형태
3. 유효기간 : 학생·상사주재원·전문직 1년, 결혼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관광목적 이외 6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 상사주재원, 전문직 종사자, 인도인과 결혼한 자)
5. 수속절차 : 내무부 산하 FRR0(Foreigners Regional Resistration Office)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비자기간 경과, 불법행위 등
7. 부활제도 : 비자기간 경과시에는 내무부에 재신청 가능
8. 포기제도 : 포기제도 없음. 거주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사유가 명시된 한국대사관 협조서한을 내무부에 제출하여 출국비자를 받은 후 출국이 가능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내무부산하 이민청(<http://boi.gov.in>)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해외 체류기간 제한은 없으나, 비자 유효기간 내 인도에 입국을 해야 함
2. 재입국 허가제도 : 단수비자의 경우 출국 전 내무부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계속하여 12년 이상 거주시 시민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특별히 혜택은 없음

III. 거주권 견본

1. 여권상에 최초비자 및 갱신비자



2. 외국인등록소(FRRO: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에 등록
 -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시 도착 14일 내에 체류지역 FRRO에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FRRO 에서는 체류비자(하단 좌측)와 등록증(하단 우측)을 발행함



인도네시아(Indonesia)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KITAP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며, 매 5년 단위로 연장가능(1회 연장시 5년부여)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외국인투자회사(PMA)의 임원으로 3년이상 KITAS를 소지한 자
 - KITAP을 소지한 부모의 인니 출생자
5. 수속절차
 - 해당거주지역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 허가서류를 지역이민국에 접수 →중앙이민청 허가신청→허가 서류를 지역이민국에 재접수 → 허가 받은후 해당거주지역이민국에 서류확인 후 KITAP 획득
6. 효력상실(취소)사유
 - 최초 신청시의 체제 목적 위반
 - 국적 변경시
 - 주재국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재입국 기간(국외체재기간)내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부활제도 : 한번 만료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함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IMIGRASI.GO.ID
10. 2005년과 비교하여 변경내용 : 기존의 KITAP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체류한 KITAS 소지자 였으나, 현재는 일반 KITAS 소지자가 5년이상 체류하더라도 KITAP 신청 불가. 반드시 외국인투자회사(PMA)의 임원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재입국허가를 득하고 최대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이민국으로 출국과 입국허가를 득하여야 함
 - 명칭 : Exit and Reentry Permit
 - 기간 : 1년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소지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5년 발급
- KITAP 소지시 국적변경신청 가능

III. 장기체류권 견본

DEPARTEMEN KEHAKIMAN
DIREKTORAT JENDERAL IMIGRASI
KARTU IZIN TINGGAL TETAP
STAY PERMIT CARD

- 4 -

Nama
Name

Tempat lahir
Place of Birth

Tanggal lahir
Date of Birth

Kebangsaan
Nationality

Pekerjaan
Occupation

Alamat
Address

Sponsor
Sponsor

AP
WR
UD
I



Nomor : _____
Number : _____

Dizinkan tinggal di Indonesia sampai tanggal _____
Permitted to stay in Indonesia until _____

Berdasarkan _____
According to _____

Dikeluarkan tanggal _____
Issued on _____

Tanda tangan pemegang
Signature of bearer




A. Hemdarsjah, S.H.
NIP. _____ 7

조지아(Georgia)

I. 장기체류허가 제도

1. 명칭 : Permanent Residence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카드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조지아 국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취득하여 조지아에서 6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단, 유학, 치료, 외교단 혹은 이와 같은 성격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 거주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과학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조지아의 국익을 위해 조지아에 체류 중인 운동선수, 예술가
 - 조지아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하는 경우
5. 수속절차 : 아래의 서류를 제출(단, 접수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는 가감될 수 있음)
 - 공통제출서류
 - 신청자의 여권(혹은 여행증명서) 사본
 - 현재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조지아 비자, 조지아 입국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3x4cm)
 - 수수료 입금증(180GEL, 급행의 경우 300GEL)
 - 합법적 소득 증빙 서류(단, 조지아 국적을 상실한 자의 경우 불요)
 - 추가제출서류
 - 조지아 Temporary Residence Permit을 취득하여 조지아에서 지난 6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난 6년간의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조지아 국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손녀, 입양인, 형제자매, 조부모 : 가족관계 증명서

- 과학분야에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조지아의 국익을 위해 조지아에 체류 중인 운동선수, 예술가 : 조지아 정부의 초청사실 증명서류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을 위해 허위서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지아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의 근거가 되는 활동을 종료한 경우
- 조지아 국적자의 후견인/보호자 혹은 피후견인/피보호자 자격으로 Permanent residence permit을 취득했으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residence card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취득을 위해 사기 결혼을 한 경우
- 추방을 당하는 경우
- Permanent Residence Permit 발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경우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7. 부활제도 : 해당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Public Service Development Agency of Georgia (<http://sda.gov.ge>) 혹은 Public Service Hall(<http://psh.gov.ge>)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체류국 주재 조지아 대사관/영사관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심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급행수수료 지불시 20일 이내 처리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Card for Temporary/permanent residence 소지시 입출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 Republic)

I. 거주권(단기체류증) 제도

1. 명칭 :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종이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일반체류증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체류중인 13세 이상 3개월 장기 visa(immigrant visa long sejour)를 받은 모든 외국인
5. 수속절차 : 소정양식에 따라 이민국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노동확인서(Attestation de travail), 신원보증서(Casier judiciaire), 건강진단서(Certificat medical), 여권복사(Passeport), 사진 4매, 3개월 이민 VISA(visa immigrant), 보증금(caution 귀국항공료에 해당)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4. 기타사항
 - 기간만료 1개월전에 체류증갱신
 -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출국시 반드시 출국허가(Quitus)를 받아야 함

III. 거주권 견본



차드(Chad)

I. 거주권(단기체류증) 제도

1. 명칭 :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국에 거주중인 18세 이상 장기비자를 가진 자
5. 수속절차 : lettre de demande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구분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규제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II. 거주권 견본



카메룬(Cameroon)

I. 단기거주권 제도

1. 명칭 : la carte de Sejour
2. 형태 : 플라스틱카드
3. 유효기간 : 2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주재국 거주중인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장기비자를 소지한 자
5. 수속절차 : 주재국 경찰청 이민국에 소정양식으로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해당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재국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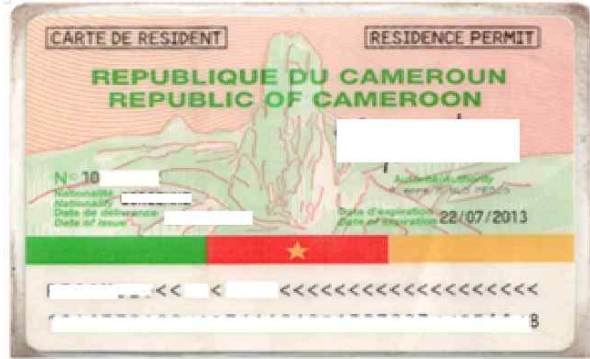
II. 장기거주권 제도

1. 명칭 : la carte de resident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3. 유효기간 : 10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단기체류증을 2번 갱신한 자
5. 수속절차 : 주재국 경찰청 이민국에 소정양식으로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및 발급사유 소멸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구분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주재국 이민국, 홈페이지 없음

I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단기거주권자(6개월), 장기거주권자(18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없음

IV. 거주권 견본



카자흐스탄(Kazakhsta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Permit for Residence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10년 이하
 - 여권 유효기간에 의거 거주허가
 - 부모가 거주허가증 취득 시, 16세 미만 자녀 자동 취득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6세 이상의 외국인 및 무국적자
5. 수속절차 : 여권, 거주허가신청서, 여권사본, 가족동의서, 무범죄증명서, 재산 증명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록증(법인등록지), 결혼증명서(현지인과 결혼한 자, AIDS진단서, 대사관 영사확인서의 서류를 구비 내무부 산하 담당 부서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주재국 국적취득, 영구출국, 1년 이상 주재국 국외거주, 범법행위, AIDS감염
7. 부활제도 : -
8. 포기제도 : 유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경찰국(<http://mvd.gov.kz>)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1년
2. 재입국 허가제도 : 무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연금지급, 부동산 취득 가능 등

III. 거주권 견본



카타르(Qatar)

I. 거주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비자
3. 유효기간 : 1 - 3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카타르 노동허가 및 스폰서 초청 취득자
5. 수속절차 : 카타르 노동성의 노동허가 및 카타르 국적의 Sponsor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신청
6. 효력상실(취소)사유
 - 해고 또는 고용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Sponsor 요청시
 - 법률 위반으로 추방될 경우
7. 부활제도
 - Sponsor 요청으로 인한 효력상실의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후 거주비자 신청 가능
 - 법률위반으로 추방된 경우에는 부활 불가능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moi.gov.qa
10.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스폰서 변경 시 범죄기록증명서 요구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학생의 경우 1년)
 - 출국 시 반드시 Sponsor의 동의서를 이민국에 제출, 이민국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만 출국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 : 없음
 - 의료혜택 : 의료보험 제도는 없으나,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의료카드를 발급(매년 27미불 납부) 받은 후 진료 가능
 - 교육관계 : 의무교육 제도는 없으나, 국·공립학교(초·중·고)의 수업료는 무료임

III. 거주권 견본



카포베르데(Cape Verde)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AUTORIZACAO DE RESIDENCIA
2. 형태 : 별도의 카드를 발급
3. 유효기간 : 1년
4. 신청자격 :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로서 체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수속절차
 - 제출처 : 카포베르데 내무부
 -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1부, 사진 3매, 범죄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국적증명서, 병원진단서(질병 확인), 체류증명서류(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6. 효력상실 사유 : 기간 만료
7. 부활 절차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반납 제도 : 필요서류(반납사유서, 등록증)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허가제도 : 제한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 법적지위 : 외국인 자격
 - 복지혜택 : 없음

캄보디아(Cambodia)

I. 거주 제도

1. 비자발급 및 연장제도

- 일반인 취득 가능 비자 : 관광비자, 상용비자
- 비자취득 방법 :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취득 후 입국하거나, 캄보디아 도착 후 공항 또는 육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취득, e- VISA : <http://evisa.mfaic.gov.kh>
- 관광비자(Type T)
 - 종류 : 단수
 - 체류기간 : 1개월
 - 연장가능 횟수 : 1회(1개월 연장)
 - 발급 수수료 : 30불(연장시에도 30불), e- VISA로 신청시 수수료 : 37불
 - 특기사항 : 발급에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 체류기간이 만료시 하루에 5불씩 벌금 부과
- 상용비자(Type E)
 - 종류 : 처음엔 단수(연장시, 1개월 또는 3개월 연장은 단수, 6개월 또는 1년 연장은 복수)
 - 체류기간 : 1개월
 - 연장가능 횟수 : 제한 없음(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연장가능)
 - 발급 수수료 : 35불(연장시는 1개월 30불, 3개월 60불, 6개월 100불, 1년 180불)
 - 특기사항 : 장기간 비자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체류자에게 적합하며 발급에 약 3-4주 소요 / 신청에 성별, 연령, 직업 등에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워크퍼밋(Work Permit)을 제출해야 비자연장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불가(연장시 포함) / 체류기간 만료시 하루에 5불씩 벌금 부과

코트디부와르(Cote d' Ivoire)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체류증(Carte de Séjour)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
 - 남 21세, 여 18세 이상의 자로서 주재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PLATEAU소재 BIAO은행에서 300,000F.CFA를 지불하고 인지를 구입
 - 구입한 인지와 여권을 소지하고 우체국(Cite rouge 뒤에 위치한 Bureau de Cocody 또는 la PJ 맞은편의 우체국)에 가서 접수한 후 체류증 교부 영수증을 발급 받음 (현재 동 교부 영수증으로 체류증 같음)
 - 상기 영수증, 사진 2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certificat de travail), 전기 또는 수도요금 영수증, 여권, 그리고 Plateau Tresor에서 구입한 500F.CFA 인지를 소지하고 "ONI"사무소에 가서 접수를 하면 거주증(Attestation de Residence)을 발급
 - 신규 체류증은 2002년 9월 주재국 사태 이후로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6. 효력상실 사유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상실
7. 부활절차
 -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유효기간(5년)내 국외체재 및 재입국 가능
2. 재입국 허가제도 : 유효기간(5년)내 국외체재 및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혜택 등 : 피선거권 및 투표권 없음

콩고공화국(Republic of the Congo)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거주비자(visa de résident)
2. 형태 : 스티커 형태
3. 유효기간 : 단기(3개월~1년), 장기(3년), 특별(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콩고공화국 내 거주 외국인 또는 그의 가족
5. 수속절차 : 영토안보국에 구비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거주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체류목적 소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단기 및 특별비자 수수료 106,000CFA(210달러)/장기 206,000CFA(410달러))를 준비하여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장기간의 징역 및 형법상 중대 징계를 받은 경우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별도 규정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영토안보국(DGST: Direction Générale de la Sécurité du Territoire)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비자 유효기간 내 제한 없음
2.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외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

III. 거주권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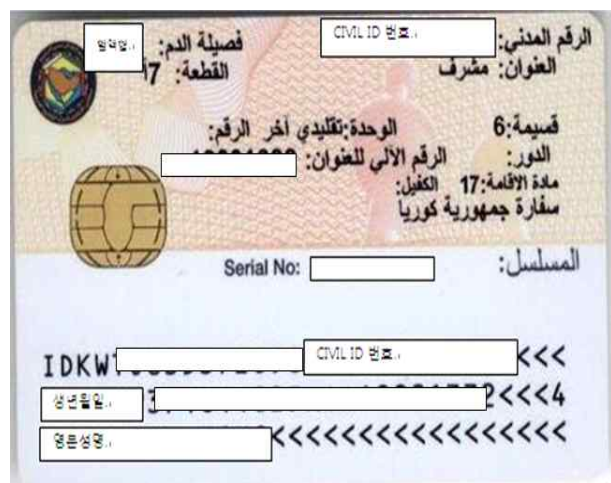
쿠웨이트(Kuwait)

I. 거주 제도

1. 명칭 :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노동허가(Work Permit)
 -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통상 1~3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는 거주사증(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함
2. 형태 : 여권에 스티커 용지로 부착
 - 거주사증 및 외국인용 Civil ID(거주사증 발급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별도 신청하여 발급)로 외국인 장기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 1~3년(갱신 가능)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쿠웨이트 정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고용된 자 및 동반가족
5. 수속절차
 -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 : 쿠웨이트 스폰서 조치
 - 쿠웨이트 스폰서가 노동부에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발급
 - 이후, 스폰서는 noc신청서, 취업허가서, 여권사본, 항공권 등 구비서류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시, noc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noc를 한국내 사증신청자에게 송부
 - 신원조회서(Criminal Records) 발급
 - 사증 신청자는 noc, 여권사본, 신원조회뢰서(별도 양식은 없으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재요망)를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에 제출하고 신원조회서 발급을 신청
 -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은 경찰청에 직접 의뢰하여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은 후 사증신청인에 전달
 - 사증신청인은 신원조회서를 수령하여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후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여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건강 진단서(Medical Test) 발급
 - 사증신청인은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영문 건강진단서를 주한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해야 함
 - 건강진단서에는 간염, 결핵, AIDS, 매독, 말라리아, 사상충 감염여부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 질병 감염시 사증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사증신청
 - 사증신청인은 상기 신원조회서 및 건강진단서와 함께 사증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NOC, 사증수수료 은행입금증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에 제출하고 취업 사증을 신청
 - 주한쿠웨이트대사관이 취업사증을 발급한 이후 동 사증을 휴대하고 쿠웨이트에 입국
 -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발급 : 쿠웨이트 입국 후 조치
 - 사증신청자는 쿠웨이트 입국 후 노동부에 스폰서쉽 증명서 발급 신청(동시에 의료 보험에 의무 가입)
 - 상기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쿠웨이트 내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재차 받고 지문 채취 후, 내무부 이민국에 거주허가(여권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를 신청하여 발급 받음
 - 거주 허가 발급 후 1개월 내에 내무부에 외국인 신분증(civil id)을 신청하여 동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입국관련 절차가 완료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기간만료, 해고, 고용계약 만료, 쿠웨이트인 스폰서의 의사에 따라 효력 상실, 6개월 초과 국외체류
7.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moi.gov.kw
8. 기타사항 : 쿠웨이트 체류사증 발급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쿠웨이트 내무부 이민국을 방문하여 신 여권에 체류사증을 재차 발급하여 부착해야 함. 쿠웨이트 정부는 구 여권에 부착된 체류사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II. 장기체류권 견본



키르기스공화국(Kyrgyz Republic)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 for a Foreign National
 - 장기 거주권(5년), 단기 거주권(1년) 두 종류가 있음
2. 형태 : 책자(120×90mm)
 - 남색 : 장기 거주권
 - 흰색 : 단기 거주권
3. 유효기간 : 5년(장기 거주권), 1년(단기 거주권)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장기 거주권
 - 5년 이상 주재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신청이 원칙임
 -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가 거주권을 받은 경우, 동 부모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동반자 자격으로 거주권 신청 가능함
 - 부부 중 한명만 장기 거주권을 받은 경우, 자녀는 동반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는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함
 - 단기 거주권
 - 학생 또는 사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주재국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 결정
 -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 거주권은 약 1년, 단기 거주권은 약 1개월
 - 수수료는 장기 거주권 15,000숨, 단기 거주권 10,000숨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주재국의 법률 위반으로 거주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 주재국에서 영구 출국 시
 -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사망시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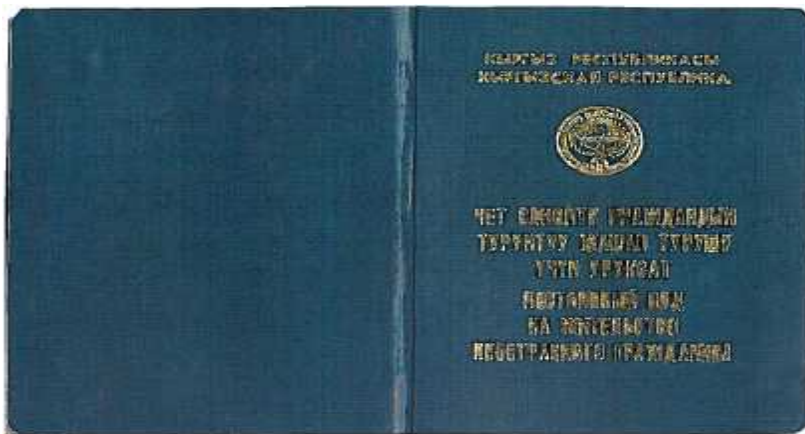
9. 신청기관

- 국가등록청(State Registration Service) 산하
주민등록국(Population Registration Department)
- 주소 : 58 Kievskaya Street, Bishkek (Tel. 0312-666-859)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권 유효 기간 동안 자유 출입국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권 유효 기간 동안 자유 출입국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거주권 만료일까지는 비자 및 노동허가증 불필요

III. 거주권 견본



<견본 및 표제 번역: 키르기스공화국 외국인 장기 거주권>



<견본 및 표제 번역: 키르기스공화국 외국인 단기(임시) 거주권>

타지키스탄(Tajikistan)

I. 거주권제도

1. 명칭 :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2. 형태 : 수첩(여권과 유사)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 주재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와 거주등록을 소지해야 함
5. 수속절차 :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진 6장(3.5x4.5cm), 여권, 비자, 거주등록증, 혼인신고서,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주재국에서 영구 출국, 세금 미납부, 위법, 민형사상의 범죄, 전염병 환자, 주재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7. 부활제도 : -
8. 포기제도 : -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타지키스탄 이민청(Immigration service)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
2. 재입국 허가제도 : 출입국시 허가 획득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 및 피선거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이 시민권자 등과 차이가 없음

탄자니아(Tanzania)

I. 거주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거주비자 (VISA)
3. 유효기간 : 2년(2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취득 조건)
 - A Class(개인사업자) : 고용자 및 사업자
 - B Class(취업) : 회사의 필요에 의한 피고용자
 - C Class(선교사 및 기타) : 선교목적으로 입국한 선교사
5. 수속절차 : 필요 서류를 주재국 이민국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범법행위 및 강제추방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www.tanzania.go.tz/immigration.html

터키(Turkey)

I. 체류허가제도

1. 국가명 : 터키
2. 명칭 : 체류허가증
3. 형태 : 수첩
4. 유효기간 : 1년 단위 갱신(최장 5년)
5.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학생 : 소속 학교의 입학서류, 재학증명서, 학생비자 등소지학생
 - 주재원, 취업 : 노동허가를 취득한 아국인
 - 결혼 : 터키인과 결혼한 아국인
6. 수속절차
 - 유학생 : 주한 터키대사관에 학생비자 신청→터키 경찰청 외사과에 체류허가증 신청
 - 주재원, 취업 : 주한 터키대사관에 노동허가 및 비자신청 → 터키 경찰청 외사과에 체류허가증 신청
 - 결혼 : 주한 터키대사관에 비자신청→터키 경찰청 외사과에 체류허가증 신청
7. 효력상실(취소) 사유 : 특별한 취소사유 없음
8. 부활제도 : 체류허가증 취득 이후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5년 이후 신규신청
9. 신청기관 홈페이지 : www.emg.gov.tr

II. 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특별히 허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가능(비자면제국으로 체류허가증 없이도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법적지위는 외국인, 복지혜택은 없음

통가(Tong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Assured Income Visa
2. 형태 : 스티커
3. 유효기간 : 2년이며 갱신 가능
4. 신청자격
 - 은퇴 후 통가에서 여생을 보내고자하는 외국인으로서, 통가와 해외국가로부터 일정한 연금 소득이 보장되는 자
 - 단, 동 비자로는 취업, 유학 사업 활동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변경 승인 필요
 - 사업설립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Business Permit이나 Employment Permit비자가 필요함
5. 수속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통가 이민국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여권 사진 2매, 여권
 - 건강진단서 및 2인의 추천서, 범죄경력증명서
 - 자금 출처가 순수한 소득증명서 (여간 최소 통가 T\$10,000이상)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해당사항 없음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통가 이민성(visatonga@gmail.com)
Tel) (676) 26 696 / 970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Residence Permit
2. 형태 : 증명서(A4용지 절반 크기)
3. 유효기간 : 최장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투르크멘 민족
 - 투르크멘 국적자와 혼인
 - 투르크멘 국적자인 가까운 친척(남편/부인, 친조부모/외조부모, 부모/형제자매/자녀/손자)이 투르크메 거주
 -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르크멘 국적자의 후견인이나 위탁관리인으로 등록
 - 50만 미불 이상 투르크메에 투자
 - 과학,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기타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거나 고급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익에 공헌
 - CIS 국민 또는 CIS 출신의 무국적자로서 CIS국가들 간의 비자제도 도입시점 이전에 투르크메에 등록된 사람
 -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투르크메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거부사유
 - 반인도적인 범죄
 - 유죄 확정된 범죄
 - 형사소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거주장소가 투르크메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AIDS, 마약 등 투르크메 보건부가 정한 중대한 질병
 - 거주허가신청서에 고의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 입국규제자
 - 국외 추방되어 추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불법체류자, 다른 불법체류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자
 - 테러단체, 반국가단체, 극단주의자 기타 범죄단체 가입자
5. 수속절차
 - 투르크메 내 체류 중인 외국인, 무국적자는 이민청에 신청

- 투르크멘 영토 밖에 체류하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재외 투르크멘 외교공관을 통해 신청
 - 거주허가 여부는 이민청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부모에게 발급된 거주허가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도 적용(유효). 16세에 도달하는 자녀에게는 투르크멘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을시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거주허가 발급
 - 다음의 경우 거주허가 갱신이 필요
 -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되어 소지한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수정한 경우
 - 거주허가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 거주허가증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된 경우(훼손 등)
 - 거주허가증의 공란이 없어 추가 기재할 여백이 없는 경우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거주허가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 형사 유죄판결
 - 국가안보, 공공질서, 도덕에 반하는 행위
 - 테러단체, 반국가단체, 극단주의자 기타 범죄단체 가입자
 -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거나 공무를 담당(공무원)
 - 약물중독 치료대상자
 - 위장결혼(거주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르크멘 국적자와 결혼)
 - 학업 목적으로 거주허가를 받고 학업을 중단
 - 근로 목적으로 거주허가를 받고 그 근로관계가 중단된 때
 - 투르크멘 국적자와 결혼 후 5년 내 자녀가 없이 이혼하고 그 결혼이 거주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
 - 연속 6개월을 외국에서 체류, 단 합당한 사유를 문서로 증명한 경우 예외
7. 부활제도 : 없음
8. 포기제도 :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The State Immigration Service
 - <http://migration.gov.tm>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연속하여 6개월 이내
2. 재입국 허가제도 :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증 없이 복수 출입국 가능

튀니지(Republic of Tunisia)

I. 거주권 제도

1. 명칭 : Carte de Sejour(체류증)
2. 형태 : 카드
3. 유효기간 : 통상 1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유학(어학연수 포함), 기업활동 등으로 장기 체류시
※ 90일미만은 무사증 입국가능하며, 출입국을 통해 매 90일단위로 무사증 체류기간 갱신가능
5. 수속절차 : 필요서류를 관할 경찰서(거주지 기준)에 제출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체류목적 소멸, 공공질서 위해
7. 부활제도 : 해당사항 없음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관할 경찰서(거주지 기준)

II. 거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재입국 가능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III. 거주권 견본

1. 거주권 카드



2. 거주권 비자



피지(Fiji)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노동허가(permit to work), 거주허가(permit to reside)
2. 형태 : 스탬프
3. 유효기간 : 3년
4. 신청자격
 - 노동허가 : 현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거주허가 : 45세 이상으로 최소 FJD 100,000이상 지참하고 매년 FJD 30,000(3인 가족이하) 또는 FJD40,000(4인 가족 이상) 해외에서 송금받을 수 있는 경우 3년의 체류허가 부여
5. 수속절차 :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에서 신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허가 조건 위반
7. 부활제도 : 재신청
8. 포기제도 : 해당사항 없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피지 이민국(<http://www.immigration.gov.fj>)
10. 기타사항 : 유학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소위 엄마유학자)는 특별거주허가(Special Purpose Permit to Reside with a Family Member) 형태로 거주허가를 부여받고 있음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제한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나 의료(국영의료기관 무료) 및 교육 수혜 가능

III. 장기체류증 견본



피지이민국	
노동허가	
허가 번호	0308
고용처	Dance Monkey for
	In
허가날짜	2013.1.15.
허가만료 날짜	2016.1.15.
	2013.1.23
담당관	날짜

헝가리(Hungary)

I. 장기체류권 제도

1. 명칭 : Nemzeti letelepedési engedély(National Settlement Permit)
2. 형태 : 플라스틱 카드 (분홍색)
3. 유효기간 : 5년
4. 신청자격(취득조건)
 - 내국인과 혼인 후 2년 경과
 - 투자
 - 3년 이상 합법적 거주
5. 수속절차 :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이민국적국)
6. 효력상실(취소) 사유
 - 신청자의 범법사실 판명 시
 - 헝가리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 시
7. 부활제도 : 신규 신청시와 동일
8. 포기제도 : 있음
9.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 이민국 (www.bmbah.hu)

II. 장기체류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6개월
2. 재입국 허가제도 :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며, 복지혜택은 헝가리인과 동일

III. 거주권 견본

